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209-10

생명사랑 전남
Full of Life, Jeonnam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차량·기계장비 기준가격표 별도)



전라남도
JeollaNamdo

목 차

□ 건축물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5
2. 적용지수	6
가. 구조지수의 적용	6
나. 용도지수의 적용	11
다. 위치지수의 적용	17
3. 경과년수별 잔가율	19
4. 가감산 특례	21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4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28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30

□ 기타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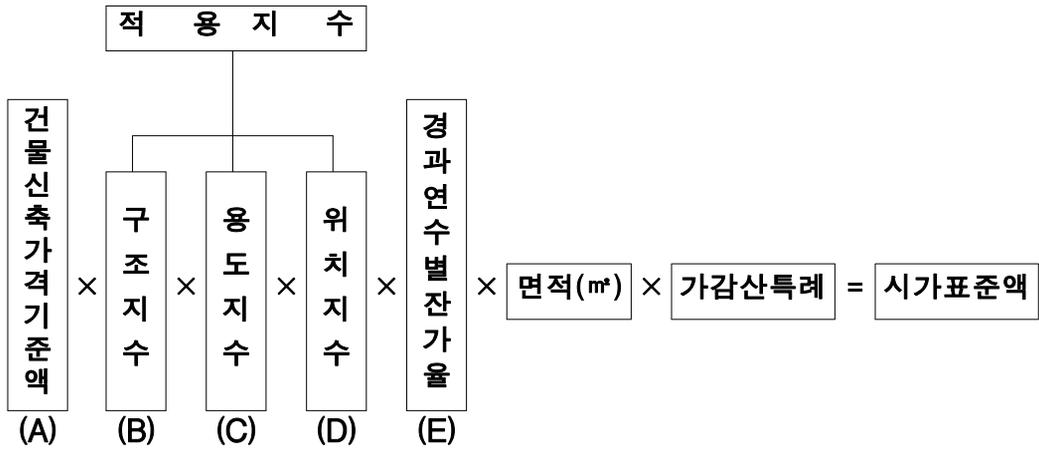
I. 차 량	39
II. 기계장비	59
III. 선 박	69
IV. 항공기	85
V. 시설물	105
1. 레저시설	107
2. 저장시설	139
3. 도키 및 접안시설	155
4. 도관시설	163
5. 급·배수시설	175
6. 에너지공급시설	195
7. 기타시설	243

VI. 부수시설물	269
1. 엘리베이터	271
2. 에스컬레이터	279
3. 기타 승강시설	283
4. 휠체어리프트	289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293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297
7.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301
8. 부착된 금고	305
9. 교환시설	309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315
VII. 입 목	319
VIII. 어업권	333
IX. 광업권	361
X. 회원권	367
XI. 지하자원	377

건축물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가. 산출체계도



나. 산출요령

- 1)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¹⁾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m²당 금액을 산출한다.
- 2) 산출한 m²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m²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 3)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m²)}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2018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690,000원/㎡

2. 적용 지수

가. 구조지수의 적용

◀ 구조지수 ▶

구조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u>140</u>
2	<u>목구조</u>	<u>125</u>
3	<u>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u>	<u>120</u>
4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스틸하우스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철골조, 연와조	100
5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록조, ALC조, 시멘트벽돌조	90
6	목조	<u>78</u>
7	경량철골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60
8	조립식패널조, FRP 패널조	<u>50</u>
9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10	컨테이너건물	<u>30</u>
11	철파이프조	<u>25</u>

◀ 용어의 정의 ▶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2)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3)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4)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 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PS조 포함).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이면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5) 라멘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6) 철골조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7) 석조

외벽을 석재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8)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Precast Concrete)조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9) 목구조

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상 한옥구조 [목구조 및 일반(한식)목구조]를 포함하며,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10) 연와(煉瓦)조

외벽 전체면적의 3/4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록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에 돌붙임·타일붙임·인조석붙임·대리석붙임·붉은타일형 벽돌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11)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2) 황토조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구조를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철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3) 보강블록조

블록의 빈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구조를 말한다.

14) ALC조

시멘트와 규사, 생석회 등 무기질 원료를 고온, 고압으로 증기양생시킨 경량의 기포콘크리트제품인 ALC를 이용하여 ALC블록으로만 조적 시공하는 공법의 건물구조(ALC블록조) 또는 건물골조 보강을 목적으로 철골(H빔, C잔널 등)로 기둥, 보, 지붕을 연결 조립하고, 내외벽을 ALC블록으로 조적시공 하는 공법의 건축물구조를 말한다.

15) 와이어패널조

스티로폼 단열재 표면에 강철선을 그물망처럼 엮어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강철선을 대각선으로 촘촘히 용접시켜 강도를 높인 와이어패널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16) 조립식패널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FRP 패널조를 포함한다).

17) 시멘트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건축물의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18) 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구조(건축법 시행령상 한옥구조 포함)를 제외한다.

19)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C,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20) 시멘트블록조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록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록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21)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록조를 병용한 구조는 각각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록조로 분류한다.

22) 철파이프조

강관(철 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23) 컨테이너건물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축조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적용요령 》

- 1)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 2)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 칼라강판, 시멘트블록인 경우에는 지수 80을 적용한다. 단,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는 지수 90을 적용한다.
- 3) 퀵셋건물, 패널건물, 알미늄유리온실은 경량철골조로 적용한다.
- 4)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용도지수의 적용

《 용도지수 》

구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I	주거용 건물	주거시설	1	◦ 주거용 오피스텔	130	
			2	◦ 아파트	110	
			3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등 기타 주거용건물 ◦ 도시형 생활주택	100	
			4	◦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u>70</u>	
II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숙박시설	5	◦ 관광호텔(5성급·4성급)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5	
			6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호텔	135	
			7	◦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 ◦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생활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130	
			8	◦ 여관(모텔 포함) ◦ 호스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5	
			9	◦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u>115</u>	
			10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인숙	100	
			판매시설	11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12	◦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10
			운수시설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u>100</u>
			위락시설	14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	135
	15	◦ 단란주점		130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5		
	17	◦ 무도학원		123		

구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II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문화 및 집회시설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 집회장(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25
			19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90
		종교시설	20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	117
			21	◦ 사우(재실, 정각 포함)	80
		운동시설	22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육내수영장, 육내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127
			23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2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7
		의료시설	24	◦ 종합병원	13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25
		업무시설	26	◦ 사무용 오피스텔	113
		방송통신 시설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125
			28	◦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80
		교육연구 시설	29	◦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15
		노유자 시설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1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아원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0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60

구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II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수련시설	32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7
		공중위생 시설	33	◦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135
			34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125
	35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117	
	근린생활 시설	36	◦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다중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시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7	
	묘지관련 시설	37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85	
	III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	공장	38	◦ 공장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3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및 공장형 사무실은 제외)	90
발전시설		40	◦ 원자력발전시설 [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저장·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330	
		41	◦ 발전시설(용도번호 40번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00	

구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Ⅲ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	창고시설	<u>42</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냉동·냉장창고 포함,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 주택창고 제외)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80
			<u>43</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농어가 주택창고 	3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44</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125
		자원순환 관련 시설	<u>45</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80
		자동차 관련시설	<u>46</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76
	<u>47</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전용빌딩 	65	
	<u>48</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74	
		동·식물 관련시설	<u>49</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 양수장, 경주용마사 ◦ 도축장, 도계장 	80
	<u>50</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30	
		교정 및 군사시설	<u>51</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국방·군사시설 	100

《 적용요령 》

-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 2) 전업농어가주택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인 및 어업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축사 및 창고 제외)이 26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36의 사무실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 4)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나목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 5)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정한다.
- 6) 창고시설의 '창고'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
- 7)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거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8) 한옥체험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중 차목 규정에 따르며,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중 카목 규정에 따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10)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관광진흥법」 제1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구분된다.
- 1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하는 시설을 말한다.
- 12)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 13) 주차전용빌딩(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 14)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위치지수의 적용

◀ 위치지수 ▶

(단위 : 천 원/m²)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1	10이하	80	15	2,000초과 ~ 2,500이하	112
2	10초과 ~ 30이하	82	16	2,500초과 ~ 3,000이하	115
3	30초과 ~ 50이하	84	17	3,000초과 ~ 4,000이하	118
4	50초과 ~ 100이하	86	18	4,000초과 ~ 5,000이하	121
5	100초과 ~ 150이하	88	19	5,000초과 ~ 6,000이하	124
6	150초과 ~ 200이하	90	20	6,000초과 ~ 7,000이하	127
7	200초과 ~ 350이하	92	21	7,000초과 ~ 8,000이하	130
8	350초과 ~ 500이하	94	22	8,000초과 ~ 9,000이하	133
9	500초과 ~ 650이하	96	23	9,000초과 ~ 10,000이하	136
10	650초과 ~ 800이하	98	<u>24</u>	<u>10,000초과 ~ 20,000이하</u>	<u>140</u>
11	800초과 ~ 1,000이하	100	<u>25</u>	<u>20,000초과 ~ 30,000이하</u>	<u>145</u>
12	1,000초과 ~ 1,200이하	103	<u>26</u>	<u>30,000초과 ~ 40,000이하</u>	<u>150</u>
13	1,200초과 ~ 1,600이하	106	<u>27</u>	<u>40,000초과 ~ 50,000이하</u>	<u>155</u>
14	1,600초과 ~ 2,000이하	109	<u>28</u>	50,000초과	<u>160</u>

《 적용요령 》

- 1) 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공시지가 1,300천원/㎡ 경우 → 위치지수 106
- 2)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한다.
(예) 3필지의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A필지(30㎡) : 700천원/㎡, B필지(50㎡) : 1,000천원/㎡, C필지(20㎡) : 650천원/㎡] 인 경우
→ $(700\text{천원} \times 30\text{㎡} + 1,000\text{천원} \times 50\text{㎡} + 650\text{천원} \times 20\text{㎡}) \div 100\text{㎡}$
= 840천원/㎡
→ 위치지수 : 100
- 3) 건축물 부속토지의 개별 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 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대지의 개별 토지가격을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한다.
- 4) 수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치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대해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택 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 6)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경과연수별 잔가율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구분	건축물 구 조	철골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항토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ALC조, 와이어패널조	시멘트블록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조, FRP 패널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내 용 수	50	40	30	20	10	
최 종 연 도 잔가율	20%	20%	10%	10%	10%	
매 년 상각률	0.016	0.020	0.030	0.045	0.090	
경 과 연수별 잔가율	$1-(0.016 \times \text{경과연수})$	$1-(0.020 \times \text{경과연수})$	$1-(0.030 \times \text{경과연수})$	$1-(0.045 \times \text{경과연수})$	$1-(0.090 \times \text{경과연수})$	

《 건축물 신축연도별 잔가율표 》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내용연수 10년	
신축연도	잔가율								
2018	1.000	2018	1.000	2018	1.000	2018	1.000	2018	1.000
2017	0.984	2017	0.980	2017	0.970	2017	0.955	2017	0.910
2016	0.968	2016	0.960	2016	0.940	2016	0.910	2016	0.820
2015	0.952	2015	0.940	2015	0.910	2015	0.865	2015	0.730
2014	0.936	2014	0.920	2014	0.880	2014	0.820	2014	0.640
2013	0.920	2013	0.900	2013	0.850	2013	0.775	2013	0.550
2012	0.904	2012	0.880	2012	0.820	2012	0.730	2012	0.460
2011	0.888	2011	0.860	2011	0.790	2011	0.685	2011	0.370
2010	0.872	2010	0.840	2010	0.760	2010	0.640	2010	0.280
2009	0.856	2009	0.820	2009	0.730	2009	0.595	2009	0.190
2008	0.840	2008	0.800	2008	0.700	2008	0.550	2008이전	0.100
2007	0.824	2007	0.780	2007	0.670	2007	0.505		
2006	0.808	2006	0.760	2006	0.640	2006	0.460		
2005	0.792	2005	0.740	2005	0.610	2005	0.415		
2004	0.776	2004	0.720	2004	0.580	2004	0.370		
2003	0.760	2003	0.700	2003	0.550	2003	0.325		
2002	0.744	2002	0.680	2002	0.520	2002	0.280		
2001	0.728	2001	0.660	2001	0.490	2001	0.235		
2000	0.712	2000	0.640	2000	0.460	2000	0.190		
1999	0.696	1999	0.620	1999	0.430	1999	0.145		
1998	0.680	1998	0.600	1998	0.400	1998이전	0.100		
1997	0.664	1997	0.580	1997	0.370				
1996	0.648	1996	0.560	1996	0.340				
1995	0.632	1995	0.540	1995	0.310				
1994	0.616	1994	0.520	1994	0.280				
1993	0.600	1993	0.500	1993	0.250				
1992	0.584	1992	0.480	1992	0.220				
1991	0.568	1991	0.460	1991	0.190				
1990	0.552	1990	0.440	1990	0.160				
1989	0.536	1989	0.420	1989	0.130				
1988	0.520	1988	0.400	1988이전	0.100				
1987	0.504	1987	0.380						
1986	0.488	1986	0.360						
1985	0.472	1985	0.340						
1984	0.456	1984	0.320						
1983	0.440	1983	0.300						
1982	0.424	1982	0.280						
1981	0.408	1981	0.260						
1980	0.392	1980	0.240						
1979	0.376	1979	0.220						
1978	0.360	1978 전	0.200						
1977	0.344								
1976	0.328								
1975	0.312								
1974	0.296								
1973	0.280								
1972	0.264								
1971	0.248								
1970	0.232								
1969	0.216								
1968이전	0.200								

4. 가감산 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I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5/100 10/100	○ 공동주택, 복합건물내 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 건물,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이하 같다)
II	(2) 특수건물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층의 높이 보다 2배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인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 될 때마다 5% 가산율 추가 적용 (예 : 7.9m는 0, 8m는 5/100, 12m는 10/100가산)	5/100 5/100	○ 동일건물 내 복층 구조가 병존할 경우 당해 복층 부분
III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10/100 20/100 25/100 30/100 35/100	○ 단층건물 ○ 오피스텔(용도번호 1, 26),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 36)
IV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8)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9)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10) 30층 초과 건물 ○ 2층 상가부분	3/100 4/100 5/100	○ 오피스텔(용도번호 1, 26),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 36)
V	(11) 원자력발전시설	50/100	○ 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 저장·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 이외의 건물
VI	(12) 수상건축물	10/100	-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감산율	감산제외대상
I	[단독주택]		
	(1) 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	5/100	○ 다가구주택
	(2) 1구의 연면적이 60㎡이하	10/100	
II	(3) 주택의 차고	50/100	○ 복합건축물의 차고
III	(4) 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이상 ~ 2/4미만	20/100	-
	○ 무벽 면적비율 2/4이상 ~ 3/4미만	30/100	
	○ 무벽 면적비율 3/4이상	40/100	
IV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5) 지하2층이상 상가부분	30/100	○ 오피스텔 (용도번호 1, 26)
	(6) 지하1층 상가부분		
	○ 10층이하 건물	20/100	
	○ 10층초과 건물	15/100	
	(7)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10/100	
	(8)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3/100	
	(9)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2/100		
	(10) 30층초과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1/100	
V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11) 주차장	10/100	
	○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이상 건축물		○ 지하층

다. 적용요령

- 1)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 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 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IC)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기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 2) 가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III'과 '구분 IV'를 적용할 상가부분은 용도지수의 번호 5~12, 14~17, 18의 예식장, 22~25, 27, 33~36, **44**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3)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IV'를 적용할 상가부분은 용도지수의 번호 7의 펜션 및 한옥체험시설, 8~10, 12, 16~18, 20~25, 27, 29~32, 34~36, **44**에 해당하는 건축물(부속 주차시설 포함)을 말한다.
- 4)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상 상가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 5)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 6)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V'를 적용할 주차장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로 용도지수의 번호 **46**번(주택의 차고는 제외) 및 **47**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층은 감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7) 가산대상과 감산대상이 여러 구분(I~VI)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 8)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증축 건축물

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증축 시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축물의 구조별 신축건축물시가표준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m^2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증축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나. 개축 건축물

- 1)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 개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별표1] 증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 3) 개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축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다. 대수선 건축물

-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별 신축건축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m^2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 이하를 변경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 } m^2 \text{ 당 시가표준액} &= \text{건물신축가격기준액} \times \text{구조지수} \times \text{용도지수} \times \text{위치지수} \times \\ &\quad \text{가감산특례} \times m^2 \text{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별표2]} \end{aligned}$$

3) 대수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연수의 4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예) 1988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6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8 + [\text{경과연수}(28\text{년}) \times 0.40] = 1999\text{년}(\text{신축연도})$$

※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변경된)경과연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라. 재축 건축물

1) 재축된 건축물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별표1]

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			비 고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중 중층건축물	
1	100	80	60	○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 중층건축물이란 1개층을 복층으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2	100	80	60	
3	100	80	60	
4	100	<u>80</u>	<u>60</u>	
5	100	85	65	
6	100	85	65	
7	100	85	65	
8	100	85	65	
9	100	85	65	
10	100	85	65	
<u>11</u>	<u>100</u>	<u>85</u>	<u>65</u>	

[별표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m ²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	비 고
	대 수 선	
1	25	○ 신축건축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m ²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2	25	
3	25	
4	25	
5	<u>25</u>	
6	35	
7	35	
8	35	
9	35	
10	30	
<u>11</u>	<u>30</u>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가. 감산율

대 상 건 물	감산율
(1)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0%초과~10%이하	90/100
(2)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10%초과~20%이하	80/100
(3)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20%초과~30%이하	70/100
(4)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30%초과~40%이하	60/100
(5)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40%초과~50%이하	50/100
(6)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50%초과~60%이하	40/100
(7)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60%초과~70%이하	30/100
(8)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70%초과~80%이하	20/100
(9)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80%초과~90%이하	10/100

나. 적용요령

-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적용한 후 산정된 건축물시가표준액(이하 “산정건축물 시가표준액”이라 함)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적용요령 3)을 말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2)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은 시가(건축물+토지가액)를 산정시가표준액(산정건축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 비율

$$= \frac{\text{시가(건축물+토지가액)}}{\text{산정시가표준액(산정건축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

- 3) 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2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한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신청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 5)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감산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가감산율 적용(예시) 》

○ 현 황

- 신고가액 : 100,000,000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액)
- 산정시가표준액 : 200,000,000원(산정건축물시가표준액 120,000,000원, 토지시가표준액 80,000,000원)
- 조사가액 또는 감정가액 : 110,000,000원(건축물+토지)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 110,000,000원/200,000,000원 = 55%

○ 감산율 : 40%

○ 감산율 적용 후 건축물시가표준액 : 건축물 120,000,000원 × (1-0.4) = 72,000,000원

⇒ 감산율 적용 후 시가표준액 : 80,000,000원(토지) + 72,000,000원(건축물)
= 152,000,000원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용어 정의

- (1) “구분지상권”이란 「민법」 제289조의2에서 규정한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당해 토지에 지하·지상 공간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비율을 말한다.

나.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규정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구분지상권의 과세표준 산정 산식

구분지상권의 과세표준은 당해 구분지상권 설정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설정된 토지면적을 곱한 다음,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begin{aligned} & \text{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 & = \text{개별공시지가} \times \text{해당지표면적} \times \text{구분지상권의 입체이용저해율} \end{aligned}$$

이 경우, 입체이용저해율은 「4.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식」에 의한다.

라.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요령

- (1) 입체이용저해율 =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 그 밖의 이용저해율
- (2)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text{토지의 건물이용률}(\alpha) \times \frac{\text{저해층의 층별효용비율의 합}(B)}{\text{최유효건물층의 층별효용비율의 합}(A)}$$

- 나) 건물 이용률(α), 최유효건물층수는 [별표3] 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다) 저해층의 층별효용비율(B) 및 최유효건물층의 층별효용비율(A)은 [별표4] 건물 이용저해율 산정을 위한 층별효용비율표에 의한다. 이 경우 지하층에 대한 층별효용비율을 각각 합산한다.
 - 라) 저해층수는 최유효건물층 수에서 건축가능한 층수를 뺀 것으로 한다.
- (3)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text{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의 지하이용률}(\beta) \times \text{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P)$$

- 나) 지하이용률(β)은 [별표3] 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다)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P)은 [별표5]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표의 기준에 의한다.
- (4)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그 밖의 이용저해율

$$\text{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의 공중(기타)이용률}(\gamma) \times \text{고도별 기타 이용저해율}(Q)$$

- 나) 공중(기타)이용률(γ)은 [별표3] 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다) 고도별 기타이용저해율(Q)은 [별표6] 고도별 기타이용저해율표의 기준에 의한다.
- (5) 산출한 시가표준액에서 천원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마. 산출 예시

① 지상에 구분지상권을 정하는 경우(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이 없는 경우)

< 사실관계 >

- | | |
|------------------------|-------------------------|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지상권 설정면적 : 지표면 상공 |
| ○ 공시지가 : 40,000원/㎡ | 22m이상 36m이하의 공중공간 |
| ○ 해당 지표 면적 : 400㎡(선하지) | (단, 송전선의 상하 이격거리는 1.2m) |

(1)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가)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송전선로의 하부 하한선은 20.8m (상공22m - 이격거리1.2m)이고,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최유효층수는 [별표3]의 최유효지상층수 3층(3층×4m)이므로 12m가 되어,

지상공간에는 저해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송전선의 건물 이용저해율은 “0”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송전선은 지하에 영향이 없으므로 심도별 지하 이용저해율은 “0”

다) (그 밖의 이용저해율)

건물의 최유효층수 높이가 12m(3층×4m)이고 송전선의 하한선 높이가 20.8m로서 최유효층수 높이의 8.8m(20.8m - 12m)를 초과한 공간부터 송전선로가 있어 이용저해율이 발생하므로 [별표3]의 공중(기타)이용률(γ) $0.3 \times$ 고도별 기타이용저해율 ([별표6]의 고도 10m이하) 1.0 = “0.3”

라) 입체이용저해율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0 +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0 + (그 밖의 이용저해율) 0.3
= 0.3

(2) 구분지상권 과세표준 산정

40,000원(개별공시지가) × 400㎡(토지면적) × 0.3(입체이용저해율)
= 4,800,000원

② 지상에 구분지상권을 정하는 경우(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 관리지역 ○ 공시지가 : 40,000원/㎡ ○ 해당 지표 면적 : 400㎡(선하지) ○ 건물 : 지상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권 설정면적 : 지표면 상공 22m이상 36m이하의 공중공간 (단, 송전선의 상하 이격거리는 1.2m) - 송전선으로 인해 건물 5층 밖에 건축하지 못함

(1)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가)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관리지역의 최유효건물층수는 [별표3] 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에 지상 12층, 지하2층으로 되어 있으므로 최유효건물층의 층별효용비율의 합(40+44+100+60+50+45+42+42+42+42+42+42+42)은 675이며, 저해층은 건축 가능 최유효건물 지상층수 (12층) - 건축가능층수(5층) = 7층 이 되므로, 저해층의 층별효용비율의 합(7×42)은 294이므로

송전선의 건물 이용저해율은 [별표3]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의 건물이용률(0.7) × 저해층의 층별효용비율의 합(294)/ 최유효건물층의 층별효용비율의 합(675) = "0.305"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송전선은 지하에 영향이 없으므로 심도별 지하 이용저해율은 "0"

다) (그 밖의 이용저해율)

산정한 건물의 이용저해율이 "0을 초과하므로 [별표3]의 공중(기타)이용률의 최대치 "0.15"

라) 입체이용저해율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0.305 +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0 + (그 밖의 이용저해율) 0.15 = 0.455

(2) 구분지상권 과세표준 산정

40,000원(개별공시지가) × 400㎡(토지면적) × 0.455(입체이용저해율)
= 7,280,000원

③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정하는 경우

< 사실관계 >

- | | |
|---------------------|--------------------|
| ○ 용도지역 : 도시지역 | ○ 지상권 설정면적 : 지하토피고 |
| ○ 공시지가 : 100,000원/㎡ | 25.4m지점에 지하철도 건설 |
| ○ 해당 지표 면적 : 1,000㎡ | |

(1)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가) (건축물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지하시설물은 공중과 건물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이용저해율과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각각 "0"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도시지역의 지표면에서 25.4m부터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이 발생하므로, [별표3]의 지하이용률(β) 0.15 × [별표5]의 심도 20~30m 구간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 0.556 = "0.083"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이 산정됨

다) 입체이용저해율 :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0 + (지하부분의 지하이용저해율) 0.083
+ (그 밖의 이용저해율) 0 = 0.083

(2) 구분지상권 과세표준 산정

100,000원(개별공시지가) × 1,000㎡(토지면적) × 0.083 (입체이용저해율)
= 8,300,000원

[별표3] 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

지역 이용률	도 시 지 역	관 리 지 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건물 이용률(α)	0.8	0.7	0.6
지하 이용률(β)	0.15	0.15	0.10
공중(기타) 이용률(γ)	0.05	0.15	0.30
최유효지상층수	23	12	3
최유효지하가능층수	4	2	1

- (1)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의 용도지역을 말함
- (2) 산정한 건물이용저해율이 “0”을 초과하는 경우 공중(기타)이용률은 최고치를 적용한다
- (3) 각 층별 높이는 4m로 간주한다.

[별표4] 건축물 이용저해율 산정을 위한 층별효용비율표

층 별	도 시 지 역	관 리 지 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5 층 이 상	35	42	-
4 층	40	45	-
3 층	50	50	80
2 층	60	60	100
지 상 1 층	100	100	100
지 하 1 층	44	44	48
지하2층이상	38	40	-

- (1)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의 용도지역을 말함
- (2) 각 층별 높이는 4m로 간주한다.

[별표5]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표

지역 심도(m)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P)		
	도 시 지 역	관 리 지 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0 ~ 10미만	1.000	1.000	1.000
10 ~ 20미만	0.778	0.714	0.600
20 ~ 30미만	0.556	0.429	0.400
30 ~ 40미만	0.333	0.143	
40 이상	0.111		

- (1)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의 용도지역을 말함
- (2) “심도”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시설물 상단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함
- (3) 지역별 심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최소치를 적용한다

[별표6] 고도별 기타이용저해율표

지역 고도(m)	고도별 기타이용저해율(Q)		
	도 시 지 역	관 리 지 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50 초 과		0.111	0.400
41 ~ 50이하	0.125	0.222	0.600
31 ~ 40이하	0.375	0.443	0.700
21 ~ 30이하	0.625	0.667	0.800
11 ~ 20이하	0.875	0.889	0.900
10 이 하	1.000	1.000	1.000

- (1)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의 용도지역을 말함
- (2) “고도”는 [별표3]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상 최유효층수의 최고높이로부터 공중공간으로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 (3) 각층의 높이는 4m로 간주한다.
- (4) 지역별 고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최소치를 적용한다.

※ 건축물시가표준액 열람표 : CD 별도

기 타 물 건

I. 차 량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3. 차량 :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와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가.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나.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다.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라.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용어해설

가. 차 체(Frame)

자동차 몸체(Body)나 기관(Engine) 등의 주요부분을 장치하는 부분 즉, 자동차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

나. 기 관(Engine)

자동차를 주행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 현재 널리 사용되는 자동차용 기관(Engine)은 피스톤형, 왕복식 내연기관으로 가솔린(Gasoline)과 디젤(Diesel) 기관으로 분류

다. 마 력(출력)

기관(Engine)의 힘을 나타내는 마력은 공업규격상 널리 사용되는 동력의 실용단위로서 영국 및 미국에서는 H.P, 독일에서는 P.S, 프랑스에서는 C.V 등 국별로 호칭이 상이하나 대체로 말의 힘을 기초로 하여 1초간에 75kg의 물체를 1m 옮기는 작업율을 말함

라. 모델연도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델년도로, 자동차 차대번호 10번째 자리에 표기된 부호의 해당 연도를 말함

마. 내용연수

차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바.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

(예시)

- 2018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7년 제작 : " 1년 적용
- 2016년 제작 : " 2년 적용

사. 잔가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78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01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4	0.061	0.050
승합	15년	0.794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102	0.085	0.072	0.060	
화물	15년	0.778	0.704	0.597	0.510	0.426	0.357	0.298	0.255	0.215	0.182	0.153	0.131	0.110	0.093	0.079	0.067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종	용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승용자동차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승합자동차	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화물자동차	영업용	6년	0.702	0.561	0.463	0.316	0.219	0.153	0.100
이륜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3. 적용요령

가.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제작연도(사실상의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등록 기록이 있는 중고차, 말소등록 부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조·판매자"라 한다)가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의 경우에는 잔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다"목의 잔가율 적용도 이와 같다)

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형식별 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동일한 형식별 기준가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명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형식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차량 기준가격표 : CD 별도

다.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자동차전부손해 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발급), 풍수해로 인한 피해사실증명서(지자체발급)를 통해 침수사실이 증명된 차량은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30%를 특별 감가(천원 이하 절사)한다.

라. 차량의 종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붙임 “원동기변경”, “차체변경”항목에 해당하는 가격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다만,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1) 이 책의 기준가격표에 없는 종류변경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와 이 가격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가한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원동기의 상·중·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상 : 신조에 준하는 것 또는 개수한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없는 원동기
- 중 : 상과 하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 후 원동기가 가동하는 상태지만 약간의 정비를 요하는 것이나 변경전 원동기가 재생은 가능하나 대수리를 요하는 것
- 하 : 파손이나 노후로 가동이 불가능한 폐품과 유사한 것

마.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잔가율을 적용하고,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 취득 전 사용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바.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제작연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고, 수입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 (주한 외국대사관용 외국산 차량은 외교부에 등록된 연도, 주한 미군 소유의 차량은 관할차량 등록기관에 등록된 연도를 신규 등록연도로 본다.)

4. 산출예시

산출예시 (1)

- 차량(차명/형식) : 그랜드카니발(차명) MBB13A-HG(형식)(비영업용 국산 승합)
- 기 준 가 격 : 22,072천원
- 제 작 연 도 : 2018년도 (잔가율 0.794)
- 시가표준액 : $22,072\text{천원} \times 0.794 = 17,525\text{천원}$

산출예시 (2)

- 차량(차명/형식) : CC2.0TSI(차명) 3CC(형식)(비영업용 외산 승용)
- 기 준 가 격 : 35,420천원
- 제 작 연 도 : 2016년도 (잔가율 0.605)
- 시가표준액 : $35,420\text{천원} \times 0.605 = 21,429\text{천원}$

산출예시 (3)

- 차량(차명/형식) : 쏘렌토(차명) XMF75DB-S(형식)(비영업용 국산 승용)
- 기 준 가 격 : 27,807천원
- 제 작 연 도 : 2014년도 (잔가율 0.437)
- 시가표준액 : $27,807\text{천원} \times 0.437 = 12,151\text{천원}$

산출예시 (4)

- 차량(차명/형식) : 프라이드(차명) DEH33P-H-S(형식)(비영업용 국산 승용)
- 기 준 가 격 : 12,495천원
- 제 작 연 도 : 2010년도 (잔가율 0.221)
- 시가표준액 : $12,495\text{천원} \times 0.221 = 2,761\text{천원}$

산출예시 (5)

- 차량(기종) : K52.0LPI디럭스A/T(영업용 국산 승용)
- 기 준 가 격 : 16,073천원
- 제 작 연 도 : 2017년도 (잔가율 0.562)
- 시가표준액 : $16,073\text{천원} \times 0.562 = 9,033\text{천원}$

5. 원동기 · 차체변경

가. 원동기변경

(1) 동일형식변경(노후 및 파손 등 사유로 원동기 전체교환)

(단위 : 천원)

차종분류		변경구분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변경후엔진상태		상	하	상	하
		변경전엔진상태					
승용자동차 (지프포함)		중	963	-	-	-	-
		하	1,193	933	-	-	-
승합자동차	30인승미만 (합승)	중	402	-	1,214	-	-
		하	590	442	1,470	1,197	-
자동차	30인이상 (버스)	중	-	-	1,724	-	-
		하	-	-	1,887	1,614	-
화물자동차	소형 (3톤미만)	중	526	-	1,088	-	-
		하	709	465	1,330	1,074	-
자동차	중형 (7톤이하)	중	1,174	-	1,484	-	-
		하	1,497	1,123	1,838	1,560	-
자동차	대형 (7톤초과)	중	-	-	2,039	-	-
		하	-	-	2,559	2,113	-

(2) 상이형식변경(연료절감 등 목적)

(단위 : 천원)

차종분류		변경구분		가솔린기관에서 디젤기관으로		기관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변경후엔진상태	변경전엔진상태	상	하	상	하
승용자동차 (지프포함)		중		-	-	1,180	-
		하		-	-	1,400	1,185
승합자동차	30인승미만 (합승)	중		1,600	-	-	-
		하		1,850	1,500	-	-
자동차	30인이상 (버스)	중		2,063	-	-	-
		하		2,602	1,964	-	-
화물자동차	소형 (3톤미만)	중		1,550	-	-	-
		하		1,920	1,565	-	-
자동차	중형 (7톤이하)	중		1,800	-	-	-
		하		2,330	1,800	-	-
자동차	대형 (7톤초과)	중		2,135	-	-	-
		하		3,018	2,161	-	-

(3) 국산품으로 변경(두산인프라코어>대우중합기계>구한국기계)

(단위 : 천원)

차종분류	기종 규격 변경전엔진상태	D0846 H M	D2156 H M	D2156 H T	D2156 HMU	4BAI
		185HP	236HP	281HP	220LP	85PS
승합자동차 (버)	중	4,362	5,151	—	6,373	—
	하	4,910	5,793	—	7,168	—
화물자동차	중	3,802	4,900	6,456	—	1,521
	하	4,953	4,431	7,248	—	1,700

나. 차체변경

(1) 탑설치

(단위 : 천원)

종 류 톤 수 별	탑 설 치		
	일 반		냉 동 탑
	STEEL	AL	
0.5톤 이하	800	800	1,700
0.5톤초과 ~ <u>0.8톤</u> 이하	1,600	1,800	4,000
<u>0.8톤초과</u> ~ 1톤이하	2,000	2,300	5,300
1 " ~ 1.5 "	2,300	2,600	6,000
1.5 " ~ 2.5 "	3,000	3,300	8,000
2.5 " ~ 3 "	3,450	3,700	8,400
3 " ~ 4.5 "	4,300	4,600	9,600
4.5 " ~ 6.5 "	4,700	5,100	11,000
6.5 " ~ 8 "	5,800	6,500	12,000
8 " ~ 11 "	6,700	7,400	13,000
11톤 초과	7,100	7,800	14,000

(2) 탱크로리 설치

(단위 : 천원)

종 류 용 량 별	철 판 조	분뇨탱크	FRP조	스탠레스조
2,000 ℓ 이하	3,948	4,507	5,402	7,632
3,000 ℓ "	4,373	5,192	8,797	10,570
4,000 ℓ "	4,798	5,879	10,762	13,508
5,000 ℓ "	5,222	6,564	12,728	16,443
6,000 ℓ "	5,647	7,250	14,692	19,381
7,000 ℓ "	6,069	7,934	16,658	22,321
8,000 ℓ "	6,494	8,621	18,623	25,255
9,000 ℓ "	6,919	9,098	20,589	28,192
10,000 ℓ "	7,339	9,991	22,552	31,128
12,000 ℓ "	8,350	10,668	24,517	34,067
14,000 ℓ "	9,190	13,553	26,483	37,004
16,000 ℓ "	10,030	15,173	28,447	39,940
16,000 ℓ 초과	11,710	16,706	30,418	42,877

(3) 유압식크레인 설치

○ 광림

(단위: 천원)

종 류	기 종	<u>최대인양능력(ton.m)</u>	가 격
스틱크레인	KN083	<u>0.8</u>	15,500
	KN594	<u>4.7</u>	31,000
	KN1204EX	<u>11.5</u>	39,000
	KN1204EX(J/S)	<u>11.5</u>	40,000
	KN1304EX	<u>13</u>	41,000
	KN1304EX(J/S)	<u>13</u>	42,000
	KN1404EX	<u>14</u>	44,000
	KN1604	<u>16</u>	46,000
	KN1604(J/S)	<u>16</u>	47,000
너클크레인	KS733N STD	<u>6.1</u>	23,000
	KS734N STD	<u>7</u>	24,000
	KS735N STD	<u>6.9</u>	25,000
	KS1500 STD	<u>15</u>	33,000
	KS1500 T/S	<u>15</u>	34,000
	KS1900 ST		39,000
	KS2056 STD	<u>18</u>	38,000
	KS2056 T/S	<u>18</u>	39,000
	KS2056H	<u>18</u>	41,000
	KS2057H	<u>18</u>	43,000
	KS2700	<u>30</u>	66,700
	KS6000	<u>60</u>	85,500
	KS7000	<u>65</u>	89,500
	KS7000L	<u>65</u>	92,500
	KS7000L(J/S)		96,000

(단위 : 천원)

종 류	기 종	형 식	가 격
큰 팔(KP)	2500	L	126,976
		S	131,540
	1500	L	93,397
		S	94,500
	800	L	39,000
		S	31,500
	890	TNS	34,600
	1090	DT(TNS)	39,600
	2490	TNS	123,000
2990	TNS	160,000	
센 팔(KN)	470	T	10,500
		TN	14,000
		TNS	16,000
		TNL	13,125
	670	T	13,650
		TN	15,225
		TNS	19,425
		TNL	18,375
	894	T	14,700
		TN	16,275
		TNS	22,000
		TNL	19,406
	105	TNS	28,000
		TNL	24,150
	1490	2	26,250
		AWV	32,000
	160	2	32,025
		3	33,600
		4	36,129
	674	TN	18,000
TNS		20,000	
125-4	TNW	30,500	
140	TNW	29,600	

(단위 : 천원)

종 류	기 종	형 식	가 격
센 팔(KN)	175-4	TNW	37,000
	175-5	TNW	39,000
	215-4	TNW	43,900
	215-5	TNW	45,900
	250-4	TNW	46,900
	250-5	TNW	48,900
	300-4	TNW	52,800
	300-5	TNW	54,800
	500-6	TNW	95,000
		1504	
날랜 팔(KL)	321		12,600
	313		16,000
긴 팔(KS)	313		5,145
	523		6,825
	733		7,417
	734		9,989
	735		12,027
	373		10,275
	374		12,136
	376		14,490
	503		13,965
	504		16,065
	505		15,502
	506		17,735
	1255		20,500
	733 SUPER		13,000
	734 SUPER		14,000
	735 SUPER		15,000
	1036		18,000
	1256 SUPER		20,000
	1256 GOLD		22,000
	1756		13,000
	2705		43,000
	2075		43,000
	2865		43,000
	1756		13,000
	2705		41,000
	1756 T/S		26,000
	1256 SUPER		22,000

○ 수산중공업

(단위 : 천원)

기종명		<u>최대하중능력(ton/m)</u>	가 격	
직진식 크레인	소형	SCS263	<u>2.2/1.9</u>	18,000
		SCS323	<u>3.2/2.6</u>	23,000
		SCS324	<u>3.2/2.6</u>	24,000
		SCS333	<u>3.2/2.6</u>	23,000
		SCS334	<u>3.2/2.6</u>	24,000
		SCS335	<u>3.2/2.5</u>	25,000
		SCS513	<u>4.81/2.0</u>	26,000
		SCS514M		22,000
		SCS524M		23,000
	중형	SCS736 STD	<u>6.0/2.6</u>	31,000
		SCS736 M STD		30,500
		SCS736 TOP	<u>6.0/2.6</u>	33,000
		SCS736L2 STD	<u>6.0/2.5</u>	32,000
		SCS736L2 TOP	<u>6.0/2.5</u>	34,000
		SCS746L STD	<u>7.0/2.4</u>	33,000
		SCS746L TOP	<u>7.0/2.4</u>	35,000
		SCS886	<u>7.6/2.0</u>	43,000
	SCS887	<u>7.6/2.0</u>	45,000	
	대형	SCS1015LS		52,000
		SCS1216		57,000
SCS1616			76,000	
SCS1716			72,500	
SCS2016			90,000	
굴절식크레인	SCK1213	<u>2.54/4.6</u>	35,000	
	SCK1613	<u>2.6/6</u>	44,000	
	SK11000LP		33,000	
	SK13000		39,000	

(단위 : 천원)

기 종	가 격	기 종	가 격
SCS253	12,000	SCS316(F/A + R/A)	18,000
SCS253(R/O)	13,600	SCS503(S/T)	15,000
SCS313(S/T)	10,500	SCS503(R/O)	15,000
SCS313(R/O)	10,500	SCS613	16,000
SCS313(F/A)	9,600	SCS615(R/O)	19,000
SCS313(F/A + R/O)	12,500	SCS503M	15,000
SCS313(F/A + R/A)	13,000	SCS615M	18,000
SCS314(S/T)	14,000	SCS615(R/A)	19,000
SCS314(R/O)	13,000	SCS615(R/O + T/SE)	20,000
SCS314(F/A)	14,500	SCS615(R/A + T/SE)	21,000
SCS314(F/A + R/O)	16,000	SCS736(R/O)	21,500
SCS314(F/A + R/A)	16,500	SCS736(F/A + R/A)	22,500
SCS315(STD)	15,000	SCS736(R/O + T/SE)	22,500
SCS315(F/A)	15,500	SCS736(R/A + T/SE)	23,000
SCS315(R/O)	14,500	SCS1015(F/A + R/A + T/S)	37,000
SCS315(F/A + R/O)	17,000	SCK080	4,000
SCS315(F/A + R/A)	17,500	SCK8000S	14,000
SCS313	10,000	SCK144H	24,500
SCS515	18,000	SCK30600	46,000
SCS726	23,000	SCK143C	24,000
SCS316(R/O)	15,500	SCK20600	36,500
SCS316(F/A + R/O)	17,500	B-9003	20,790

○ DY(구 동양기전)

(단위 : 천원)

<u>기종명</u>			<u>최대인양능력(ton.m)</u>	가 격
<u>스틱 크레인</u>	<u>중형</u>	<u>SS2037</u>	<u>18</u>	41,000
	<u>대형</u>	<u>SS7506S</u>	<u>70</u>	93,000

(4) 픽업덮개 설치

(단위 : 천원)

규격	가격	비고
쌍용 코란도스포츠 등 픽업덮개 설치	800	하드탑, 하프탑 등 유형구분 없음

※ 픽업덮개를 통칭 하드탑/하프탑/쿠페탑/쿠페탑엠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 기준 등이 모호하므로 유형구분 하지 않음

(5) 파워 게이트(리프트 게이트)

(단위 : 천원)

규격	가격		비고
	자동	수직	
1ton	2,800	2,000	하나비전특장 고려정공특장
2.5ton	2,900	2,300	
3.5ton	3,000	2,400	
5ton	3,200	2,600	
8ton	3,500	2,900	

(6) 웍바디 설치

(단위 : 천원)

규격	가격	비고
1ton	3,800	수동식
1.2ton	4,200	"
1ton	5,800	유압식
1.2ton	6,200	"
2.5ton	10,000	"
3.5ton	11,000	"
4.5~5ton(6.3m)	14,000	"
4.5~5ton(7.2m)	15,000	"
8ton	17,000	"
11ton	17,500	"
12.5ton	18,500	"
14ton 이상	19,000	"
평트레일러(14.5m)	27,000	"

<< 내용연수 및 잔가율 >> (1) ~ (6)는 화물자동차에 준함

표. 기 계 장 비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도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2. 용 어 해 설

가. 내용연수

기계장비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나.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 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기계장비의 사용연수

(예시)

- **2018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7년** 제작 : " 1년 적용
- **2016년** 제작 : " 2년 적용

다. 잔 가 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3. 종 류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01 : 불 도 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02 : 굴 삭 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03 : 로 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04 : 지 게 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05 : 스 크 레 이 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06 : 덤 프 트 렉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07 : 기 중 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08 : 모 터 그 레 이 더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09 : 롤 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 노 상 안 정 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 콘 크 리 트 뱃 칭 플 랜 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13 :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 콘 크 리 트 펌 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 : 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 골재공급장치 · 건조가열장치 · 혼합장치 · 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 골 재 살 포 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 쇠 석 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 : 공 기 압 축 기	·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공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 : 천 공 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 : 항 타 및 항 발 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 <u>자 갈</u> 채 취 기	· <u>자갈</u> 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 준 설 선	· 펌프식 · 바켓식 · 덩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26 : 노 면 측 정 장 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 : 도 로 보 수 트 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 : 노 면 파 쇄 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 : 선 별 기	· 골재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 : 그 밖의 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4.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포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0.802	0.708	0.637	0.514	0.418	0.332	0.276	0.220	0.175	0.139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13	0.841	0.768	0.709	0.603	0.517	0.433	0.363	0.303	0.266	0.223	0.187	0.157	0.131	0.100		
불도저, 가중기, 터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베틱 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향타및향발기	15	0.855	0.793	0.736	0.644	0.568	0.487	0.418	0.358	0.308	0.276	0.237	0.204	0.174	0.150	0.129	0.100

5. 적용요령

가.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계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기계장비 기준가격표 : CD 별도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수입으로 인하여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되, 수입연도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

6. 산출예시

산출예시 (1)

- 기 종 : 덤프트럭(타타대우상용차) DH2DJ1(로얄)
- 가 격 : 81,500천원
- 제작연도 : 2018년도 (잔가율 0.802)
- 산 출 : $81,500\text{천원} \times 0.802 = 65,363\text{천원}$

산출예시 (2)

- 기 종 : 굴삭기(HITACHI) ZX20U-5B
- 가 격 : 27,000천원
- 제작연도 : 2016년 (잔가율 0.637)
- 산 출 : $27,000\text{천원} \times 0.637 = 17,199\text{천원}$

산출예시 (3)

- 기 종 : 기중기(LIEBHERR) LTM1160-5.1
- 가 격 : 1,609,171천원
- 제작연도 : 불 명
- 수입연도 : 2015년 (잔가율 0.487)
- 산 출 : $1,609,171\text{천원} \times 0.487 = 783,666\text{천원}$

Ⅲ. 선 박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2. 선박: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1. 정 의

선박은 기선·범선·부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의미하며 물위에 뜨는 부양성과 여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그리고 적재된 것을 원하는 위치로 운반할 수 있는 이동성의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가. 총 톤 수

선박의 용적 즉 크기(부피개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 선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

나. 적재적량

선박에 물건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

다. 선 령

배의 나이로서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 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라. 진 수 일

배를 신조하여 처음 물위에 띄운 날

마. 모터요트

기관을 사용하여 항해하는 요트

바. 세일링요트

기관과 돛을 사용하나 주로 돛을 사용하여 항해하는 요트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 체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 선	여 객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화물선	일 반 화 물 선	20년	"	0.109	10%
		유 조 선	18년	"	0.120	10%
		특 수 화 물 선	12년	"	0.175	10%
		L N G 운 반 선	20년	"	0.109	10%
	어 선	16년	"	0.134	10%	
	예 인 선	12년	"	0.175	10%	
	부 선	12년	"	0.175	10%	
	기 타 선	12년	"	0.175	10%	
경금속선	여 객 선	20년	"	0.109	10%	
	수 중 익 선	20년	"	0.109	10%	
	공 기 부 양 선	20년	"	0.109	10%	
	어 선	16년	"	0.134	10%	
	기 타 선	12년	"	0.175	10%	
합 성 수 지 선 (F.R.P)	여 객 선	20년	"	0.109	10%	
	화 물 선	20년	"	0.109	10%	
	어 선	14년	"	0.152	10%	
	기 타 선	12년	"	0.175	10%	
	요 트	12년	"	0.175	10%	
기 타 선	잠 수 유 람 선	14년	"	0.152	10%	

선 종 별	용 도	내 용 연 수	감 가 상 각 법	감 가 율	잔 존 율
목 선	여 객 선	12년	정액법	0.075	10%
	화 물 선	12년	"	0.075	10%
	예 인 선	10년	"	0.09	10%
	기 타 선	10년	"	0.09	10%
	어 선	8년	"	0.1125	10%
시멘트선	부 선	10년	"	0.09	10%
기 타 선	보 트	8년	"	0.1125	10%
	모 터 보 트	8년	"	0.1125	10%
	유 선	8년	"	0.1125	10%
	수 상 스 쿠 터	8년	"	0.1125	10%
	수 상 오 토 바 이	8년	"	0.1125	10%
	카 누	8년	"	0.1125	10%
	카 약	8년	"	0.1125	10%

나. 기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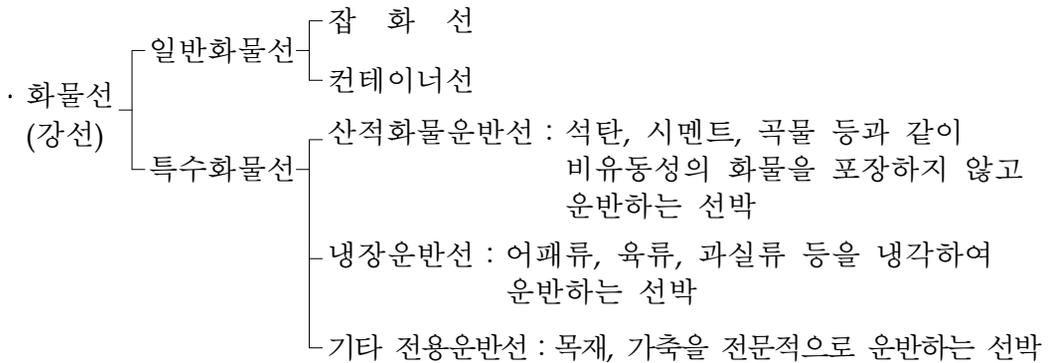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연 수	감 가 상 각 법	감 가 율	잔 존 율	비 고
기 관	15년	정률법	0.142	10%	-

3. 적용요령

가. 적용요령

- 1)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종 및 용도별, 톤수별 단계를 구분하여 그 톤수에 체차로 각 톤당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 2) 선박의 톤수는 총 톤수에 의하되 1톤 미만의 단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단, 1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여 톤당 과표로 안분한다)
- 3) 선박의 선령계산
 - 선령계산은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조 후 1년 미만의 선박은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선령이 1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년으로 계산한다.
 - 선박의 진수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3년 전을 진수연도로 보고 진수월일이 불명시는 진수연도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 내용연수가 초과된 선박은 경과연수 최종연도의 가액으로 한다.
- 4) 유조선에는 화학제품운반선, LPG탱크, 당밀운반선 등 화물을 액체상태로 운반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
- 5) 10톤 이상의 유람선은 여객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10톤 미만의 유람선은 기타선 용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6) 선박수리에 대한 과표적용
 - 용도변경 : 변경된 선박 전체과표의 $\frac{25}{100}$
 - 적재적량변경 : 증가된 과표액의 $\frac{80}{100}$

7) 일반화물선과 특수화물선은 강선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8)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천원 미만인 것은 절사한다.

9) 목철선은 목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10) 선박안전기술공단(KST) 검사대상 선박 중 기타선(플레저보트)으로 분류된 경우 모터보트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되, 거주구역(침실 및 위생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선박은 합성수지선(F.R.P) 중 요트(모터)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나. 가감산 특례

1) 무동력선은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감산한다(부선 제외).

2) 외국산 기관은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가산한다.

3) 급랭시설을 완비한 특수어선은 10%를 가산한다.

4) 선박기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첨부표 참조)를 적용하되 933kW 이상의 기관은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kW당 74,600원을 가산 적용하고 표에 없는 선박기관은 비례배분방식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5) LPG선은 유조선 기준가격을 적용하되,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가산한다.

4. 기준 가격

가. 선박 톤당 기준가격

(단위 : 천원)

선종별	용도	단계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강선	여객선	50톤이하	6,848	342,400
		51 ~ 150	6,309	973,300
		151 ~ 300	5,481	1,795,450
		301톤이상	4,595	-
	일반 화물선	500톤이하	3,169	1,584,500
		501 ~ 1000	2,434	2,801,500
		1001 ~ 3000	1,628	6,057,500
		3001 ~ 10000	1,220	14,597,500
		10001 ~ 20000	832	22,917,500
		20001 ~ 60000	455	41,117,500
		60001톤이상	404	-
	유조선	500톤이하	3,059	1,529,500
		501 ~ 1000	2,362	2,710,500
		1001 ~ 3000	1,313	5,336,500
		3001 ~ 10000	1,177	13,575,500
		10001 ~ 20000	865	22,225,500
		20001 ~ 60000	493	41,945,500
		60001톤이상	357	-
	LNG운반선	60001톤이상	1,545	-

(단위 : 천원)

선종별	용도	단계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특수 화물선	500톤이하	2,773	1,386,500
		501 ~ 1000	2,112	2,442,500
		1001 ~ 3000	1,185	4,812,500
		3001 ~ 10000	1,031	12,029,500
		10001 ~ 20000	800	20,029,500
		20001 ~ 60000	414	36,589,500
		60001톤이상	357	-
	어선	100톤이하	5,348	534,800
		101 ~ 300	4,510	1,436,800
		301 ~ 500	4,123	2,261,400
		501톤이상	3,799	-
	예인선	10톤이하	10,744	107,440
		11 ~ 30	11,206	331,560
		31 ~ 50	12,009	571,740
		51톤이상	12,811	-
	부선	300톤이하	1,352	405,600
		301 ~ 500	1,262	658,000
		501톤이상	990	-
	기타선	100톤이하	5,547	554,700
		101 ~ 300	5,317	1,618,100
301 ~ 500		5,047	2,627,500	
501톤이상		4,344	-	
경금속선	여객선	50톤이하	15,697	784,850
		51 ~ 100	15,917	1,580,700
		101톤이상	16,054	-

(단위 : 천원)

선종별	용도	단계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특수 여객선 (수중익선)	50톤이하	18,988	949,400
		51 ~ 100	18,988	1,898,800
		101톤이상	18,988	-
	특수 여객선 (공기부양선)	<u>5톤이하</u>	20,444	102,220
		<u>6 ~ 50</u>	20,035	1,003,795
		<u>51 ~ 100</u>	19,626	1,985,095
		<u>101톤이상</u>	19,217	-
	여선	50톤이하	12,187	609,350
		51 ~ 100	12,305	1,224,600
		101 ~ 300	12,431	3,710,800
		301 ~ 500	12,374	6,185,600
		501톤이상	12,187	-
	기타선	50톤이하	16,150	807,500
		51 ~ 100	16,304	1,622,700
		101톤이상	16,540	-
합성 수지선 (F.R.P)	여객선	50톤이하	10,900	545,000
		51 ~ 100	11,564	1,123,200
		101톤이상	11,744	-
	화물선	50톤이하	8,290	414,500
		51 ~ 100	8,481	838,550
		101톤이상	8,676	-

(단위 : 천원)

선종별	용도		단계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어선		30톤이하	6,849	205,470
			31 ~ 50	7,820	361,870
			51 ~ 100	7,996	761,670
			101톤이상	8,035	-
	기타선		30톤이하	7,983	239,490
			31 ~ 50	8,150	402,490
			51 ~ 100	8,316	818,290
			101톤이상	8,581	-
	요트	모터	길이10미터 미만	45,606	-
			길이10미터 이상	50,259	-
		세일링	길이10미터 미만	28,011	-
			길이10미터 이상	31,121	-
목선	여객선		30톤이하	3,835	115,050
			31 ~ 50	3,698	189,010
			51 ~ 100	3,520	365,010
			101톤이상	3,349	-
	화물선		100톤이하	3,003	300,300
			101 ~ 300	2,893	878,900
			301톤이상	2,648	-
	어선		50톤이하	2,938	146,900
			51 ~ 100	2,806	287,200
			101톤이상	2,572	-
	예인선		10톤이하	2,913	29,130
			11 ~ 30	2,786	84,850
			31 ~ 50	2,685	138,550
			51톤이상	2,386	-
	기타선		50톤이하	2,887	144,350
			51 ~ 100	2,761	282,400
			101톤이상	2,448	-

(단위 : 천원)

선종별	용도	단계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시멘트선	부선	50톤이하	522	26,100
		51 ~ 100	533	52,750
		101톤이상	533	-
기타선	보트	-	948	-
	모터보트 (국산)	-	10,032	-
	모터보트 (외산)	-	19,742	-
	모터보트 (경정용)	1대당 기준가격 (훈련용 포함)	17,779	-
	모터보트 (경정구조용)	1대당 기준가격 (훈련용 포함)	35,186	-
	유선	-	4,088	-
	잠수 유람선	-	96,488	-
	수상 스쿠터	-	1,352	-
	수상 오토바이	1대당 기준가격 (1인승)	8,013	-
	수상 오토바이	1대당 기준가격 (2인승 이상)	12,064	-
	카누	-	885	-
	카약	-	940	-

나. 선박기관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기 종	기준가격	기 종	기준가격
4kW/2,200RPM	856	190kW/2,300RPM	22,800
8kW/1,200RPM	1,384	201kW/2,300RPM	24,120
11kW/1,500RPM	1,480	213kW/2,300RPM	25,560
16kW/1,200RPM	2,048	239kW/2,300RPM	26,768
22kW/ 950RPM	2,816	272kW/1,800RPM	30,464
34kW/ 950RPM	4,352	298kW/1,800RPM	33,376
45kW/ 950RPM	5,760	351kW/1,800RPM	39,312
56kW/1,170RPM	7,168	366kW/1,800RPM	43,920
75kW/1,200RPM	9,720	407kW/1,800RPM	50,468
93kW/1,170RPM	11,755	463kW/1,800RPM	57,412
112kW/1,200RPM	13,440	597kW/1,800RPM	74,028
127kW/2,800RPM	15,240	701kW/1,800RPM	86,924
138kW/2,800RPM	16,560	933kW/1,800RPM	115,692
145kW/1,800RPM	17,400	-	-

5. 잔가율표

가. 선박잔가율표(정률법)

연간감가율 내용연수 경과연수	0.25	0.206	0.175	0.152	0.142	0.134	0.120	0.109
	8년	10년	12년	14년	15년	16년	18년	20년
1	0.750	0.794	0.825	0.848	0.858	0.866	0.880	0.891
2	0.563	0.631	0.681	0.720	0.736	0.750	0.774	0.794
3	0.422	0.501	0.562	0.611	0.631	0.649	0.681	0.708
4	0.317	0.398	0.464	0.518	0.541	0.562	0.599	0.631
5	0.238	0.316	0.383	0.439	0.464	0.487	0.527	0.562
6	0.179	0.251	0.316	0.373	0.398	0.422	0.464	0.501
7	0.134	0.200	0.261	0.316	0.341	0.365	0.408	0.447
8	0.100	0.158	0.215	0.268	0.293	0.316	0.359	0.398
9		0.126	0.177	0.228	0.251	0.274	0.316	0.355
10		0.100	0.146	0.193	0.215	0.237	0.278	0.316
11			0.120	0.164	0.184	0.205	0.245	0.282
12			0.100	0.139	0.158	0.178	0.216	0.251
13				0.118	0.136	0.154	0.190	0.224
14				0.100	0.117	0.133	0.167	0.200
15					0.100	0.115	0.147	0.178
16						0.100	0.129	0.158
17							0.114	0.141
18							0.100	0.126
19								0.112
20								0.100

나. 선박잔가율표(정액법)

연간감가율 내용연수 경과연수	0.1125	0.09	<u>0.075</u>
	8년	10년	<u>12년</u>
1	0.8875	0.91	<u>0.925</u>
2	0.7750	0.82	<u>0.850</u>
3	0.6625	0.73	<u>0.775</u>
4	0.5500	0.64	<u>0.700</u>
5	0.4375	0.55	<u>0.625</u>
6	0.3250	0.46	<u>0.550</u>
7	0.2125	0.37	<u>0.475</u>
8	0.1000	0.28	<u>0.400</u>
9		0.19	<u>0.325</u>
10		0.10	<u>0.250</u>
<u>11</u>			<u>0.175</u>
<u>12</u>			<u>0.100</u>

다. 기관잔가율표(정률법)

경과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잔가율	0.858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경과연수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초과
잔가율	0.251	0.215	0.184	0.158	0.136	0.117	0.100	0.100

※ 내용연수 15년(연간감가율 0.142%)

6. 산 출 예 시

가. 선박 취득시

산출예시 (1)

- 선 종 : 강 선
- 용 도 : 일반화물선(내용연수 20년)
- 톤 수 : 12,000톤
- 경과연수 : 4년(잔가율 0.631)
- 과 표 액
= (10,000톤까지의 단계별최고과표액+톤당기준과표×10,000톤 초과톤수)×잔가율
= (14,597,500천원 + 832천원×2,000톤)×0.631
= 10,261,006천원

나. 급랭시설이 있는 특수어선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2)

- 선 종 : 강 선
- 용 도 : 어 선(급랭시설 완비한 특수 어선, 내용연수 16년)
- 톤 수 : 300톤
- 경과연수 : 3년(잔가율 0.649)
- 과 표 액
= (300톤까지의 체차과표×잔가율)×가감산특례
= 1,436,800천원×0.649×1.1 = 1,025,731천원

다. 적재적량 변경시

산출예시 (3)

- 선 종 : 강 선
- 용 도 : 일반화물선
- 변경전톤수 : 5,000톤
- 변경후톤수 : 5,500톤
- 경과연수 : 3년(잔가율 0.708)
- 과 표 산출방법
 - 변경후 과표 = 5,500톤까지의 체차과표×잔가율
= (6,057,500천원+1,220천원×2,500톤)×0.708=6,448,110천원
 - 변경전 과표 = 5,000톤까지의 체차과표×잔가율
= (6,057,500천원+1,220천원×2,000톤)×0.708=6,016,230천원
 - 증가과표액 = (6,448,110천원 - 6,016,230천원)×0.8(적재적량변경)
= 345,504천원

라. 선박 구조 변경시

산출예시 (4)

- 6년 경과된 국산 22kW기관을 국산신형 45kW기관으로 교체
- 증가과표액 : (국산45kW기준과표) - (국산22kW기준과표)×6년경과 잔가율
= 5,760천원 - 2,816천원×0.398=4,639천원(시가표준액)

IV. 항공기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형식별·제작회사별·정원별·최대이륙중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글라이더)·회전익항공기 등의 기기를 말한다.

2. 내용연수 및 잔가율

가.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kg초과	20년	5,700kg초과, 13,650kg이하	10년
50,000kg초과, 100,000kg이하	15년	1,500kg초과, 5,700kg이하	<u>9년</u>
13,650kg초과, 50,000kg이하	12년	1,500kg이하	<u>6년</u>

※ 회전익 항공기의 내용연수 : 항공기기준가격표(회전익)에 의함

나. 항공기의 잔가율표 : 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u>6년</u>	<u>9년</u>	10년	12년	15년	20년
0	<u>1.000</u>	<u>1.000</u>	1.000	1.000	1.000	1.000
1년	<u>0.681</u>	<u>0.774</u>	0.794	0.825	0.858	0.891
2년	<u>0.464</u>	<u>0.599</u>	0.631	0.681	0.736	0.794
3년	<u>0.316</u>	<u>0.464</u>	0.501	0.562	0.631	0.708
4년	<u>0.215</u>	<u>0.359</u>	0.398	0.464	0.541	0.631
5년	<u>0.147</u>	<u>0.278</u>	0.316	0.383	0.464	0.562
6년	<u>0.100</u>	<u>0.215</u>	0.251	0.316	0.398	0.501
7년		<u>0.167</u>	0.200	0.261	0.341	0.447
8년		<u>0.129</u>	0.158	0.215	0.293	0.398
9년		<u>0.100</u>	0.126	0.178	0.251	0.355
10년			0.100	0.147	0.215	0.316
11년				0.121	0.185	0.282
12년				0.100	0.158	0.251
13년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

3. 적용 요령

- 가. 기종별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내용연수에 따른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이하절사)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기종의 기준가격에 의하고 유사한 기종이 없을 때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
- 다. 기준가격표상 “세분화 대상기종”으로 표시된 기종의 경우 항공기 기종 및 형식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1.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 가격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항공기 번호(등록기호)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4. 기준 가격

가. 항공기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 용 연수	기 준 가 격
1	ALEXANDER SCHLEICHER	ASK21	2	600	6	92,000
2	ALEXANDER SCHLEICHER	K-8B	1	310	6	18,000
3	LET KUNOVICE	L23	2	510	6	40,000

나. 경량항공기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 가격
1	동인산업	까치	2	419	<u>6</u>	23,000
2	동해기계항공	담비	2	425	<u>6</u>	40,000
3	예모항공	ANGELFISH	2	450	<u>6</u>	12,000
4	AERODYNOS	JA-177 EVOLUTION II	2	485	<u>6</u>	68,000
5	AEROKOPTER	AK1-3	2	600	<u>6</u>	136,000
6	AEROPRAKT	A-22LS	2	600	<u>6</u>	65,000
7	AEROPRAKT	A-32	2	600	<u>6</u>	76,000
8	AIR CREATION	ARV TANARG	2	450	<u>6</u>	50,000
9	AIR CREATION	TANARG 912	2	450	<u>6</u>	56,000
10	AIRBORNE WINDSPORTS	EDGE-E	2	450	<u>6</u>	16,000
11	AIRBORNE WINDSPORTS	REDBACK	2	401	<u>6</u>	16,000
12	AVID AIRCRAFT	AVID MARK IV	2	522	<u>6</u>	24,000
13	BEST OFF	SKYRANGER	2	450	<u>6</u>	31,000
14	CESSNA AIRCRAFT	162 SKYCATCHER	<u>2</u>	<u>598</u>	<u>6</u>	120,000
15	CFM	STREAK SHADOW	2	408	<u>6</u>	34,000
16	DYNALI	DYNALI H2	2	598	<u>6</u>	112,000
17	DYNALI	DYNALI H3 EASYFLYER	2	450	<u>6</u>	106,000
18	EDRA AERONAUTICA	PETREL	2	450	<u>6</u>	64,000
19	EDRA AERONAUTICA	SUPER PETREL LS	2	600	<u>6</u>	140,000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 가격
20	EKOLOT	KR-030 TOPAZ	2	472	<u>6</u>	71,000
21	ELA AVIATION	ELA 07S	2	450	<u>6</u>	56,000
22	EVEKTOR-AEROTECHNIK.A.S	EV-97	2	472	<u>6</u>	60,000
23	EVEKTOR-AEROTECHNIK.A.S	EV-97R	2	450	<u>6</u>	64,000
24	EVEKTOR-AEROTECHNIK.A.S	HARMONY LSA	2	600	<u>6</u>	107,000
25	EVEKTOR-AEROTECHNIK.A.S	SPORTSTAR MAX	2	600	<u>6</u>	108,000
26	FLIGHT DESIGN	CTLS	2	600	<u>6</u>	124,000
27	FLIGHT DESIGN	CTLS HL ADVANCED	2	600	<u>6</u>	152,000
28	FLIGHT DESIGN	CTSW	2	600	<u>6</u>	101,000
29	FLY SYNTHESIS	STORCH	2	450	<u>6</u>	35,000
30	FLY SYNTHESIS	STORCH CL	2	450	<u>6</u>	38,000
31	FLY SYNTHESIS	STORCH HS	2	450	<u>6</u>	40,000
32	FLYING MACHINES	FM250 VAMPIRE	1	450	<u>6</u>	39,000
33	FRESH BREEEEZE	XCITOR	2	368	<u>6</u>	24,000
34	HELISPORT	CH-7 KOMPRESS	2	450	<u>6</u>	128,000
35	HELISPORT	CH-77 RANABOT	2	450	<u>6</u>	184,000
36	I.C.P S.R.L	AMIGO	2	460	<u>6</u>	46,000
37	I.C.P S.R.L	AMIGO S	2	450	<u>6</u>	52,000
38	I.C.P S.R.L	BINGO	2	560	<u>6</u>	30,000
39	I.C.P S.R.L	BINGO 4S	2	450	<u>6</u>	34,000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 가격
40	I.C.P S.R.L	BINGO 503	2	450	<u>6</u>	30,000
41	I.C.P S.R.L	BINGO 912UL	2	449	<u>6</u>	44,000
42	I.C.P S.R.L	BINGO 912ULS	2	450	<u>6</u>	48,000
43	I.C.P S.R.L	BINGO VG XL	2	450	<u>6</u>	28,000
44	I.C.P S.R.L	SAVANNAH JABIRU	2	450	<u>6</u>	37,000
45	I.C.P S.R.L	SAVANNAH S	2	560	<u>6</u>	56,000
46	I.C.P S.R.L	SAVANNAH VG	2	560	<u>6</u>	44,000
47	I.C.P S.R.L	SAVANNAH XL	2	560	<u>6</u>	47,000
48	I.C.P S.R.L	SUPER BINGO	2	454	<u>6</u>	36,000
49	I.C.P S.R.L	VIMANA	2	560	<u>6</u>	56,000
50	IBIS AIRCRAFT	MAGIC GS-700	2	569	<u>6</u>	27,000
51	JABIRU AIRCRAFT PTY LTD	J-200	2	543	<u>6</u>	44,000
52	JABIRU AIRCRAFT PTY LTD	J-230D	2	600	<u>6</u>	72,000
53	JABIRU AIRCRAFT PTY LTD	JABIRU SK	2	500	<u>6</u>	25,000
54	JABIRU AIRCRAFT PTY LTD	JABIRU UL	2	450	<u>6</u>	32,000
55	JIHLAVAN AIRPLANES, S.R.O	JA 600	2	600	<u>6</u>	100,000
56	JIHLAVAN AIRPLANES, S.R.O	KP-5 ASA	2	580	<u>6</u>	88,000
57	KITFOX AIRCRAFT	KITFOX IV	2	522	<u>6</u>	26,000
58	KITFOX AIRCRAFT	KITFOX CLASSIC IV	2	544	<u>6</u>	26,000
59	KITFOX AIRCRAFT	KITFOX LITE2	2	450	<u>6</u>	21,000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 가격
60	MURPHY	MAVERICK	2	390	<u>6</u>	20,000
61	MURPHY	RENEGADE SPIRIT	2	430	<u>6</u>	16,000
62	PULSAR AIRCRAFT	PULSAR	2	454	<u>6</u>	28,000
63	PULSAR AIRCRAFT	PULSAR III	2	480	<u>6</u>	48,000
64	QUICKSILVER	GT 500	2	455	<u>6</u>	28,000
65	QUICKSILVER	MX SPORT	2	238	<u>6</u>	12,000
66	QUICKSILVER	MX2 SPRINT	2	327	<u>6</u>	20,000
67	QUICKSILVER	SPORT 2S	2	452	<u>6</u>	23,000
68	QUICKSILVER	XPLORER	2	327	<u>6</u>	16,000
69	RAINBOW AIRCRAFT	CHEETAH XLS	2	565	<u>6</u>	36,000
70	RAJ HAMAS ULTRALIGHT	X-AIR	2	450	<u>6</u>	15,000
71	RAJ HAMAS ULTRALIGHT	X-AIR F	2	480	<u>6</u>	17,000
72	RAJ HAMAS ULTRALIGHT	X-AIR HANUMAN	2	450	<u>6</u>	18,000
73	RANS INCORP	S-6S	2	544	<u>6</u>	36,000
74	RANS INCORP	S-9 CHAOS	1	322	<u>6</u>	27,000
75	RANS INCORP	S-9 SUPERCHAOS	1	368	<u>6</u>	31,000
76	ROTORSPOK UK	ROTORSPOK UK MT-03	2	450	<u>6</u>	60,000
77	<u>ROTORSPOK UK</u>	<u>CALIDUS</u>	<u>2</u>	<u>450</u>	<u>6</u>	72,000
78	S2T AERO LTD.	AT-4 LSA	2	600	<u>6</u>	116,000
79	SIX CHUTER	LEGEND XL	2	499	<u>6</u>	32,000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 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 용 연수	기 준 가 격
80	SKYGEAR	COMET UL	2	599	<u>6</u>	23,000
81	STORM AIRCRAFT	STORM 300	2	450	<u>6</u>	32,000
82	TECNAM S.R.L	ASTORE	2	600	<u>6</u>	104,000
83	TECNAM S.R.L	P92 EAGLET	2	600	<u>6</u>	108,000
84	TECNAM S.R.L	TECNAM P2008	2	600	<u>6</u>	112,000
85	TL-ULTRALIGHT	TL-96 STAR	2	450	<u>6</u>	60,000
86	<u>TL-ULTRALIGHT</u>	<u>TL-3000 SIRIUS</u>	<u>2</u>	<u>600</u>	<u>6</u>	96,000
87	ZENITH	CH-601	2	600	<u>6</u>	30,000
88	ZENITH	CH-601HD	2	544	<u>6</u>	30,000
89	ZENITH	CH-601HDS	2	540	<u>6</u>	30,000
90	ZENITH	CH-601K-UL	2	450	<u>6</u>	30,000
91	ZENITH	CH-601-UL	2	480	<u>6</u>	30,000
92	ZENITH	CH-601XL	2	600	<u>6</u>	36,000
93	ZENITH	CH-650LS	2	600	<u>6</u>	40,000
94	ZENITH	CH-701	2	500	<u>6</u>	36,000
95	ZENITH	CH-750	2	600	<u>6</u>	48,000

다. 고정익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가격
1	한국항공우주산업	KC-100	4	1,630	<u>9</u>	352,000
2	AIR TRACTOR	AT-502	1	4,264	<u>9</u>	560,000
3	AIR TRACTOR	AT-802	1	7,257	10	985,000
4	AIRBUS	A319-115	15	76,500	15	72,200,000
5	AIRBUS	A320-200	143	75,500	15	32,300,000
6	AIRBUS	A321-100	195	78,000	15	30,600,000
7	AIRBUS	A321-200	177	89,000	15	35,700,000
8	AIRBUS	A330-200	258	238,000	20	87,100,000
9	AIRBUS	A330-300	275	215,280	20	93,500,000
10	AIRBUS	A350-900	311	268,000	20	153,000,000
11	AIRBUS	A380-800	407	560,000	20	238,000,000
12	AMD ZODIAC	XL-2	2	794	6	96,000
13	AVIAT	S-2B	2	771	<u>6</u>	136,000
14	BEEHCRAFT	BEECH 1900D	19	7,765	10	4,000,000
15	BEEHCRAFT	C23	4	1,111	<u>6</u>	144,000
16	BEEHCRAFT	C90-GT	8	4,581	<u>9</u>	2,730,000
17	BEEHCRAFT	E90	8	4,581	<u>9</u>	1,650,000
18	BOEING	B737-400 (세분화 대상기종)	148	62,800	15	25,600,000
19	BOEING	B737-700 (세분화 대상기종)	150	60,781	15	41,600,000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가격
20	BOEING	B737-700(BBJ) (세분화 대상기종)	-	77,564	15	60,000,000
21	BOEING	B737-800	-	79,000	15	46,700,000
22	BOEING	B737-900	193	79,000	15	40,800,000
23	BOEING	B737-900ER	159	81,640	15	48,400,000
24	BOEING	B747-400	382	388,730	20	104,000,000
25	BOEING	B747-400(BDSF) (세분화 대상기종)	화물	394,600	20	119,000,000
26	BOEING	B747-400ERF (세분화 대상기종)	화물	412,800	20	142,000,000
27	BOEING	B747-400F (세분화 대상기종)	화물	394,625	20	136,000,000
28	BOEING	B747-400SF	화물	394,600	20	114,000,000
29	BOEING	B747-8	368	447,690	20	178,000,000
30	BOEING	B747-8F	화물	442,250	20	170,000,000
31	BOEING	B767-300	260	156,500	20	52,700,000
32	BOEING	B767-300F	화물	186,800	20	73,900,000
33	BOEING	B777-200	312	247,207	20	120,000,000
34	BOEING	B777-300	376	272,970	20	102,000,000
35	BOEING	B777-300ER	291	344,730	20	161,000,000
36	BOEING	B777-F	화물	347,810	20	148,000,000
37	BOEING	B787-9	269	252,650	20	148,000,000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가격
38	BOMBARDIER	BD-700-1A10	19	45,132	12	43,200,000
39	BOMBARDIER	CL-215-1A10	20	19,730	12	4,320,000
40	BOMBARDIER	CL-600-2B16	11	20,460	12	17,200,000
41	BOMBARDIER	CL-600-2B19	50	24,040	12	17,200,000
42	BOMBARDIER	CL-601	11	20,460	12	17,200,000
43	CESSNA AIRCRAFT	A188B	1	1,814	9	288,000
44	CESSNA AIRCRAFT	C-152	2	757	6	119,000
45	CESSNA AIRCRAFT	C-172M	4	1,043	6	153,000
46	CESSNA AIRCRAFT	C-172N	4	1,043	6	152,000
47	CESSNA AIRCRAFT	C-172P	4	1,088	6	182,000
48	CESSNA AIRCRAFT	C-172R	4	1,111	6	233,000
49	CESSNA AIRCRAFT	C-172RG	2	1,202	6	207,000
50	CESSNA AIRCRAFT	C-172S	4	1,157	6	307,000
51	CESSNA AIRCRAFT	C-182S	4	1,406	6	414,000
52	CESSNA AIRCRAFT	C-208	11	3,628	9	1,370,000
53	CESSNA AIRCRAFT	C-208B	11	3,969	9	1,660,000
54	CESSNA AIRCRAFT	C-500	8	5,375	9	850,000
55	CESSNA AIRCRAFT	C-525 (세분화 대상기종)	8	4,852	9	4,800,000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가격
56	CESSNA AIRCRAFT	C525M2 (세분화 대상기종)	<u>7</u>	4,853	<u>9</u>	4,480,000
57	CESSNA AIRCRAFT	C-560V	9	7,394	10	5,950,000
58	CESSNA AIRCRAFT	P-206E	6	1,620	<u>9</u>	280,000
59	CESSNA AIRCRAFT	R172K	4	1,156	<u>6</u>	212,000
60	CESSNA AIRCRAFT	T188C	1	1,497	<u>6</u>	324,000
61	CESSNA AIRCRAFT	T-206H	6	1,633	<u>9</u>	528,000
62	CESSNA AIRCRAFT	T-207A	8	1,724	<u>9</u>	501,000
63	CESSNA AIRCRAFT	TU-206G	6	1,630	<u>9</u>	442,000
64	CESSNA AIRCRAFT	U-206G	6	1,630	<u>9</u>	416,000
65	CIRRUS DESIGN	SR20	4	1,360	<u>6</u>	320,000
66	CIRRUS DESIGN	SR22	4	1,542	<u>9</u>	480,000
67	DIAMOND	DA 40 NG	4	1,280	<u>6</u>	372,000
68	DIAMOND	DA 42	4	1,900	<u>9</u>	616,000
69	DIAMOND	DA 42 NG	4	1,900	<u>9</u>	648,000
70	EMBRAER	EMB-145EP	50	20,990	12	15,200,000
71	EXTRA	EA330/LT	2	950	<u>6</u>	384,000
72	GULFSTREAM	GVI	13	46,992	12	61,600,000
73	GULFSTREAM	G650ER	<u>13</u>	46,992	<u>12</u>	61,600,000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 용 연수	기준가격
74	GULFSTREAM	GV-SP	14	41,277	12	45,000,000
75	HAWKER	HAWKER 750	8	12,247	10	14,400,000
76	LET KUNOVICE	L410UVP-E20	21	6,600	10	3,110,000
77	MAULE	MXT-7	4	1,134	<u>6</u>	127,000
78	MOONEY AIRCRAFT	M20J	4	1,315	<u>6</u>	289,000
79	MOONEY AIRCRAFT	M20R	4	1,528	<u>9</u>	400,000
80	MORAVAN	Z142	2	1,090	<u>6</u>	256,000
81	PIPER	PA 25-235	1	1,317	<u>6</u>	248,000
82	PIPER	PA 31-350	10	3,175	<u>9</u>	600,000
83	PIPER	PA 34-200	7	1,905	<u>9</u>	369,000
84	PIPER	PA 34-220T	7	2,155	<u>9</u>	752,000
85	PIPER	PA 44-180	4	1,720	<u>9</u>	448,000
86	PIPER	PA 44-180T	4	1,780	<u>9</u>	152,000
87	SOCATA	TB-9	4	1,060	<u>6</u>	142,000
88	VULCANAIR	P68C-TC	6	2,084	<u>9</u>	456,000

라. 회전익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가격
1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AS-350B1	6	2,200	<u>9</u>	1,040,000
2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AS-350B2	6	2,250	<u>9</u>	1,760,000
3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AS-355F1	6	2,400	<u>9</u>	1,440,000
4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AS-365N2	11	4,250	<u>9</u>	5,120,000
5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AS-365N3	11	4,300	<u>9</u>	6,240,000
6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BO 105S	5	2,500	<u>9</u>	900,000
7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EC 135P2+	6	2,910	<u>9</u>	5,280,000
8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EC 155B1	12	4,850	<u>9</u>	9,040,000
9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EC 225	28	11,000	10	32,800,000
10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EC 225LP	28	11,000	10	32,800,000
11	AGUSTAWESTLAND	AW109SP	8	3,175	<u>9</u>	5,760,000
12	AGUSTAWESTLAND	AW139	17	6,400	10	12,000,000
13	AGUSTAWESTLAND	AW169	<u>10</u>	<u>4,600</u>	<u>9</u>	7,920,000
14	BELL HELICOPTER	AMT UH1H	13	4,319	<u>9</u>	1,290,000
15	BELL HELICOPTER	B407	7	2,268	<u>9</u>	2,400,000
16	BELL HELICOPTER	BELL 206B	5	1,450	<u>9</u>	840,000
17	BELL HELICOPTER	BELL 206L-1	7	1,882	<u>9</u>	1,140,000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 용 연수	기준가격
18	BELL HELICOPTER	BELL 206L-3	7	1,882	<u>9</u>	1,360,000
19	BELL HELICOPTER	BELL 206L-4	7	1,882	<u>9</u>	1,600,000
20	BELL HELICOPTER	BELL 214B-1	18	5,670	<u>9</u>	4,320,000
21	BELL HELICOPTER	BELL 214ST	20	7,938	10	5,400,000
22	BELL HELICOPTER	BELL 230	9	3,810	<u>9</u>	3,040,000
23	BELL HELICOPTER	BELL 412EP	13	5,398	<u>9</u>	7,200,000
24	BELL HELICOPTER	BELL 412SP	15	5,398	<u>9</u>	4,650,000
25	BELL HELICOPTER	BELL 430	8	4,082	<u>9</u>	5,600,000
26	ENSTROM H/USA	ENSTROM 280FX	3	1,179	<u>6</u>	392,000
27	ENSTROM H/USA	ENSTROM 480B	5	1,361	<u>6</u>	825,000
28	ERICKSON	S-64E	5	19,051	10	15,700,000
29	HILLER	UH-12E	3	1,270	<u>6</u>	304,000
30	KAMOV/RUSSIA	KA-32A	16	11,000	10	6,800,000
31	KAMOV/RUSSIA	KA-32T	19	11,000	10	4,800,000
32	KAWASAKI	BK117	10	2,850	<u>9</u>	1,760,000
33	KAWASAKI	BK117B-1	8	3,200	<u>9</u>	2,400,000
34	KAWASAKI	BK117B-2	10	3,350	<u>9</u>	3,120,000
35	KAWASAKI	BK117C-1	10	3,350	<u>9</u>	3,600,000

(단위 : 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가격
36	KAWASAKI	BK117C-2	10	3,585	<u>9</u>	5,520,000
37	MCDONNELL DOUGLAS	H369D	5	1,360	<u>6</u>	680,000
38	MCDONNELL DOUGLAS	MD-500N	5	1,519	<u>9</u>	1,000,000
39	PZL SWIDNIK	MI-2	9	3,550	<u>9</u>	540,000
40	PZL SWIDNIK	SW-4	5	1,800	<u>9</u>	1,000,000
41	ROBINSON	R22 BETA	2	621	<u>6</u>	212,000
42	ROBINSON	R44(II)	4	1,134	<u>6</u>	384,000
43	SIKORSKY	S-58HT	18	5,700	<u>9</u>	1,880,000
44	SIKORSKY	S-58JT	16	5,670	<u>9</u>	3,120,000
45	SIKORSKY	S-61N	28	9,299	<u>10</u>	10,800,000
46	<u>SIKORSKY</u>	<u>S-76A</u>	<u>14</u>	<u>4,898</u>	<u>9</u>	5,600,000
47	<u>SIKORSKY</u>	<u>S-76A++</u>	<u>14</u>	<u>4,898</u>	<u>9</u>	5,600,000
48	SIKORSKY	S-76B	14	5,307	<u>9</u>	6,080,000
49	SIKORSKY	S-76C+ (세분화 대상기종)	14	5,307	<u>9</u>	8,000,000
50	SIKORSKY	S-76C++ (세분화 대상기종)	14	5,307	<u>9</u>	10,000,000
51	SIKORSKY	S-76D	14	5,386	<u>9</u>	11,300,000

5. 산 출 예 시

가. 세분화 대상 기종이 아닌 경우 [기준가격표 적용]

산출예시 (1)

- 기종 및 형식 : CESSNA C-172S
- 기준가격 : 307,000,000원
- 내용연수 : 6년
- 경과연수 : 2년 (잔가율 : 0.464)
- 시가표준액 : $307,000,000\text{원} \times 0.464 = 142,448,000\text{원}$

나. 세분화 대상 기종인 경우 [별표1. 적용]

산출예시 (2)

- 기종 및 형식 : BOEING B737-700 (세분화 대상 기종)
- 등록기호 : HL7227
- 세분화된 기종 및 형식 : B737-700(BBJ)
(「별표1.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가격표」 적용)
- 기준가격 : 60,000,000,000원
- 내용연수 : 15년
- 경과연수 : 6년 (잔가율 : 0.398)
- 시가표준액 : $60,000,000,000\text{원} \times 0.398 = 23,880,000,000\text{원}$

※ 별표1.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가격표

(‘17.08 현재 국토교통부 등록 항공기 기준)

세분화전		세분화후		기준가격 (천원)
형식	등록기호	형식	등록기호	
B737-700	HL7227, HL7759, HL7787, HL8022, HL8205, HL8207, HL8222, HL8290	B737-700	HL8022, HL8205, HL8207	41,600,000
		B737-700 (BBJ)	HL7227, HL7759, HL7787, HL8222, HL8290	60,000,000
B747-400F	HL7400, HL7403, HL7417, HL7419, HL7420, HL7434, HL7436, HL7437, HL7438, HL7439, HL7448, HL7449, HL7499, HL7462, HL7467, HL7600, HL7601, HL7602, HL7603, HL7605, HL7616, HL7466	B747-400 (BDSF)	HL7417	119,000,000
		B747-400F	HL7400, HL7403, HL7419, HL7420, HL7434, HL7436, HL7437, HL7448, HL7449, HL7462, HL7467, HL7616, HL7466	136,000,000
		B747-400ERF	HL7438, HL7439, HL7499, HL7600, HL7601, HL7602, HL7603, HL7605	142,000,000
S-76C	HL9252, HL9254, HL9266, HL9270, HL9284, HL9285, HL9489, HL9291, HL9474	S-76C+	HL9252, HL9254, HL9266, HL9270, HL9284, HL9285, HL9489	8,000,000
		S-76C++	HL9291, HL9474	10,000,000
C525	HL8201, HL8202, HL8283, HL8219	C525	HL8201, HL8202, HL8283	4,800,000
		C525M2	HL8219	4,480,000

V. 시 설 물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0호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적용 요령》

- 시설 중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 레 저 시 설

1. 수 영 장

가. 정 의

수영장은 수영 및 레저를 위해 옥외에 인공적으로 축조한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 1) 경기용 수영장 : 규격용(20m×50m)으로 만들어서 수영 경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
- 2) 일반 수영장 : 규격 이외의 변형된 형태로서 수영 가능한 것으로 성인 및 아동 모두 사용 가능한 것
- 3) 다이빙 수영장 : 다이빙 가능한 수영장
- 4) 미끄럼틀 수영장 : 수영장면에서 높이 5m이상의 미끄럼틀이 가설된 수영장
- 5) 기타 수영장 : 상기의 4가지 종류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모든 수영장
(다만, 유원지 내의 물놀이용 수영장은 오락시설로 본다)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 크 리 트 조	30년	"	10%	0.03	
기 타 조	40년	"	10%	0.0225	

라. 기준가격표

① 경기용 수영장(1,000㎡ 기준)

(단위 : 천원)

깊 이 \ 구 조	철	콘	크	리	트	기 타 조
	근	크	리	트	조	
1 m 이 상		241,000			161,000	132,000
2 m 이 상		275,000			186,000	152,000
3 m 이 상		305,000			205,000	168,000

* 깊이 1m 미만은 일반 수영장, 4m 이상은 다이빙 수영장 적용

② 일반 수영장

(단위 : 천원)

종류 깊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000m ² 기 준	1m ² 증감시	1,000m ² 기 준	1m ² 증감시	1,000m ² 기 준	1m ² 증감시
1m미만	135,000	82	89,000	54	75,000	46
1m이상	185,000	70	130,000	48	108,000	41
2m이상	220,000	66	153,000	44	123,000	36
3m이상	255,000	62	170,000	42	140,000	33

③ 다이빙 수영장

(단위 : 천원)

종류 깊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기 타 조	
	500m ² 기 준	1m ² 증감시	500m ² 기 준	1m ² 증감시	500m ² 기 준	1m ² 증감시
4m이상	135,000	91	91,000	62	75,000	52
5m이상	150,000	87	100,000	59	82,000	49
6m이상	162,000	85	108,000	57	89,000	47

④ 미끄럼틀 수영장

(단위 : 천원)

종류 깊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000m ² 기 준	1m ² 증감시	1,000m ² 기 준	1m ² 증감시	1,000m ² 기 준	1m ² 증감시
1m미만	155,000	82	113,000	57	98,000	47
1m이상	213,000	72	150,000	48	131,000	42
2m이상	255,000	66	178,000	46	152,000	39
3m이상	275,000	63	195,000	43	166,000	35

⑤ 기타 수영장

(단위 : 천원)

종류 기준 깊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000㎡ 기 준	1㎡ 증감시	1,000㎡ 기 준	1㎡ 증감시	1,000㎡ 기 준	1㎡ 증감시
1m미만	152,000	82	105,000	57	91,000	47
1m이상	209,000	70	147,000	49	126,000	42
2m이상	249,000	66	175,000	46	150,000	39
3m이상	276,000	64	191,000	43	165,000	35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 \text{기준가격} + (\text{㎡당 증가가격} \times \text{증가면적}) \}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일반 수영장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깊이 2.5m, 넓이 1,500㎡임)
 - 감가율 : 0.0225(철근콘크리트조)
 - 잔가율 : 1 - (0.0225 × 7년) = 0.8425
 - 1,000㎡기준가격 : 220,000,000원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 : 66,000원/㎡ × 500㎡ = 33,0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220,000,000 + 33,000,000 = 253,000,000원
 - 시가표준액 : 253,000,000원 × 0.8425(잔가율) = 213,152,500원

바. 수영장 개수 시가표준액

1) “수영장의 개수”란 수영장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수영장의 바닥 또는 벽면 개수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수영장의 도장, 일부 타일교체,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수영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수영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② 그 밖에 수영장을 가동시키는 주요 기계장비,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수영장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일반 수영장(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깊이: 2.5m, 넓이: 1,500㎡)에서 750㎡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220,000,000원 + 66,000원/㎡×500㎡ = 253,000,000원
- 개수비율 : 750㎡/1,500㎡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253,000,000원×1(잔가율)×0.5=126,500,000원

3) 개수 해당 수영장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1년에 설치한 일반 수영장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1년 + [0.20 × 경과연수(7년)] = 2012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일반 수영장을 2018년에 일부 개수(500㎡)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깊이 2.5m, 넓이 1,500㎡)

- 감가율 : 0.0225(철근콘크리트조)
- 개수 전 잔가율 : 1 - (0.0225×7년) = 0.842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1년 + (0.20×7년) = 2012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225×6년) = 0.865
- 1,000㎡기준가격 : 220,000,000원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 : 66,000원/㎡×500㎡ = 33,0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220,000,000 + 33,000,000 = 253,000,000원
- 시가표준액 : 253,000,000원×0.865(잔가율) = 218,845,000원

2. 스케이트장

가. 정 의

스케이트장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연상태의 스케이트장, 즉 겨울동안에 눈 또는 연못에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시설로 볼 수 없다.

나. 종 류

- 1) 롤러스케이트장
- 2) 기타스케이트장 : 롤러스케이트장 이외의 스케이트장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종류별	구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롤러스케이트장		10년	정액법	10%	0.09	
기타스케이트장		10년	"	10%	0.09	

라. 기준가격표

① 롤러스케이트장

(단위 : 천원)

구 조	별	기준가격
인 조 석 물 깔 기 바 닥	500m ² 기준	32,400
	1m ² 증감시	45
시 멘 트 물 탈 바 닥	500m ² 기준	24,300
	1m ² 증감시	35
아 스 타 일 바 닥	500m ² 기준	26,000
	1m ² 증감시	35

구 조 별	기준가격	
폴 리 우 레 탄 바 닥	500m ² 기준	40,400
	1m ² 증감시	55
아 크 릴 바 닥	500m ² 기준	27,700
	1m ² 증감시	40
기 타 바 닥	500m ² 기준	21,600
	1m ² 증감시	30

② 기타스케이트장

(단위 : 천원)

규 격	기 준 가 격
1,000m ² 기준	37,200
1m ² 증 감 시	29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① 롤러스케이트장

$$\text{시가표준액} = \{\text{구조별기준가격} + (1\text{m}^2\text{증감가격} \times \text{증감면적})\} \times \text{잔가율}$$

② 기타스케이트장

$$\text{시가표준액} = \{1,000\text{m}^2\text{기준가격} + (1\text{m}^2\text{증감가격} \times \text{증감면적})\} \times \text{잔가율}$$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설치한 롤러스케이트장(구조 : 폴리우레탄, 규격 : 1,500m²)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9(롤러스케이트장)
 - 잔가율 : $1 - (0.09 \times 7\text{년}) = 0.37$
 - 500m²기준가격 : 40,400,000원 A
 - m²당 증가시 기준가격 : $55,000\text{원} / \text{m}^2 \times 1,000\text{m}^2 = 55,000,000$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40,400,000 + 55,000,000 = 95,400,000$ 원
 - 시가표준액 : $95,400,000\text{원} \times 0.37(\text{잔가율}) = 35,298,000$ 원

바. 스케이트장 개수 시가표준액

- 1) “스케이트장의 개수”란 스케이트장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스케이트장의 바닥 또는 벽면 개수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스케이트장의 도장,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스케이트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스케이트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② 그 밖에 스케이트장을 가동시키는 주요 기계장비,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스케이트장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롤러스케이트장(구조 : 폴리우레탄, 규격 : 1,500㎡)에서 750㎡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40,400,000원 + 55,000원/㎡ × 1,000㎡ = 95,400,000원
 - 개수비율 : 750㎡ / 1,500㎡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95,400,000원 × 1(잔가율) × 0.5 = 47,700,000원

3) 개수 해당 스케이트장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1년에 설치한 롤러스케이트장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1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7년)] = 2012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설치한 롤러스케이트장(구조 : 폴리우레탄, 규격 : 1,500m²)을 2018년 일부 개수(500m²)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9(롤러스케이트장)
- 개수 전 잔가율 : $1 - (0.09 \times 7년) = 0.37$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1년 + (0.20 \times 7년) = 2012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9 \times 6년) = 0.46$
- 500m²기준가격 : 40,400,000원 A
- m²당 증가시 기준가격 : $55,000\text{원} / \text{m}^2 \times 1,000\text{m}^2 = 55,000,000\text{원} \dots\dots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40,400,000 + 55,000,000 = 95,4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95,400,000\text{원} \times 0.46(\text{잔가율}) = 43,884,000\text{원}$

3. 골프연습장 시설물

가. 정 의

- 1) 골프연습장용 시설물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 2) '운동시설'이란 볼을 치기 위한 타석과 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집구·이송·공급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 자동식 : 볼 집구에서 이송·공급까지 자동화된 시설
 - 반자동식 : 볼 집구에서 이송까지 자동화된 시설
 - 수동식 : 볼 이송·공급을 수동으로 하는 방식
- 3) '안전시설'이란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된 보호망 등을 말한다.
- 4) '철탑'이란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지탱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나.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운동시설	5	정액법	10%	0.18	
안전시설	3	"	10%	0.3	
철 탑	30	"	10%	0.03	

다. 기준가격

① 운동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1타석당 가격	비고
수 동 식	1,500	
반 자 동 식	2,500	
자 동 식	3,200	

② 안전시설

(단위 : 원)

구 분	1㎡당 가격	비고
PE(폴리에스틸렌) 나일론망 등	3,400	

③ 철 탐

(단위 : 원)

구 분	1m당 가격	비고
앵 글	544,000	
원파이프	544,000	
투파이프	368,000	
삼각파이프	520,000	

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골프연습장 시설물 시가표준액
 = 운동시설 시가표준액(A) + 안전시설 시가표준액(B) + 철탐등 시가표준액(C)

- A : 1타석당 가격 × 타석수 × 잔가율
- B : 1m²당 가격 × 면적(m²) × 잔가율
- C : 1m당 가격 × 높이(m) × 개수 × 잔가율
-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설치한 골프장(운동시설 : 자동식, 100타석/ 안전시설 : 1,000m²/ 철탐 : 원파이프, 10m, 6개)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운동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5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안전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3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철탐 : 1 - (0.03×7년) = 0.79
 - 운동시설 시가표준액 : 3,200,000원/타석×100타석×0.1(잔가율) = 32,000,000원 …… A
 - 안전시설 시가표준액 : 3,400원/m²×1,000m²×0.1(잔가율) = 340,000원 …… B
 - 철탐 시가표준액 : 544,000원/m×10m×6개×0.79(잔가율) = 25,785,000원 …… C
 - 기준가격 합계 : A + B + C = 58,125,000원

마. 적용요령

- 1) 실내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옥상 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철탐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경우는 산출된 기준가격에 50%를 경감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바. 골프연습장 개수 시가표준액

- 1) “골프연습장의 개수”란 골프연습장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골프연습장의 도장, 안전망의 수선, 운동시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교체,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① 운동시설의 개수는 주요부품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기둥, 철탑, 바닥, 벽면의 개수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안전시설인 그물망의 개수는 3분의 1 이상을 교체하는 것에 한한다.
- 2) 골프연습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운동시설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다. 기준가격”에 따라 계산된 운동시설의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안전시설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다. 기준가격”에 따라 계산된 안전시설의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③ 철탑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다. 기준가격”에 따라 계산된 철탑의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골프연습장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6개의 철탑(원파이프, 10m)에서 각 철탑의 5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철탑 10m 6개 기준가격 : 544,000원/m×10m×6개=32,640,000원
 - 각 철탑의 개수비율 : 5m/10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32,640,000원×1(잔가율)×0.5=16,320,000원

3) 개수 해당 철탑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1년에 설치한 철탑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1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7년)] = 2012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설치한 골프장(운동시설 : 자동식, 100타석/ 안전시설 : 1,000m²/ 철탑 : 원파이프, 10m, 6개)을 2018년 일부 개수(각 철탑의 5m) 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개수 전 잔가율

운동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5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안전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3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철탑 : $1 - (0.03 \times 7년) = 0.79$

• 철탑의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1 + (7년 \times 0.20) = 2012년$

• 개수 후 잔가율

운동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5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안전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3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철탑 : $1 - (0.03 \times 6년) = 0.82$ (각 철탑의 1/2씩 개수하였으므로 각 철탑마다 적용)

• 운동시설 100타석 시가표준액 : $3,200,000\text{원} / \text{타석} \times 100\text{타석} \times 0.1(\text{잔가율})$
 $= 32,000,000\text{원} \dots\dots\dots A$

• 안전시설 1,000m² 시가표준액 : $3,400\text{원} / \text{m}^2 \times 1,000\text{m}^2 \times 0.1(\text{잔가율})$
 $= 340,000\text{원} \dots\dots\dots B$

• 10m 철탑 6개 시가표준액 : $544,000\text{원} / \text{m} \times 10\text{m} \times 6 \times 0.82(\text{잔가율})$
 $= 26,764,000\text{원} \dots\dots\dots C$

• 시가표준액 합계 : $A + B + C = 59,104,000\text{원}$

4. 전 망 대

가. 정 의

주요 시설물의 도난 및 재해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설치된 감시탑 또는 경관을 관망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구 분

설치 자재에 따라 목재, 철재, 기타 전망대로 구분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목 재	15년	정액법	10%	0.06	
철 재	40년	"	10%	0.0225	
기 타	40년	"	10%	0.0225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기 준 가 격
목 재	6㎡기준	2,014
	1㎡증감시 기준가격	178
철 재	6㎡기준	4,900
	1㎡증감시 기준가격	484
기 타	6㎡기준	2,496
	1㎡증감시 기준가격	208

마. 조사방법 : 사용자재와 시설면적을 조사하여 적용

바.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1\text{m}^2\text{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증감면적})\} \times \text{잔가율}$$

$$\ast \text{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설치한 전망대(구조: 철재, 규모: 8m²)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철재)
 - 잔가율 : 1 - (0.0225×7년) = 0.8425
 - 6m² 기준가격 : 4,900,000원 A
 - m²당 증가시 기준가격 : 484,000원/m²×2m² = 968,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4,900,000 + 968,000 = 5,868,000원
 - 시가표준액 : 5,868,000원×0.8425(잔가율) = 4,943,000원

사. 전망대 개수 시가표준액

- 1) “전망대의 개수”란 전망대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기둥, 바닥 또는 벽면 개수의 경우에는 그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전망대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전망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전망대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전망대(구조: 철재, 규모: 8m²)에서 4m²를 개수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합계 : 4,900,000원 + 484,000원/m²×2m² = 5,868,000원
 - 개수비율 : 4m²/8m²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5,868,000원×1(잔가율)×0.5 = 2,934,000원

3) 개수 해당 전망대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1년에 설치한 철재전망대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1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7년)] = 2012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설치한 전망대(구조: 철재, 규모: 8m²)를 2017년 일부 개수(4m²) 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철재)
- 개수 전 잔가율 : $1 - (0.0225 \times 7년) = 0.8425$
- 개수 후 신축년도 조정 : $2011년 + (0.20 \times 7년) = 2012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225 \times 6년) = 0.865$
- 6m² 기준가격 : 4,900,000원 A
- m²당 증가시 기준가격 : $484,000\text{원} / \text{m}^2 \times 2\text{m}^2 = 968,000\text{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4,900,000 + 968,000 = 5,868,000\text{원}$
- 시가표준액 : $5,868,000\text{원} \times 0.865(\text{잔가율}) = 5,075,820\text{원}$

5. 옥외스탠드

가. 정 의

옥외스탠드란 운동경기 및 레저·영화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야외경기장, 노천극장 등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 구 분

옥외스탠드는 구조, 사무실·기타설비 및 지붕 설치 여부 등에 의해 구분한다.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크리트조	30년	"	10%	0.03
철골조	30년	"	10%	0.03
목조	10년	"	10%	0.09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가 격	
	500㎡ 기준	1㎡ 증감
○ 철근콘크리트(하부사무실, 기타설비 있을 때)		
가. 지붕이 없는 경우	98,430	168
나. 지붕이 있는 경우	129,930	218
○ 콘크리트조 또는 철재조(하부사무실, 기타설비 없을 때)		
가. 지붕이 없는 경우	20,790	30
나. 지붕이 있는 경우	56,700	95
기 타	23,500	39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 \text{기준가격} + (1\text{m}^2 \text{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증감면적}) \}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11년에 설치한 옥외스탠드(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없음, 규모: 550m²)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철근콘크리트조)
 - 잔가율 : 1 - (0.0225 × 7년) = 0.8425
 - 500m² 기준가격 : 98,430,000원 A
 - m²당 증가시 기준가격 : 168,000원/m² × 50m² = 8,4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98,430,000 + 8,400,000 = 106,830,000원
 - 시가표준액 : 106,830,000원 × 0.8425(잔가율) = 90,004,275원

바. 옥외스탠드 개수 시가표준액

- 1) “옥외스탠드의 개수”란 옥외스탠드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으로서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바닥이나 벽면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옥외스탠드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옥외스탠드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옥외스탠드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옥외스탠드(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없음, 규모: 550m²)에서 275m²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98,430,000원+168,000원/m²×50m²=106,830,000원
- 개수비율 : 275m²/550m²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106,830,000원×1(잔가율)×0.5=53,415,000원

3) 개수 해당 옥외스탠드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1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 옥외스탠드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1년 + [0.20 × 경과연수(7년)] = 2012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년에 설치한 옥외스탠드(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없음, 규모: 550m²)를 2018년 일부 개수(200m²)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철근콘크리트조)
- 개수 전 잔가율 : 1 - (0.0225×7년)=0.842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1년+(0.20×7년)=2012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225×6년)=0.865
- 500m² 기준가격 : 98,430,000원 A
- m²당 증가시 기준가격 : 168,000원/m²×50m²=8,4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98,430,000 + 8,400,000 = 106,830,000원
- 시가표준액 : 106,830,000원×0.865(잔가율)=92,407,950원

6.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가. 정 의

옥외오락시설이란 공원·유원지 또는 기타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레저시설(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각종 유원시설과 궤도(삭도를 포함함) 및 이와 유사한 오락시설을 말하며 유료 또는 무료를 불문한다.

나. 종 류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유원시설 중 안전성검사 대상
- 2) 궤도(삭도를 포함함)
- 3) 기타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레저시설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각종오락용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물 놀 이 시 설					
- 철근콘크리트조	40년	"	10%	0.0225	
- 콘크리트조	30년	"	10%	0.03	
- 기 타 조	40년	"	10%	0.0225	
<u>궤 도(삭 도)</u>	10년	"	10%	0.09	

※ 관람형 유원시설과 같이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경우 별도의 시설인 지 여부 검토

※ 물놀이시설은 유원시설업 신고대상으로서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구분되며 수영장의 구조별 내용연수 및 감가율을 적용하여 옥외오락시설로 과세

라. 기준가격표

① 각종 오락용 시설

연번	유원지명	명칭(현장표기명)	단위	기준가격(원)
1	여수 디오션리조트	나인스툼(실외파도풀)	1개소당	1,440,000,000
2	여수 디오션리조트	더블토네이도	1개소당	536,000,000
3	여수 디오션리조트	로켓슬라이드	1개소당	2,000,000,000
4	여수 디오션리조트	실내슬라이드(튜브,바디)	1개소당	246,000,000
5	여수 디오션리조트	실외슬라이드(바디,스피드)	1개소당	360,000,000
6	여수 디오션리조트	아쿠아플레이(실외)	1개소당	688,000,000
7	여수 디오션리조트	윌리윌리(실내파도풀)	1개소당	840,000,000
8	여수 디오션리조트	캐논볼1호기	1개소당	304,000,000
9	여수 디오션리조트	캐논볼2호기	1개소당	304,000,000
10	여수 디오션리조트	쿠아키즈풀(실내)	1개소당	77,600,000
11	여수 디오션리조트	타이푼리버(토렌토리버)	1개소당	2,152,000,000
12	여수 디오션리조트	파라웨이브(실내유수풀)	1개소당	352,000,000
13	여수 세계박람회장	빅오	1개소당	33,661,000,000
14	여수 세계박람회장	스카이플라이(짚라인)	1개소당	128,000,000
15	여수 세계박람회장	티보트범퍼카	1개소당	28,800,000
16	여수 세계박람회장	회전목마	1개소당	72,000,000
17	여수 여수해상케이블카	해상케이블카	1개소당	12,800,000,000
18	여수 여수해양관광개발	레일바이크	1개소당	360,000,000
19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레이싱슬라이드	1개소당	292,000,000
20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바디슬라이드	1개소당	68,000,000
21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실내아쿠아플레이어	1개소당	192,000,000
22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실내유수풀	1개소당	240,000,000
23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실외아쿠아플레이어	1개소당	512,000,000
24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아마존리버	1개소당	800,000,000
25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워터롤러코스터	1개소당	1,440,000,000
26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토네이도슬라이드	1개소당	1,056,000,000
27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튜브슬라이드	1개소당	200,000,000
28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파도풀	1개소당	368,000,000
29	나주 골드스파리조트	프로볼슬라이드	1개소당	140,000,000

연번	유원지명	명칭(현장표기명)	단위	기준가격(원)
30	담양 테지움 테마파크	미니바이킹	1개소당	20,000,000
31	담양 테지움 테마파크	바이킹	1개소당	184,000,000
32	담양 테지움 테마파크	미니열차	1개소당	48,000,000
33	담양 테지움 테마파크	범퍼카	1개소당	96,000,000
34	담양 테지움 테마파크	우주전투기	1개소당	120,000,000
35	담양 테지움 테마파크	점프앤스마일	1개소당	160,000,000
36	담양 테지움 테마파크	회전그네	1개소당	46,400,000
37	담양 테지움 테마파크	회전목마	1개소당	48,000,000
38	곡성 기차마을 네츄럴로드	미니기차	1개소당	452,000,000
39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4D영상관	1개소당	392,000,000
40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거울미로	1개소당	24,000,000
41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고카트1인	1개소당	10,600,000
42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고카트2인	1개소당	7,000,000
43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귀신의집	1개소당	24,000,000
44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대관람차	1개소당	360,000,000
45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댄싱퀸	1개소당	640,000,000
46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레일바이크	1개소당	80,000,000
47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레일바이크(2인)	1개소당	256,000,000
48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레일바이크(4인)	1개소당	416,000,000
49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로맨틱카	1개소당	5,300,000
50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뮤직익스프레스	1개소당	280,000,000
51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미들범퍼카	1개소당	7,900,000
52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바이킹	1개소당	240,000,000
53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빅범퍼카	1개소당	4,400,000
54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소형소카트	1개소당	4,400,000

연번	유원지명	명칭(현장표기명)	단위	기준가격(원)
55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스윙거	1개소당	40,000,000
56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옥토퍼스	1개소당	96,000,000
57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우주전투기	1개소당	240,000,000
58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천사그네	1개소당	46,400,000
59	곡성 기차마을드림랜드	회전목마	1개소당	96,000,000
60	화순 그린랜드물썰매장	레이싱슬라이드	1개소당	24,000,000
61	화순 그린랜드물썰매장	반원통슬라이드(오픈형슬라이드)	1개소당	32,000,000
62	화순 그린랜드물썰매장	원통형슬라이드 (워터슬라이드, 바디슬라이드)	1개소당	32,000,000
63	화순 도곡원네스스파리조트	워터슬라이더(바디슬라이드)	1개소당	32,000,000
64	화순 도곡원네스스파리조트	유아미끄럼틀(워터슬라이드)	1개소당	3,300,000
65	화순 금호리조트	바디슬라이드	1개소당	36,000,000
66	화순 금호리조트	스피드슬라이드(1,2)	1개소당	80,000,000
67	화순 금호리조트	실내아쿠아플레이	1개소당	152,000,000
68	화순 금호리조트	실외아쿠아플레이	1개소당	832,000,000
69	화순 금호리조트	튜브슬라이드	1개소당	68,000,000
70	화순 금호리조트	파도조파장치(파도풀)	1개소당	80,000,000
71	함평 자연생태공원	미니 프라이트	1개소당	96,000,000
72	함평 자연생태공원	범퍼카	1개소당	96,000,000
73	함평 자연생태공원	티컵	1개소당	48,000,000
74	함평 자연생태공원	회전목마	1개소당	120,000,000
75	장성 용매골대화레저	사계절썰매장	1개소당	520,000,000

② 물놀이 시설

연번	유원지명	현장표기명	단위	기준가격(원)	구조
1	여수 디오션리조트	썬비치풀	1개소당	240,000,000	철근콘크리트조

③ 케 도(삭 도)

(단위 : 천원)

시 설 별	규 격	기준가격	1m 증감시 기준가격	1인 증감시 기준가격
케 이 블 카	길이 1,000m기준 25인승	299,381	171	87
리 프 트 카	길이 832m기준 100인승	258,692	126	66

※ 케이블카 승강장 등 부대건물은 건축물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2012.1.1일 이후 신고된 케도(삭도)는 기준가격표의 개별가격 적용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① 각종 오락용 시설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② 물놀이 시설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③ 케 도

<2012.1.1. 이전>

$$\text{시가표준액} = \{ \text{기준가격} + (1\text{m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길이}) + (1\text{인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증감인원수}) \} \times \text{잔가율}$$

<2012.1.1. 이후>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에 설치한 각종 오락용 시설(용인 에버랜드 T-EXPRESS)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9
 - 잔가율 : $1 - (0.09 \times 6\text{년}) = 0.46$
 - 기준가격 : 18,240,000,000원
 - 시가표준액 : $18,240,000,000\text{원} \times 0.46(\text{잔가율}) = 8,390,400,000\text{원}$

- 2010년에 설치한 물놀이시설(창녕 부곡하와이 야외키드풀,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
 - 잔가율 : $1 - (0.0225 \times 8\text{년}) = 0.82$
 - 기준가격 : 80,000,000원
 - 시가표준액 : $80,000,000\text{원} \times 0.82(\text{잔가율}) = 65,600,000\text{원}$

- 2011년에 설치한 케이블카(길이: 1,200m, 규모: 30인승)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9
 - 잔가율 : $1 - (0.09 \times 7\text{년}) = 0.37$
 - 1,000m 기준 25인승 케이블카 기준가격 : 299,381,000원 …… A
 - 200m 증가시 기준가격 : $171,000\text{원}/\text{m} \times 200\text{m} = 34,200,000\text{원}$ B
 - 5인 증가시 기준가격 : $87,000\text{원}/\text{인} \times 5\text{인} = 435,000\text{원}$ …………… C
 - 기준가격 합계 : $A+B+C = 334,016,000\text{원}$
 - 시가표준액 : $334,016,000\text{원} \times 0.37(\text{잔가율}) = 123,585,920\text{원}$

- 2013년에 설치한 케이블카(밀양 얼음골케이블카)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9
 - 잔가율 : $1 - (0.09 \times 5\text{년}) = 0.55$
 - 기준가격 : 5,440,000,000원
 - 시가표준액 : $5,440,000,000\text{원} \times 0.55(\text{잔가율}) = 2,992,000,000\text{원}$

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의 개수

1) “옥외오락시설의 개수”란 옥외오락시설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하며, 옥외오락시설의 도장, 안전시설의 수선, 오락시설을 작동시키는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교체,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다만, 개별 오락시설이나 케이블카 등의 교체는 신규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출한다.

- ① 지상에 고정되어 작동되는 오락시설물의 경우에는 기둥, 철탑, 바닥면적, 벽면적의 개수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케이블카나 리프트카의 궤도의 개수는 궤도의 3분의 1 이상을 교체하는 것에 한한다.

2) 옥외오락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기둥, 철탑, 바닥면적 또는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른 해당 오락시설의 기준가격에 “개수면적/전체면적” 또는 “개수높이/전체높이” 등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케이블카 또는 리프트카의 궤도(철선)를 개수하는 경우에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③ 그 밖에 옥외오락시설물 또는 케이블카 등을 가동시키는 주요 기계장비,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옥외오락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2012년 이전에 설치된 케이블카(길이: 1,200m, 규모: 30인승)에서 600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299,381,000원+171,000원/m×200m+87,000원/인×5인
=334,016,000원
 - 개수비율 : 600m/1,200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334,016,000원×1(잔가율)×0.5=167,008,000원

3) 개수 해당 옥외오락시설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케이블카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6년)] = 2013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에 설치한 케이블카(길이: 1,200m, 규모: 30인승)를 2017년에 일부 개수(길이 500m증설) 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9(궤도)
 - 개수 전 잔가율 : $1 - (0.09 \times 7년) = 0.37$
 - 개수 후 신축년도 조정 : $2011년 + (0.20 \times 6년) = 2012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9 \times 6년) = 0.46$
 - 1,000m기준 25인승 케이블카 기준가격 : 299,381,000원 A
 - 1m증감시 기준가격 : $171,000\text{원}/\text{m} \times 200\text{m} = 34,200,000\text{원}$ B
 - 1인증감시 기준가격 : $87,000\text{원}/\text{인} \times 5\text{인} = 435,000\text{원}$ C
 - 기준가격 합계 : $A + B + C = 334,016,000\text{원}$
 - 시가표준액 : $334,016,000\text{원} \times 0.46(\text{잔가율}) = 153,647,360\text{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6.12.30>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하늘차 등
		꼬마기차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미니자동차	빅트릭, 서킷트2000, 클래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해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주 로 주 행 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복슬레이	슈퍼복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수 로 주 행 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륜라이드	후륜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 유 주 행 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수륙양용 관람차	로스트밸리 등

2)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중 회 전 고 정 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 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йма스터 등
		레인보우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스카이코스터 등
횡 회 전 고 정 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어로, 딱정벌레, 도래미약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코	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마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등실비행선, 바른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블루션, 삼각바퀴, 챌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타워라이드	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다워 등
		프레쉬팡팡	프레쉬팡팡 등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기계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사설건축물·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4)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일반 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편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미로	미로 등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리버웨이 등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워터봅슬레이, 에어슬라이드 등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슬라이드 등
		서핑라이더	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등

2. 저장 시설

1. 수 조

가. 정 의

수조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 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 1)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 2) 내수면 양만·양식을 위한 수조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 용 연 수	감 가 방 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철 관 탱 크	20년	정액법	10%	0.045	
	철 골 탱 크	40년	"	10%	0.0225	
	철근콘크리트조탱크	40년	"	10%	0.0225	
	시멘트벽돌조탱크	30년	"	10%	0.03	
	화학제품(FRP 등)	40년	"	10%	0.0225	
	토조및합성고무제품	40년	"	10%	0.0225	
	S M C	40년	"	10%	0.0225	
	스테인레스(STS)	40년	"	10%	0.0225	
지 하 압 거	40년	"	10%	0.0225		
내수면 양만·양식을 위한 수조	철근콘크리트조	30년	"	10%	0.03	
	시멘트벽돌조	20년	"	10%	0.045	
	철관원형조	18년	"	10%	0.05	
	기타합성조	10년	"	10%	0.09	

라. 기준가격표

①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단위 : 천원)

시 설	기 준 가 격	
	50m ³ 기준	1m ³ 증감시
철판탱크 (원형)	16,728	206
철판탱크 (각형)	17,360	220
철골탱크 (고가수조)	17,600	123
철근콘크리트조	13,680	112
시멘트 벽돌조	3,280	27
화학제품(FRP 등)	10,296	113
토조 및 합성고무제품	1,180	10
SMC (Sheet Molding Compound)	18,920	168
스테인레스(STS)	21,216	210
지하암거	143,800	103

* 1,000 ℓ = 1m³ = 1톤 = 5D/M

② 내수면 양만.양식을 위한 수조

(단위 : 천원)

시 설	기 준 가 격	
	330m ³ 기준	1m ³ 증감시
철근콘크리트조	25,040	78
시멘트벽돌조	18,560	55
철판원형조	19,280	59
기타합성조	13,920	44

* 면적환산은 시설면적을 뜻함

《기준가격 산출요령》

- 탱크는 용적(부피)에 의해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 사용자에게 용량을 문의하여 결정하거나(특히 고가수조)
- 부피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탱크(원통형) : 반지름×반지름×3.14×깊이 = 부피 · 각형탱크 : 가로×세로×깊이 = 부피
--

* 철근콘크리트 탱크와 벽돌조 탱크는 각형탱크와 같음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1\text{m}^3 \text{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증감부피})\}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한 수조(구조: 원형 철판탱크, 규모: 300m³)의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철판탱크)
 - 잔가율 : $1 - (0.045 \times 6\text{년}) = 0.73$
 - 50m³ 기준가격 : 16,728,000원 A
 - m³당 증가시 기준가격 : $250\text{m}^3 \times 206,000\text{원} = 51,500,000\text{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16,728,000\text{원} + 51,500,000\text{원} = 68,228,000\text{원}$
 - 시가표준액 : $68,228,000\text{원} \times 0.73(\text{잔가율}) = 49,806,440\text{원}$

바. 수조 개수 시가표준액

- 1) 수조의 개수란 수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수조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수조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먼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수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겉면적/해당 수조의 총 겉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수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수조의 시가표준액 × (개수된 겉면적/수조의 총 겉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수조의 총 겉면적 계산

- 정육면체 : 가로 × 세로 × 6
- 직육면체 : (a면의 가로 × 세로 + b면의 가로 × 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 원통형 : $(\pi r^2 \times 2) + (2\pi r \times \text{높이})$
- 타원형 : $(\pi ab \times 2) + \pi \{5(a+b)/4 - ab/(a+b)\} \times \text{높이}$
-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 수조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수조(구조: 원형 철판탱크, 규모: 300m³)에서 걸면적의 2분의 1을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16,728,000원+206,000원/m³×250m³=68,228,000원
 - 개수비율 : 1/2=0.5
 - 개수 시가표준액 : 68,228,000원×1(잔가율)×0.5=34,114,000원

- 3) 개수 해당 수조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원형 철판탱크 수조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 경과연수(6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한 수조(구조: 원형 철판탱크, 규모: 300m³)를 2018년에 일부 개수(걸면적의 2분의 1)한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철판탱크)
 - 개수 전 잔가율 : 1 - (0.045×6년) = 0.73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년+(6년×0.20) = 2013년
 - 개수 후 잔가율 : 1-(0.045×5년) = 0.775
 - 50m³ 기준가격 : 16,728,000원 A
 - m³당 증가시 기준가격 : 250m³×206,000원 = 51,5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16,728,000원 + 51,500,000원 = 68,228,000원
 - 시가표준액 : 68,228,000원×0.775(잔가율) = 52,876,700원

2. 저 유 조

가. 정 의

저유조란 유류(휘발유, 경유 등),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석유화학제품 포함)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 1) 소형저유조 : 철판탱크(원형, 각형),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 2) 대형저유조 : 철판탱크(원형), LNG특수저장조, 지하암거, 기타
- ※ 저유조는 크기, 설비자재, 제작방식에 따라 구분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판	20년	0.04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40년	0.0225	"	10%	
기타	30년	0.03	"	10%	
LNG특수저장조	40년	0.0225	"	10%	
지하암거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① 소형저유조 : 1,000배럴 미만

(단위 : 천원)

시 설	기 준 가 격	
	50 ^{m³} 기준	1 ^{m³} 증감시
철판탱크(원형)	18,560	224
철판탱크(각형)	19,360	248
철근콘크리트조	16,080	120
기타	15,500	223
LNG특수저장조	116,880	1,152

② 대형저유조 : 1,000배럴 이상

(단위 : 천원)

시 설	용량(기준)	시 가 표 준 액	
		기 준 가 격	기 준 용 량 이 상 배 량 당 증 감 액
철 판 (원 형)	1,000배럴	53,000	30.0
"	6,000배럴	208,000	20.0
"	60,000배럴	1,288,000	20.0
"	100,000배럴	2,080,000	15.0
"	200,000배럴	3,568,000	13.0
기 타	100,000배럴이상	1,663,000	7.0
"	100,000배럴미만	1,663,000	△6.0
LNG특수저장조	1,000,000배럴이상	58,400,000	52.0
"	100,000배럴이상	6,160,000	58.0
"	100,000배럴미만	6,160,000	△50.0
"	10,000배럴미만	1,640,000	△151.0
지 하 압 거	5,000,000배럴미만	66,400,000	△12.0
"	5,000,000배럴이상	66,400,000	9.0
"	10,000,000배럴이상	112,800,000	8.0
"	20,000,000배럴이상	192,000,000	5.0

* 주 : 1. 1kl = 1,000 ℓ

2. 대형저유조는 용량을 배럴(barrel)단위 기준으로 표시하기도 함.

1배럴 = 0.15898(약 0.16kl) 1kl = 약 6.29배럴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text{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증감부피})\}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한 대형저유조(구조: 원형철판, 용량: 1,500배럴)의 2018년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철판)
- 잔가율 : $1 - (0.045 \times 6\text{년}) = 0.73$
- 1,000배럴 기준가격 : 53,000,000원 A
- 배럴당 증가시 기준가격 : 30,000원 × 500배럴 = 15,0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53,000,000\text{원} + 15,000,000\text{원} = 68,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68,000,000\text{원} \times 0.73(\text{잔가율}) = 49,640,000\text{원}$

바. 저유조 개수 시가표준액

- 1) “저유조의 개수”란 저유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저유조 걸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저유조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저유조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개수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걸면적/해당 저유조의 총 걸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begin{aligned} & \cdot \text{저유조의 시가표준액} \times (\text{개수된 걸면적} / \text{저유조의 총 걸면적}) \\ & = \text{개수 시가표준액} \end{aligned}$$

저유조의 총 걸면적 계산

- 정육면체 : 가로 × 세로 × 6
 - 직육면체 : (a면의 가로×세로 + b면의 가로×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 원통형 : $(\pi r^2 \times 2) + (2\pi r \times \text{높이})$
 - 타원형 : $(\pi ab \times 2) + \pi \{5(a+b)/4 - ab/(a+b)\} \times \text{높이}$
-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 ② 그 밖에 저유조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저유조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대형저유조(구조: 원형철판, 용량: 1,500배럴)에서 걸면적의 2분의 1을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53,000,000원 + 30,000원/배럴 × 500배럴 = 68,000,000원
 - 개수비율 : 1/2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68,000,000원 × 1(잔가율) × 0.5 = 34,000,000원

3) 개수 해당 저유조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원형 저유조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6년)] = 2013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한 대형저유조(구조: 원형철판, 용량: 1,500배럴)를 2018년도에 일부 개수(겉면적의 2분의 1)한 경우 2018년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철판)
 - 개수 전 잔가율 : $1 - (0.045 \times 6년) = 0.73$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년 + (0.20 \times 6년) = 2013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45 \times 5년) = 0.775$
 - 1,000배럴 기준가격 : 53,000,000원 A
 - 배럴당 증가시 기준가격 : $30,000\text{원} \times 500\text{배럴} = 15,000,000\text{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53,000,000\text{원} + 15,000,000\text{원} = 68,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68,000,000\text{원} \times 0.775(\text{잔가율}) = 52,700,000\text{원}$

3. 사 일 로(조사료 저장용)

가. 정 의

사일로란 가축의 조사료(粗飼料)인 청조(엔시레지) 저장을 위하여 만든 탱크식 창고를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 1) 시멘트벽돌조 **사일로**
- 2) 철근콘크리트조 **사일로**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시멘트벽돌조	30년	0.03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조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시 설 별	기 준 가 격	
시멘트 벽돌조 사일로 D4.5m×H9.0m(150㎡기준)	기 준 치	10,430
	1㎡당 증 감 시	48
철근콘크리트조 사일로 D4.5m×H9.0m(150㎡기준)	기 준 치	14,080
	1㎡당 증 감 시	6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 \text{기준가격} + (1\text{㎡당 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증감부피}) \}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시가표준액산출시 고려사항 》

- 1) 사용자에게 구조(시멘트 벽돌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용량을 문의, 확인하거나 용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원통부피환산방식(반지름×반지름×3.14×높이)에 의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2) 납세의무자가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중 전체 용량이 150^m 이상인 사일로에 한한다.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된 사일로(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량 : 160^m)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철근콘크리트조)
 - 잔가율 : $1 - (0.0225 \times 6\text{년}) = 0.865$
 - 150^m 기준가격 : 14,080,000원 A
 - ^m당 증가시 기준가격 : $60,000\text{원} \times 10\text{m}^3 = 600,000\text{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14,080,000\text{원} + 600,000\text{원} = 14,68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4,680,000\text{원} \times 0.865(\text{잔가율}) = 12,698,200\text{원}$

바. 사일로 개수 시가표준액

- 1) 사일로의 개수란 사일로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사일로 걸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사일로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사일로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먼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사일로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걸면적/해당 사일로의 총 걸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사일로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사일로의 시가표준액×(개수된 걸면적/사일로의 총 걸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사일로의 총 겉면적 계산

- 정육면체 : 가로 × 세로 × 6 - 직육면체 : (a면의 가로×세로 + b면의 가로×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 원통형 : $(\pi r^2 \times 2) + (2\pi r \times \text{높이})$ - 타원형 : $(\pi ab \times 2) + \pi \{5(a+b)/4 - ab/(a+b)\} \times \text{높이}$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 **사일로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사일로**(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량 : 160m³)에서 겉면적의 2분의 1을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14,080,000원 + 60,000원/m³ × 10m³ = 14,680,000원
 - 개수비율 : 1/2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14,680,000원 × 1(잔가율) × 0.5 = 7,340,000원

- 3) 개수 해당 **사일로**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사일로**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 경과연수(6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된 **사일로**(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량 : 160m³)를 2018년에 일부 개수(겉면적의 2분의 1)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철근콘크리트조)
 - 개수 전 잔가율 : 1 - (0.0225 × 6년) = 0.86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년 + (0.20 × 6년) = 2013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225 × 5년) = 0.8875
 - 150m³ 기준가격 : 14,080,000원 A
 - m³당 증가시 기준가격 : 60,000원 × 10m³ = 6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14,080,000원 + 600,000원 = 14,680,000원
 - 시가표준액 : 14,680,000원 × 0.8875(잔가율) = 13,028,500원

4. 저 장 조

가. 정 의

저장조란 곡물, 어류, 과일, 시멘트, 화학제품, 방사성폐기물(중·저준위)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 1) 철판탱크
 - 곡물류 저장용
 - 화학제품 등 저장용(석유화학제품 제외)
- 2) 철근콘크리트(일반)
- 3) 철근콘크리트(방사성폐기물)
- 4) 콘크리트
- 5) 아연도금강판
- 6) 기 타 : 1)에서 5)까지 해당되는 것 이외의 저장조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판탱크	20년	0.04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일반)	40년	0.0225	"	10%	
철근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	100년	0.009	"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시 설 별		기 준 가 격	
철판탱크(곡물류)	200m ³	기 준 치	46,480
		1m ³ 당 증 감 시	200
철판탱크(화학제품)	10m ³	기 준 치	5,280
		1m ³ 당 증 감 시	256
철판탱크(축산분뇨)	200m ³	기 준 치	47,840
		1m ³ 당 증 감 시	204
철근콘크리트 탱크	200m ³	기 준 치	37,520
		1m ³ 당 증 감 시	104
철근콘크리트 탱크(방사성폐기물)		기 준 치	662,596,000
		1m ³ 당 증 감 시	-
아연도금강판	200m ³	기 준 치	56,800
		1m ³ 당 증 감 시	256

* 위 시설에 없는 저장시설은 매년 1. 1. 현재 가격을 과세권자가 조사결정

* 기존의 콘크리트 탱크는 철근콘크리트 탱크로 대체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 \text{기준가격} + (1\text{m}^3\text{당 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증감부피}) \}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08년에 설치된 저장조(구조: 화학제품 저장용 철판탱크, 용량: 20m³)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철판)
 - 잔가율 : $1 - (0.045 \times 10\text{년}) = 0.55$
 - 10m³ 기준가격 : 5,280,000원 A
 - m³당 증가시 기준가격 : $256,000\text{원} \times 10\text{m}^3 = 2,560,000\text{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5,280,000 + 2,560,000 = 7,84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7,840,000\text{원} \times 0.55(\text{잔가율}) = 4,312,000\text{원}$

바. 저장조 개수 시가표준액

- 1) 저장조의 개수란 저장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저장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저장조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저장조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바닥면적이나 벽면적의 개수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저장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겉면적/해당 저장조의 총 겉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저장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저장조의 시가표준액×(개수된 겉면적/저장조의 총 겉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저장조의 총 겉면적 계산

- 정육면체 : 가로 × 세로 × 6
- 직육면체 : (a면의 가로×세로 + b면의 가로×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 원통형 : $(\pi r^2 \times 2) + (2\pi r \times \text{높이})$
- 타원형 : $(\pi ab \times 2) + \pi \{5(a+b)/4 - ab/(a+b)\} \times \text{높이}$
-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 ② 그 밖에 저장조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저장조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저장조(구조: 화학제품 저장용 철판탱크, 용량: 20m³)에서 겉면적의 2분의 1을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5,280,000원 + 256,000원/m² × 10m² = 7,840,000원
 - 개수비율 : 1/2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7,840,000원 × 1(잔가율) × 0.5 = 3,920,000원

3) 개수 해당 저장조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08년에 설치한 화학제품 저장용 철판탱크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08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10년)] = 2010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08년에 설치된 저장조(구조: 화학제품 저장용 철판탱크, 용량: 20m³)를 2018년에 일부 개수(겉면적의 2분의 1)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
- 개수 전 잔가율 : $1 - (0.045 \times 10년) = 0.5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08년 + (0.20 \times 10년) = 2010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45 \times 8년) = 0.64$
- 10m³ 기준가격 : 5,280,000원 A
- m³당 증가시 기준가격 : $256,000원 \times 10m^3 = 2,56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5,280,000원 + 2,560,000원 = 7,840,000원$
- 시가표준액 : $7,840,000원 \times 0.64(\text{잔가율}) = 5,017,600원$

3. 도크 및 접안시설

1. 도 크

가. 정 의

도크란 배를 건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 1) 건도크(dry dock) : 수면과 접한 육상부를 절토하여 철근콘크리트조로 호를 만들고 수문을 설치한 것
- 2) 부도크(floating dock) : 도크자체가 잠수 또는 부상하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철재 등에 의하여 건조된 것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시 설 구 조	내용연수	감가방법	감가율	잔존율
건도크(dry dock)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0.0225	10%
부도크(floating dock)	철밧기타금속조	20년	"	0.045	10%

라. 기준가격표

① 건도크

(단위 : 천원)

구 분	단 위	기준가격
도 크 용 적	10,000톤 미만	1m ³ 당 132
	10,000톤 이상	" 120
	30,000톤 "	" 109
	50,000톤 "	" 100
	100,000톤 "	" 85
	200,000톤 "	" 68
	400,000톤 "	" 64

※ 도크용적은 지표를 기준으로 가로×세로×높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부도크

(단위 : 천원)

구	분	단 위	기준가격
도 크 용 적	10,000톤 미만	1m ³ 당	128
	10,000톤 이상	"	120
	50,000톤 "	"	110
	100,000톤 "	"	95
	200,000톤 "	"	85
	400,000톤 "	"	78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도크용적} \times 1\text{m}^3 \text{ 당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에 설치된 건도크(용적 : 15,000톤)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
 - 잔가율 : $1 - (0.0225 \times 6\text{년}) = 0.865$
 - 기준가격 : $120,000\text{원} \times 15,000\text{m}^3 = 1,800,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800,000,000\text{원} \times 0.865(\text{잔가율}) = 1,557,000,000\text{원}$

바. 도크 개수 시가표준액

- 1) 도크의 개수란 도크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도크 걸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도크의 도장이나 도크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도크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먼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도크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걸면적/해당 도크의 총 걸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도크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도크의 시가표준액×(개수된 걸면적/도크의 총 걸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 ② 그 밖에 도크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도크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건도크(용적 : 15,000톤)에서 걸면적의 2분의 1을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15,000톤 기준가격 : $120,000\text{원}/\text{m}^3 \times 15,000\text{m}^3 = 1,800,000,000\text{원}$
 - 개수비율 : $1/2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1,800,000,000\text{원} \times 1(\text{잔가율}) \times 0.5 = 900,000,000\text{원}$
- 3) 개수 해당 도크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건도크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text{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6\text{년})] = 2013\text{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에 설치된 건도크(용적 : 15,000톤)를 2018년에 일부 개수(걸면적의 2분의 1)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
 - 개수 전 잔가율 : $1 - (0.0225 \times 6\text{년}) = 0.86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text{년} + (0.20 \times 6\text{년}) = 2013\text{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225 \times 5\text{년}) = 0.8875$
 - 기준가격 : $120,000\text{원} \times 15,000\text{m}^3 = 1,800,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800,000,000\text{원} \times 0.8875(\text{잔가율}) = 1,597,500,000\text{원}$

2. 조 선 대

가. 정 의

조선대란 선박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나. 종 류

- 1) 상가선대 : 중소규모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밑으로 레일을 깔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것
- 2) 신조선대 : 육상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축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일을 바다 밑까지 연장시켜 신조선을 바다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 것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연 수	감 가 율	감 가 방 법	잔 존 율	비 고
30년	0.03	정 액 법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시 설 별	건 조 능 력	선 대 면 적	기준가격
상 가 선 대	5,000톤 미만	1m ² 당	273
	5,000톤 이상	"	296
신 조 선 대	10,000톤 미만	"	392
	10,000톤 이상	"	432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선대면적} \times 1\text{m}^2\text{당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선대면적 환산방법

- 상가선대 : 레일폭×레일길이=선대면적(육상부와 수중부에 설치된 총 길이)
- 신조선대 : 선대의 가로×세로=선대면적

《 산출예시 》

- 2012년에 설치된 상가선대(레일폭 3m, 레일길이 100m, 건조능력 5,000톤)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
 - 잔가율 : $1 - (0.03 \times 6\text{년}) = 0.82$
 - 기준가격 : $296,000\text{원} \times 300\text{m}^2 = 88,8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88,800,000\text{원} \times 0.82(\text{잔가율}) = 72,816,000\text{원}$

마. 조선대 개수 시가표준액

- 1) 조선대의 개수란 조선대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조선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조선대의 도장이나 조선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조선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조선대의 경우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조선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후에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면적/해당 조선대의 총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조선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조선대의 시가표준액×(개수된 면적/조선대의 총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 ② 그 밖에 조선대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조선대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상가선대(레일폭: 3m, 레일길이: 100m, 건조능력: 5,000톤)에서 150m²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300m² 기준가격 : 296,000원 / m² × 300m² = 88,800,000원
- 개수비율 : 150m² / 300m²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88,800,000원 × 1(잔가율) × 0.5 = 44,400,000원

3) 개수 해당 조선대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상가선대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 경과연수(6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에 설치된 상가선대(레일폭 3m, 레일길이 100m, 건조능력 5,000톤)를 2018년에 일부 개수(겉면적의 2분의 1)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
- 개수 전 잔가율 : 1 - (0.03 × 6년) = 0.82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년 + (0.20 × 6년) = 2013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3 × 5년) = 0.85
- 기준가격 : 296,000원 × 300m² = 88,800,000원
- 시가표준액 : 88,800,000원 × 0.85(잔가율) = 75,480,000원

4. 도 관 시 설

1. 송 유 관

가. 정 의

송유관이란 주로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 주철관, 강철관, 화학제품(PVC, FRP)관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 고
주 철 관	30년	0.03	정액법	10%	
강 철 관	20년	0.045	"	10%	
화 학 제 품 관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시 설 별	규 격	단 위	기 준 가 격	
			주 철 관 (강 철 관)	화 학 제 품 관
송 유 관 (연결시설 및 옥외주유시설 포함)	D 100mm 미만	m당	119(119)	90
	D 100mm 이상	"	138(138)	104
	D 200mm "	"	223(223)	153
	D 250mm "	"	272(272)	193
	D 300mm "	"	330(330)	240
	D 400mm "	"	432(432)	295
	D 500mm "	"	540(540)	367
	D 600mm "	"	618(618)	
	D 700mm "	"	725(725)	
	D 800mm "	"	814(814)	
	D 900mm "	"	877(877)	
	D 1,000mm "	"	984(984)	

* D : 관의 직경(Diameter) 약어임

※ 직경은 호칭 **지름**을 말함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m \text{ 당 기준가격} \times \text{송유관 길이(m)} \times \text{잔가율}$$

$$\ast \text{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1983년 설치한 송유관(구조: 주철관, 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100mm, 길이: 2,000m)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0.10(주철관)
 - 2,000m 기준가격 : $2,000\text{m} \times 138,000\text{원} = 276,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276,000,000\text{원} \times 0.10(\text{잔가율}) = 27,600,000\text{원}$

바. 송유관 개수 시가표준액

- 1) 송유관의 개수란 송유관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송유관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송유관의 도장이나 송유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송유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송유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송유관으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송유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③ 그 밖에 송유관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송유관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송유관(구조: 주철관, 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100mm, 길이: 2,000m)에서 1,000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2,000m 기준가격 : $138,000\text{원}/\text{m} \times 2,000\text{m} = 276,000,000\text{원}$
- 개수비율 : $1,000\text{m}/2,000\text{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276,000,000\text{원} \times 1(\text{잔가율}) \times 0.5 = 138,000,000\text{원}$

3) 개수 해당 송유관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1983년에 설치한 주철 송유관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1983\text{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35\text{년})] = 1990\text{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1983년 설치한 송유관(구조: 주철관, 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100mm, 길이: 2,000m)을 2018년에 일부 개수(길이: 1,000m)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주철관)
- 개수 전 잔가율 : 0.10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1983\text{년} + (0.20 \times 35\text{년}) = 1990\text{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3 \times 28\text{년}) = 0.16$
- 2,000m 기준가격 : $2,000\text{m} \times 138,000\text{원} = 276,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276,000,000\text{원} \times 0.16(\text{잔가율}) = 44,160,000\text{원}$

2. 가 스 관

가. 정 의

가스관이란 가스(천연가스,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CO₂, O₂ 등 모든 기체 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포함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하되, 공장 구내의 관은 포함한다.

※ LPG : 액화석유가스(Liquified Petroleum Gas)

※ LNG : 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

나. 종 류

- 1) 폴리에틸렌피복강관(PLP)
- 2) 초저온 스테인레스관
- 3) 화학제품(PE)관
- 4) 주철관, 아연관, 강철관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폴리에틸렌피복강관(PLP)	20년	0.045	정액법	10%	
초저온스테인레스관	20년	0.045	“	10%	
화학제품(PE)관	20년	0.045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시설별	규격	단위	기준가격			비고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LP)	초저온 스테인레스관	화학제품 (PE)관	
가스관 (연결시설 포함)	D 100mm미만	m당	124		85	
	D 100mm이상	"	148		97	
	D 150mm "	"	172		122	
	D 200mm이상	m당	218		158	
	D 250mm "	"	265		198	
	D 300mm미만	"		430		
	D 300mm이상	"	324	508	228	
	D 350mm "	"	364	686	272	
	D 400mm "	"	397	773	317	
	D 450mm "	"	439	842		
	D 500mm "	"	494	930		
	D 550mm "	"	526	1,020		
	D 600mm "	"	601	1,152		
	D 650mm "	"		1,294		
	D 700mm "	"		1,381		
	D 750mm "	"		1,514		

* D : 관의 직경(Diameter) 약어임

※ 직경은 호칭 **지름**을 말함

※ 주철관, 아연관, 강철관 등은 PLP관에 준함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m당 기준가격} \times \text{가스관길이(m)}\}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08년에 설치한 가스관(구조: PLP, 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 길이: 1,000m)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PLP관)
 - 잔가율 : $1 - (0.045 \times 10\text{년}) = 0.55$
 - 1,000m 기준가격 : $1,000\text{m} \times 148,000\text{원} = 148,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48,000,000\text{원} \times 0.55(\text{잔가율}) = 81,400,000\text{원}$

바. 가스관 개수 시가표준액

- 1) “가스관의 개수”란 가스관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가스관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가스관의 도장이나 가스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가스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가스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가스관으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가스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③ 그 밖에 가스관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가스관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가스관(구조: PLP, 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 길이: 1,000m)에서 500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1,000m 기준가격 : $148,000\text{원}/\text{m} \times 1,000\text{m} = 148,000,000\text{원}$
- 개수비율 : $500\text{m}/1,000\text{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148,000,000\text{원} \times 1(\text{잔가율}) \times 0.5 = 74,000,000\text{원}$

3) 개수 해당 가스관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08년에 설치한 PLP 가스관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08\text{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10\text{년})] = 2010\text{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08년에 설치한 가스관(구조: PLP, 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 길이: 1,000m)을 2018년에 일부 개수(길이: 500m) 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PLP관)
- 개수 전 잔가율 : $1 - (0.045 \times 10\text{년}) = 0.5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08\text{년} + (0.20 \times 10\text{년}) = 2010\text{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45 \times 8\text{년}) = 0.64$
- 1,000m 기준가격 : $1,000\text{m} \times 148,000\text{원} = 148,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48,000,000\text{원} \times 0.64(\text{잔가율}) = 94,720,000\text{원}$

3. 열 수 송 관

가. 정 의

열수송관이란 열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나.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 고
강 관	20	0.045	정액법	10%	

다.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규 격	단 위	기준가격	규 격	단 위	기준가격
D 20mm미만	1m당	99	D 400mm이상	"	683
D 20mm이상	"	112	D 450mm이상	"	805
D 25mm이상	"	115	D 500mm이상	"	950
D 40mm이상	"	135	D 550mm이상	"	1,079
D 50mm이상	"	148	D 600mm이상	"	1,248
D 65mm이상	"	159	D 650mm이상	"	1,378
D 80mm이상	"	180	D 700mm이상	"	1,468
D 100mm이상	"	207	D 750mm이상	"	1,545
D 125mm이상	"	228	D 800mm이상	"	1,773
D 150mm이상	"	251	D 850mm이상	"	1,910
D 200mm이상	"	309	D 900mm이상	"	2,232
D 250mm이상	"	387	D 1,000mm이상	"	2,450
D 300mm이상	"	506	D 1,100mm이상	"	3,059
D 350mm이상	"	589			

* D : 관의 직경(Diameter) 약어임

※ 직경은 호칭 지름을 말함

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열수송관 설치구간(m)} \times \text{1m당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기준가격 단위인 열수송관 설치구간은 공급관과 회수관 2개로 병행 설치된 길이를 의미하며, 공급관 또는 회수관이 단독 설치된 경우, 설치구간은 단독 설치된 길이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함

《 산출예시 》

- 2008년에 설치된 열수송관(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 병행설치 구간 20,000m)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강관)
 - 잔가율 : $1 - (0.045 \times 10\text{년}) = 0.55$
 - 병행설치 20,000m 기준가격 : $20,000\text{m} \times 207,000\text{원} = 4,140,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4,140,000,000\text{원} \times 0.55(\text{잔가율}) = 2,277,000,000\text{원}$

- 2008년에 설치된 열수송관(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 단독설치 구간 20,000m)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강관)
 - 잔가율 : $1 - (0.045 \times 10\text{년}) = 0.55$
 - 단독설치 20,000m 기준가격 : $20,000\text{m} \times 207,000\text{원} \times 0.5 = 2,070,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2,070,000,000\text{원} \times 0.55(\text{잔가율}) = 1,138,500,000\text{원}$

마. 열수송관 개수 시가표준액

- 1) “열수송관의 개수”란 열수송관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열수송관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열수송관의 도장이나 열수송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열수송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열수송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열수송관으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다.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열수송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③ 그 밖에 열수송관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열수송관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병행 설치구간 20,000m 열수송관(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에서 병행 설치구간 10,000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병행설치 20,000m 기준가격 : 207,000원/m×20,000m=4,140,000,000원
 - 개수비율 : 10,000m/20,000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4,140,000,000원×1(잔가율)×0.5=2,070,000,000원
- 단독 설치구간 20,000m 열수송관(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에서 단독 설치구간 10,000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단독설치 20,000m 기준가격 : 207,000원/m×20,000m×0.5=2,070,000,000원
 - 개수비율 : 10,000m/20,000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2,070,000,000원×1(잔가율)×0.5=1,035,000,000원

3) 개수 해당 열수송관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08년에 설치한 열수송관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08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10년)] = 2010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08년에 설치된 열수송관(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 병행설치 구간 20,000m)을 2018년에 일부 개수(병행설치구간 10,000m)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강관)
- 개수 전 잔가율 : $1 - (0.045 \times 10년) = 0.5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08년 + (0.20 \times 10년) = 2010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45 \times 8년) = 0.64$
- 병행설치 20,000m 기준가격 : $20,000m \times 207,000\text{원} = 4,140,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4,140,000,000\text{원} \times 0.64(\text{잔가율}) = 2,649,600,000\text{원}$

○ 2008년에 설치된 열수송관(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 단독설치 구간 20,000m)을 2018년에 일부 개수(단독설치구간 10,000m)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강관)
- 개수 전 잔가율 : $1 - (0.045 \times 10년) = 0.5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08년 + (0.20 \times 10년) = 2010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45 \times 8년) = 0.64$
- 단독설치 20,000m 기준가격 : $20,000m \times 207,000\text{원} \times 0.5 = 2,070,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2,070,000,000\text{원} \times 0.64(\text{잔가율}) = 1,324,800,000\text{원}$

5. 급·배수시설

1. 송 수 관

가. 정 의

송수관이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 주철관, 강철관, 화학제품(PVC, FRP)관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주 철 관	30년	0.03	정액법	10%	
강 철 관	20년	0.045	"	10%	
화 학 제 품 관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시 설 별	규 격	단 위	기 준 가 격	
			주 강 철 관	화 학 제 품 관
송 수 관 (연결시설 포함)	D 100mm 미 만	m당	74	56
	D 100mm 이 상	"	100	79
	D 200mm "	"	175	111
	D 250mm "	"	221	149
	D 300mm "	"	257	197
	D 400mm "	"	320	265
	D 500mm "	"	389	314
	D 600mm "	"	462	
	D 700mm "	"	584	
	D 800mm "	"	709	
	D 900mm "	"	827	
	D 1,000mm "	"	981	

* D : 관의 직경 약어임.

※ 직경은 호칭 관경을 말함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m\text{당 기준가격} \times \text{송수관 길이}(m)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1년에 설치된 송수관(구분: 주철관, 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100mm, 길이: 2,000m)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0.03(주철관)
 - 잔가율: $1 - (0.03 \times 7\text{년}) = 0.79$
 - 2,000m 기준가격 : $100,000\text{원} \times 2,000\text{m} = 200,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200,000,000\text{원} \times 0.79(\text{잔가율}) = 158,000,000\text{원}$

바. 송수관 개수 시가표준액

- 1) “송수관의 개수”란 송수관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송수관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송수관의 도장이나 송수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송수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송수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송수관으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송수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③ 그 밖에 송수관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송수관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송수관(구분: 주철관, 규격: 연결시설을 포함한 D 100mm, 길이: 2,000m)에서 1,000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2,000m 기준가격 : $100,000\text{원}/\text{m} \times 2,000\text{m} = 200,000,000\text{원}$
- 개수비율 : $1,000\text{m}/2,000\text{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200,000,000\text{원} \times 1(\text{잔가율}) \times 0.5 = 100,000,000\text{원}$

3) 개수 해당 송수관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1년에 설치한 주철 송수관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1\text{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7\text{년})] = 2012\text{년}(\text{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시설한 송수관(구분:주철관, 규격:연결시설포함 100mm, 길이 2,000m)을 2018년에 일부 개수(규격 100mm, 길이 1,000m)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주철관)
- 개수 전 잔가율 : $1 - (0.03 \times 7\text{년}) = 0.79$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1\text{년} + (0.20 \times 7\text{년}) = 2012\text{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3 \times 6\text{년}) = 0.82$
- 2,000m 기준가격 : $100,000\text{원} \times 2,000\text{m} = 200,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200,000,000\text{원} \times 0.82(\text{잔가율}) = 164,000,000\text{원}$

2. 급·배수시설

[1] 옥외 하수도시설

가. 정 의

옥외 하수도시설이란 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 철근콘크리트(맨홀), 석조(암거), 토조(오지관), 시멘트관, 철 및 기타금속(흡관), 기타(화학제품 등)

다. 조사방법

- 1) 각 시설별 사용자재의 종류에 따라 오지관, 시멘트관, 흡관을 조사하고 관의 직경(규격) 및 매설깊이를 조사하여 환산하고
- 2) 맨홀과 암거는 윗면의 가로와 세로 및 매설된 깊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서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

라. 내용연수 및 감가율

시 설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감 가 율	잔 존 율
맨 홀(철근콘크리트)	40년	정액법	0.0225	10%
암 거(석조)	35년	"	0.0257	10%
오지관(토조)	15년	"	0.06	10%
시 멘 트 관	15년	"	0.06	10%
흡관(철 및 기타금속)	30년	"	0.03	10%
기 타(화학제품 등)	40년	"	0.0225	10%

* 기존 맨홀(콘크리트)로 과세하던 물건은 맨홀(철근콘크리트)를 적용함.

* 한국산업표준에서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KSF 4012)은 철근 콘크리트 맨홀 블록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존 맨홀(콘크리트) 구조를 삭제

마. 기준가격표

① 토관, 시멘트관, 흙관, 화학제품

(단위 : 천원)

규격	단위	기준가격			
		토관	시멘트관	흙관	화학제품등
D 150m/m 이하	m당	15	14	28	26
D 240m/m "	"	29	25	46	41
D 300m/m "	"	38	33	54	50
D 350m/m "	"	42	37	69	63
D 450m/m "	"	52	47	94	92
D 600m/m "	"	81	73	163	147
D 750m/m "	"	92	83	228	204
D 900m/m "	"	132	119	312	276
D 1,000m/m "	"	139	127	398	347

* D : 관의 직경 약어임.

※ 직경은 호칭 관경을 말함

② 맨홀, 암거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단위	기준가격
맨홀	800mm×800mm×1.0m	1개소	378
	<u>900mm×900mm×1.0m</u>	"	388
	1,000mm×1,000mm×1.2m	"	404
	1,200mm×1,200mm×1.5m	"	525
	1,500mm×1,500mm×2.0m	"	756
	<u>1,800mm×1,800mm×2.0m</u>	"	1,021
암거	830mm×1,026mm	m당	348
	1,670mm×1,456mm	"	525

바.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ast \text{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하수도(구분: 오지관(토조), 규격: 150m/m, 길이: 1,000m)를 설치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오지관(토조))
 - 잔가율 : $1 - (0.06 \times 6\text{년}) = 0.64$
 - 150m/m 기준가격 : $15,000 \times 1,000\text{m} = 15,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5,000,000\text{원} \times 0.64 = 9,600,000\text{원}$

사. 옥외 하수도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 1) “옥외 하수도시설의 개수”란 해당 시설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옥외 하수도시설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옥외 하수도시설의 도장이나 옥외 하수도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옥외 하수도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옥외 하수도시설의 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급·배수시설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마.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옥외 하수도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마.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③ 그 밖에 옥외하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기계장비나 밸브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옥외 하수도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하수도(구분: 토관, 규격: D 150m/m, 길이: 1,000m)에서 500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1,000m 기준가격 : 15,000원/m×1,000m=15,000,000원
- 개수비율 : 500m/1,000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15,000,000원×1(잔가율)×0.5=7,500,000원

3) 개수 해당 송수관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오지관(토조) 하수도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 경과연수(6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시설한 하수도(구분:오지관(토조), 규격: 150m/m, 길이: 1,000m)을 2018년에 일부 개수(규격: 150m/m, 길이: 500m)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오지관(토조))
- 개수 전 잔가율 : $1 - (0.06 \times 6년) = 0.64$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 + (0.20 \times 6년) = 2013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6 \times 5년) = 0.70$
- 150m/m 기준가격 : 15,000원×1,000m=15,000,000원
- 시가표준액 : 15,000,000원×0.70(잔가율)=10,500,000원

[2] 지하수 시설

가. 종 류 : 기계관정

- 착정기계에 의하여 굴착되고 정호벽은 철타관 또는 P.V.C로 처리되어 모터펌프에 의해서만 양수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됨

기계관정방식	적 요
Jetting(젯트굴)	유수(流水)의 원동력을 이용하여 관정하는 방식
Boring(오-가굴)	인력이나 동력에 의해 오-가로 파헤치는 방식
Driving(타입)	철타관을 쳐박으면서 철타관을 이어가는 방식
Drilling(기계굴)	㉠ 회전식 : 굴착철타관(Rod) 끝에 비트(bit)를 동력과 연결 회전시켜 깎아 내려 가는 방식 ㉡ 충격식 : 비트(bit)를 상하로 운동시켜 암석을 부수어 내려가는 방식

※ 10m 이하의 기계관정은 일반적으로 Drilling 방식으로 굴착함.

나.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감 가 율	잔 존 율
기 계 관 정	30년	정 액 법	0.03	10%

다.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규 격	기 준 가 격					
	55mm 이하	105mm 이하	155mm 이하	205mm 이하	255mm 이하	255mm 초과
10m기준	670	712	751	950	1290	1680
1m증감시마다	67	71	75	95	129	168

라. 조사방법

지하수시설은 굴착지름과 굴착깊이를 조사하여 적용함.(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상의 굴착깊이와 굴착지름을 적용)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text{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에 기계관정(규격: 100mm, 깊이: 15m)을 설치한 경우에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0.03(기계관정)
 - 잔가율 : $1 - (0.03 \times 6\text{년}) = 0.82$
 - 10m기준가격 : 712,000원 A
 - 5m증가시 기준가격 : $71,000\text{원} \times 5\text{m} = 355,000\text{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712,000\text{원} + 355,000\text{원} = 1,067,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067,000\text{원} \times 0.82(\text{잔가율}) = 874,940\text{원}$

바. 지하수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 1) “지하수시설의 개수”란 지하수시설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지하수시설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지하수시설의 도장이나 지하수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지하수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지하수시설의 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지하수시설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다.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지하수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③ 그 밖에 지하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지하수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기계관정(규격: 100mm, 깊이: 15m)에서 7.5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712,000원 + 71,000원/m×5m=1,067,000원
- 개수비율 : 7.5m/15m=0.5
- 개수 시가표준액 : 1,067,000원×1(잔가율)×0.5=533,500원

3) 개수 해당 지하수시설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기계관정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 경과연수(6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시설한 기계관정(규격: 100mm, 깊이: 15m) 2018년에 일부 개수(7.5m)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기계관정)
- 개수 전 잔가율 : 1 - (0.03×6년)=0.82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년+(0.20×6년)=2013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3×5년)=0.85
- 10m기준가격 : 712,000원 A
- 5m증가시 기준가격 : 71,000원×5m=355,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712,000원 + 355,000원 = 1,067,000원
- 시가표준액 : 1,067,000원×0.85(잔가율)=906,950원

[3] 기타시설

가. 정 의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 가 율	감가방법	잔존율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50년	0.016	정액법	20%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50년	0.016	정액법	20%
특 수 강	철 관	50년	0.016	정액법	20%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규 격	단 위	기 준 가 격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수 평	수 직		
D 2,000 mm 이상	m당	1,250	1,855	6,733	1,222
D 2,500 mm "	"	1,748	2,594	9,419	1,596
D 3,000 mm "	"	2,375	3,555	12,906	1,970
D 3,500 mm "	"	3,215	4,791	17,395	
D 4,000 mm "	"	4,085	6,130	22,552	
D 4,500 mm "	"	5,155	7,710	28,377	
D 5,000 mm "	"	6,410	9,605	34,870	
D 5,500 mm "	"	7,730	11,577	42,031	
D 6,000 mm "	"	9,255	13,734	49,860	
D 6,500 mm "	"	10,833	16,074	58,356	
D 7,000 mm "	"	12,534	18,599	67,521	
D 7,500 mm "	"	13,832	20,695	76,700	
D 8,000 mm "	"	15,650	23,520	87,010	

※ D는 내경(I.D : Inside Diameter)임

※ 수로터널의 경사도 15도 미만은 수평 적용, 15도 이상은 수직 적용

※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 철관이 없는 수로부분,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 철관이 있는 수로부분

※ 강철관 중 'D 2,000m/m 미만' 은 급배수시설 중 송수관 적용

마. 조사방법

시설물별 사용자재의 종류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구분, 관의 직경, 규격과 매설방법(수평·수직·경사) 및 매설길이를 조사함 (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써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 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조사 적용할 수 있음)

바.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ast \text{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수로터널(구조: 철근콘크리트, 규격: D 7,000m/m, 형식: 수평, 길이 1,000m)를 설치한 경우 2018년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16(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 잔가율 : $1 - (0.016 \times 7\text{년}) = 0.888$
 - 1,000m 기준가격 : $12,534,000\text{원} \times 1,000\text{m} = 12,534,0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2,534,000,000\text{원} \times 0.888(\text{잔가율}) = 11,130,192,000\text{원}$

사. 기타 급·배수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 1) “기타 급·배수시설의 개수”란 해당 시설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급·배수시설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도장이나 급·배수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기타 급·배수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시설물의 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급·배수시설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급·배수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③ 그 밖에 급·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급·배수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수로터널(구조: 철근콘크리트, 규격: D 7,000m/m, 형식: 수평, 길이 1,000m)에서 500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1,000m 기준가격 : 12,534,000/m×1,000m=12,534,000,000원
- 개수비율 : 500m/1,000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12,534,000,000원×1(잔가율)×0.5=6,267,000,000원

- 3) 개수 해당 급·배수시설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1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1년 + [0.20 × 경과연수(7년)] = 2012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시설한 수로터널(구조: 철근콘크리트, 규격: D7,000m/m, 형식: 수평, 길이 1,000m)을 2018년에 일부 개수(규격: D7,000m/m, 형식: 수평, 길이: 500m)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16(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 개수 전 잔가율 : 1 - (0.016×7년) = 0.888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1년 + (0.20×7년) = 2012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16×6년) = 0.904
- 1,000m 기준가격 : 12,534,000원×1,000m=12,534,000,000원
- 시가표준액 : 12,534,000,000원×0.904(잔가율) = 11,330,736,000원

3. 복 개 설 비

가. 정 의

복개설비란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야적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종 류 :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철 및 기타 금속조, 기타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시 설 별	내용연수	감 가 율	감가방법	잔 존 율	비고
철근콘크리트조	40년	0.0225	정액법	10%	
콘크리트조	15년	0.06	"	10%	
철및기타금속조	30년	0.03	"	10%	
기 타 조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기 준	기 준 가 격
철근콘크리트조	3m 이상 (높이/길이)	330m ² 기 준	91,000
		1m ² 증감시	277
	3m 미만	330m ² 기 준	70,400
		1m ² 증감시	212
콘크리트조	3m 이상	330m ² 기 준	67,800
		1m ² 증감시	206
	3m 미만	330m ² 기 준	51,600
		1m ² 증감시	157
철및기타금속조	3m 이상	330m ² 기 준	80,000
		1m ² 증감시	243
	3m 미만	330m ² 기 준	62,600
		1m ² 증감시	190
기 타 조	3m 이상	330m ² 기 준	45,700
		1m ² 증감시	139
	3m 미만	330m ² 기 준	37,600
		1m ² 증감시	115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text{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 토지와 같이 사용하는 면적과 이를 축조하는데 사용된 시설구조, 높이(깊이) 등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하천을 복개설비(구조: 철근콘크리트, 높이: 2.5m(규격: 3m 미만), 면적: 350㎡)로 복개한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철근콘크리트조)
 - 잔가율 : $1 - (0.0225 \times 6\text{년}) = 0.865$
 - 330㎡ 기준가격 : 70,400,000원 A
 - 20㎡ 증가시 기준가격 : $20\text{㎡} \times 212,000\text{원} = 4,240,000\text{원} \dots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70,400,000\text{원} + 4,240,000\text{원} = 74,64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74,640,000\text{원} \times 0.865(\text{잔가율}) = 64,563,600\text{원}$

바. 복개설비 개수 시가표준액

- 1) “복개설비의 개수”란 복개설비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복개설비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복개설비의 수선, 복개설비를 지지·보호하는 시설 등을 수선·교체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복개설비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복개설비(구조: 철근콘크리트, 높이: 2.5m(규격: 3m 미만), 면적: 350㎡)에서 175㎡를 개수한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70,400,000원+212,000원/㎡×20㎡=74,640,000원
- 개수비율 : 175㎡/350㎡=0.5
- 개수 시가표준액 : 74,640,000원×1(잔가율)×0.5=37,320,000원

3) 개수 해당 복개설비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복개설비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 경과연수(6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복개설비(구조: 철근콘크리트, 높이: 2.5m(규격: 3m미만), 면적: 350㎡)를 2018년에 일부 개수(175㎡)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철근콘크리트조)
- 개수 전 잔가율 : 1 - (0.0225×6년)=0.86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년+(0.20×6년)=2013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225×5년)=0.8875
- 330㎡ 기준가격 : 70,400,000원 A
- 20㎡ 증가시 기준가격 : 20㎡×212,000원=4,240,000원 ..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70,400,000원 + 4,240,000원 = 74,640,000원
- 시가표준액 : 74,640,000원×0.8875(잔가율)=66,243,000원

6. 에너지 공급 시설

1.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가. 정 의

- 1) 주유시설이란 주유기, 유류저장조 등 기름을 주입시키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 2) 가스충전시설이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천연가스 등을 저장하여 차량이나 타 용기에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나. 종 류

- 1) 유류저장조 : 방화 및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철제탱크를 설치한 후 복개하고 유류를 저장하여 차량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이며, 철제탱크의 유류저장 용량에 따라 각 규모별로 구분함
- 2) 주 유 기 : 단식, 복식, 혼합식, 천장식
- 3) LPG 저장조 :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저장하여 차량이나 타용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물에 철판탱크를 설치 후 복개한 가스저장시설
- 4) CNG 저장조 : 압축된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압력용기설비
- 5) 가스주입기 : 단식, 복식 및 복복식
- 6) CNG 압축기 :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조에 저장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저 장 조	18년	정액법	10%	0.05	
주 유 기	10년	"	10%	0.09	
L P G 저 장 조	18년	"	10%	0.05	
C N G 저 장 조	15년	"	10%	0.06	
가 스 주 입 기	10년	"	10%	0.09	
C N G 압 축 기	10년	"	10%	0.09	

라. 기준가격표

① 저장조

(단위 : 천원)

용 량 별			기준가격(개소당)
드럼(D/M)	ℓ	TON	
<u>2,000 ℓ 미만시 100 ℓ 감소마다</u>			△8
10 이 하	2,000	2	4,900
30 "	6,000	6	5,640
40 "	8,000	8	6,160
50 "	10,000	10	6,720
60 "	12,000	12	7,280
70 "	14,000	14	7,840
80 "	16,000	16	8,560
90 "	18,000	18	9,040
100 "	20,000	20	9,600
110 "	22,000	22	10,160
120 "	24,000	24	10,560
130 "	26,000	26	11,200
140 "	28,000	28	11,760
150 "	30,000	30	12,000
200 "	40,000	40	14,560
250 "	50,000	50	16,160
50,000 ℓ 초과시 1,000 ℓ 증가마다			164

※ 1드럼 : 200 ℓ 에 해당

② 주유기

○ 종 류

- 단 식
- 복 식
- 혼합식
- 천장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1	기타	REVO-1000S					8,400
2	기타	REVO-1000S	저속	복식	액중형	셀프형	8,240
3	기타	SG(TC)3921	저속	복식		모터펌프내장형	5,120
4	기타	SG(TC)3942	고속	복식		모터펌프내장형	5,280
5	기타	간이주유소 (수동식)				간이주유소 (수동식)	320
6	기타	간이주유소 (전동식)				간이주유소 (전동식)	640
7	기타	고정식(계량표시)	고속	단식		고정식(계량표시)	2,560
8	기타	고정식(계량표시)	고속	복식		고정식(계량표시)	4,880
9	기타	고정식(계량표시)	보통	단식		고정식(계량표시)	2,000
10	기타	고정식(계량표시)	보통	복식		고정식(계량표시)	3,600
11	기타	고정식(계량표시)	초고속	단식		고정식(계량표시)	5,120
12	기타	고정식(요금표시)	고속	단식		고정식(요금표시)	2,720
13	기타	고정식(요금표시)	고속	복식		고정식(요금표시)	5,040
14	기타	고정식(요금표시)	보통	단식		고정식(요금표시)	2,080
15	기타	고정식(요금표시)	보통	복식		고정식(요금표시)	3,760
16	기타	고정식(전자식)	고속	단식		고정식(전자식)	4,000
17	기타	고정식(전자식)	고속	복식		고정식(전자식)	6,640
18	기타	고정식(전자식)	보통	단식		고정식(전자식)	3,440
19	기타	고정식(전자식)	보통	복식		고정식(전자식)	5,680
20	기타	고정식(전자식)	초고속	단식		고정식(전자식)	6,720
21	기타	이동식				이동식	1,520
22	기타	천장식(계량표시)				천장형(계량표시)	6,560
23	기타	천장식(요금표시)				천장형(요금표시)	6,400
2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CASH5012		복식		셀프형	9,280
2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CASH5112		복식	액중형	셀프형	8,960
2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CONOSELF-8040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4,100
2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CONOSELF-8045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4,300
2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CONOSELF-8060	저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6,3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조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2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CONOSELF-8065	혼합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6,600
3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CONOSELF-8140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4,100
3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CONOSELF-8145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4,300
3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CONOSELF-8160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6,300
3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CONOSELF-8165	혼합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6,600
3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UROSTARSELF-6040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6,800
3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UROSTARSELF-6045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7,360
3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UROSTARSELF-6060	저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20,000
3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UROSTARSELF-6065	혼합	6복식	펌프형	셀프형	20,640
3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UROSTARSELF-6140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5,760
3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UROSTARSELF-6145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6,160
4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UROSTARSELF-6160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9,040
4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EUROSTARSELF-6165	혼합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9,360
4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HIGHSELF-6040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5,900
4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HIGHSELF-6045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6,100
4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HIGHSELF-6060	저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8,200
4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HIGHSELF-6065	혼합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8,400
4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HIGHSELF-6140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5,900
4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HIGHSELF-6145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6,100
4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HIGHSELF-6160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8,200
4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HIGHSELF-6165	혼합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8,400
50	동화프라임(주) [구,	LPG5112		복식		LPG충전기	8,6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동화계량기(주)						
5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PG511200T		복식		LPG충전기 (ODT 내장형)	12,200
5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PG5114		4복식		LPG충전기 (ODT 기본형)	17,000
5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PG00T		복식		LPG충전기	2,000
5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PG511400T		4복식		LPG충전기 (ODT 내장형)	21,000
5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UXSELF-6040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20,800
5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UXSELF-6045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21,200
5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UXSELF-6060	저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24,000
5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UXSELF-6065	혼합	6복식	펌프형	셀프형	24,400
5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UXSELF-6140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20,400
6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UXSELF-6145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20,800
6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UXSELF-6160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23,600
6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LUXSELF-6165	혼합	6복식	액중형	셀프형	24,000
6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1510	일반	단식		기계식	1,760
6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1510NP	일반	단식		기계식	1,680
6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1512	일반	복식		기계식	3,120
6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1512NP	일반	복식		기계식	2,960
6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1515	고속	단식		기계식	2,240
6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1515NP	고속	단식		기계식	2,160
6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1517	고속	복식		기계식	4,240
7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1517NP	고속	복식		기계식	4,080
7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1519	혼합	복식		기계식	3,760
7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1519NP	혼합	복식		기계식	3,6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동화계량기(주)						
7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ERITSELF8020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4,400
7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ERITSELF8025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4,720
7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ERITSELF8060	저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6,880
7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ERITSELF8065	저속/ 고속	8복식	펌프형	셀프형	17,600
7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ERITSELF8120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3,680
7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ERITSELF8125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4,000
7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ERITSELF8160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5,840
8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MERITSELF8165	저속/ 고속	8복식	액중형	셀프형	16,560
8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NON1010	저속	단식	펌프형	천장형	8,480
8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NON1012	저속	복식	펌프형	천장형	15,840
8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NON1015	고속	단식	펌프형	천장형	9,040
8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NON1017	고속	복식	펌프형	천장형	17,040
8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NON1019	저속/ 고속	복식	펌프형	천장형	16,560
8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NON1110	저속	단식	액중형	천장형	8,640
8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NON1112	저속	복식	액중형	천장형	16,320
8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NON1115	고속	단식	액중형	천장형	9,360
8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NON1117	고속	복식	액중형	천장형	17,760
9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NON1119	혼합	복식	액중형	천장형	17,040
9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GASPOS				충전소POS	7,700
9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150	1.5HP		액중형		1,600
93	동화프라임(주) [구,	P200	2HP		액중형		1,7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동화계량기(주)						
9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75	3/4HP		액중형		800
9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40	저속	4복식	펌프형	4.6.8복식주유기	7,900
9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42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4.6.8복식주유기	8,100
9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44	고속	4복식	펌프형	4.6.8복식주유기	8,400
9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46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4.6.8복식주유기	7,700
9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48	고속	4복식	액중형	4.6.8복식주유기	8,000
10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SELF-8040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5,400
10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SELF-8045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5,700
10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SELF-8060	저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7,700
10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SELF-8065	혼합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8,000
10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SELF-8140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5,000
10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SELF-8145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5,200
10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SELF-8160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7,200
10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SELF-8165	혼합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7,500
10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000	일반	4복식	펌프형	전자식	8,640
10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000N		4복식	펌프형	기계실내장형	9,280
11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000NN		복식	펌프형	기계실내장형	6,720
11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010N		복식	펌프형	기계실내장형	6,400
11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013N		복식	펌프형	기계실내장형	7,120
11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015	혼합	4복식	펌프형	전자식	9,040
11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015N		4복식	펌프형	기계실내장형	9,68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조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11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015NN		복식	펌프형	기계실내장형	7,120
11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019	고속	4복식	펌프형	전자식	9,520
11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100	일반	4복식	액중형	전자식	7,360
11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100N		4복식	액중형	기계실내장형	8,720
11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100NN		복식	액중형	기계실내장형	6,160
12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110N		복식	액중형	기계실내장형	6,560
12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113N		복식	액중형	기계실내장형	6,320
12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115	혼합	4복식	액중형	전자식	7,680
12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115N		4복식	액중형	기계실내장형	9,200
12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115NN		복식	액중형	기계실내장형	6,640
12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4119	고속	4복식	액중형	전자식	8,000
12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000N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2	800
12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005	초고속	단식	펌프형		5,500
12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005A	벌크	단식	펌프형	벌크형	5,600
12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005B	벌크	단식	펌프형	벌크형	5,700
13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010	저속	단식	펌프형	전자식	2,560
13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010N	고속	복식			3,200
13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012	저속	복식	펌프형	전자식	4,240
13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015	고속	단식	펌프형	전자식	2,880
13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017	고속	복식	펌프형	전자식	5,040
13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019	저속/ 고속	복식	펌프형	전자식	4,560
13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00	벌크	단식	액중형	벌크형	4,500
13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02	벌크/ 고속	복식	액중형	벌크형	6,32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13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05	초고속	단식	액중형		3,440
13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06	벌크	복식	액중형	벌크형	7,800
14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07	초고속	복식	액중형		5,680
14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09	초고속/ 고속	복식	액중형		5,520
14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10	저속	단식	액중형	전자식	2,240
14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10N	저속	단식	액중형	기계실1	2,560
14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12	저속	복식	액중형	전자식	3,760
14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15	고속	단식	액중형	전자식	2,560
14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17	고속	복식	액중형	전자식	4,480
14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19	저속/ 고속	복식	액중형	전자식	4,160
14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020	저속	4복식	펌프형		10,160
14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025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10,640
15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027	고속	4복식	펌프형		11,120
15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040	저속	4복식	펌프형	4.6.8 복식 주유기	9,440
15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045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4.6.8 복식 주유기	9,840
15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047	고속	4복식	펌프형	4.6.8 복식 주유기	10,240
15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060	저속	6복식	펌프형		11,680
15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065	저속4/ 고속2	6복식	펌프형		12,08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15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080	저속	8복식	펌프형		13,680
15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085	저속4/ 고속4	8복식	펌프형		14,080
15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120	저속	4복식	액중형		8,720
15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125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9,040
16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127	고속	4복식	액중형		9,440
16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140	저속	4복식	액중형	4.6.8 복식 주유기	8,160
16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145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4.6.8 복식 주유기	8,560
16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147	고속	4복식	액중형	4.6.8 복식 주유기	8,960
16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160	저속	6복식	액중형		10,160
16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165	저속4/ 고속2	6복식	액중형		10,560
16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180	저속	8복식	액중형		12,160
16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6185	저속4/ 고속4	8복식	액중형		12,560
16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10N	저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7,040
16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10NN	저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2	7,360
17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12N	고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7,520
17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12NN	고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2	7,840
17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20	저속	4복식	펌프형		8,720
17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20NN	저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2	7,200
17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20N	저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6,880
17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22N	고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7,520
17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22NN	고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2	7,84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17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25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9,120
17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25N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9,840
17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27	고속	4복식	펌프형		10,400
18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32N	저속	단식	액중형	기계실1	2,000
18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40N	저속	4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9,520
18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45N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9,840
18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60	저속	6복식	펌프형		11,500
18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65	저속4/ 고속2	6복식	펌프형		11,800
18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80	저속	8복식	펌프형		14,000
18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085	저속/ 고속	8복식	펌프형		14,720
18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10N	저속	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6,480
18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10NN	저속	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2	6,720
18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12N	고속	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6,880
19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12NN	고속	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2	7,200
19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20	고속	4복식	액중형	기계실2	7,600
19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20NN	저속	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2	6,720
19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20N	저속	4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6,320
19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22NN	고속	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6,880
19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22NN	고속	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2	7,280
19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25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7,840
19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25N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9,36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19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27	고속	4복식	액중형		8,720
19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40N	저속	4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9,600
20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45N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기계실1	10,080
20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60	저속	6복식	액중형		9,840
20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65	저속4/ 고속2	6복식	액중형		10,240
20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80	저속	8복식	액중형		12,640
20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85	저속/ 고속	8복식	액중형		13,280
20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RF1010	저속	단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9,440
20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RF1012	저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17,840
20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RF1015	고속	단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10,240
20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RF1017	고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19,360
20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RF1019	저속/ 고속	복식	펌프형	(None-space) 내장형	18,560
21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RF1110	저속	단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9,120
21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RF1112	저속	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17,200
21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RF1115	고속	단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9,840
21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RF1117	고속	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18,720
21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RF1119	저속/ 고속	복식	액중형	(None-space) 내장형	18,000
21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C				셀프형	1,120
21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C옵션				셀프형	1,520
21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ELF4000		4복식		셀프형	13,280
21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ELF4015		4복식		셀프형	13,68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21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ELF4100		4복식		셀프형	12,720
22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ELF4115		4복식		셀프형	13,200
22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ELF5012				셀프형	5,760
22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ELF8010		4복식		셀프형	11,920
22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ELF8040V		4복식		셀프형	15,440
22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ELF8045V	저속/ 고속	4복식		일반형	9,600
22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ELF8045V		4복식		셀프형	16,000
22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MARTSELF-6040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7,700
22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MARTSELF-6045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8,000
22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MARTSELF-6060	저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20,000
22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MARTSELF-6065	혼합	6복식	펌프형	셀프형	20,200
23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MARTSELF-6140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7,200
23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MARTSELF-6145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7,500
23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MARTSELF-6160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9,500
23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MARTSELF-6165	혼합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9,800
23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P-IU1HS1P		4복식		ODT 기본형	17,520
23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4010		4복식		멀티	9,760
23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4015	일반/ 고속	복식		멀티	10,320
23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4110		4복식	액중형		8,960
23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4115	일반/ 고속	4복식	액중형		9,360
23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010		단식		전자식	3,04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복식)	형식3 (펌프,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동화계량기(주)						
24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012		복식		전자식	5,120
24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015	고속	단식		전자식	3,520
24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017	고속	복식		전자식	6,080
24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019	일반/ 고속	복식		전자식	5,600
24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105		단식	액중형		3,920
24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107		복식	액중형		6,640
24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109	일반/ 초고속	복식	액중형		5,840
24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110		단식	액중형	전자식	2,720
24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112		복식	액중형	전자식	4,400
24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115	고속	단식	액중형	전자식	3,040
25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117	고속	복식	액중형	전자식	5,920
25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Vantage5119	일반/ 고속	복식	액중형	전자식	4,880
25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Winpos21c				주유소POS	7,700
25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셀프완성형 (펌프/ST-2)		4복식		셀프형	14,560
25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5010	저속	단식	펌프형		2,100
25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5012	저속	복식	펌프형		3,600
25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5015	고속	단식	펌프형		2,400
25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5017	고속	복식	펌프형		4,200
25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5019	혼합	복식	펌프형		3,900
25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5110	저속	단식	액중형		2,000
26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5112	저속	복식	액중형		3,4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동화계량기(주)						
26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5115	고속	단식	액중형		2,300
26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5117	고속	복식	액중형		4,000
26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5119	혼합	복식	액중형		3,700
26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8040	저속	4복식	펌프형		7,700
26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8045	혼합	4복식	펌프형		8,000
26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8140	저속	4복식	액중형		7,200
26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P-8145	혼합	4복식	액중형		7,500
26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K-SELF6040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5,900
269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K-SELF6045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6,100
270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K-SELF6140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5,900
271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K-SELF6145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6,100
272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HIGHSELF-6040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5,900
273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HIGHSELF-6045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6,100
274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HIGHSELF-6140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5,900
275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OHIGHSELF-6145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6,100
276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SMARTLPG (일반형, 슬림형)		복식		LPG충전기	17,500
277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8140	저속	4복식	액중형		8,500
278	동화프라임(주) [구, 동화계량기(주)]	PRIME5102H	벌크/ 초고속		액중형		7,500
279	신한국주유기(주)	NEWSUNNY-EX-H	고속	단식		전자식	3,600
280	신한국주유기(주)	NEWSUNNY-EX-HW	고속	복식		전자식	6,24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281	신한국주유기㈜	NEWSUNNY-EX-LW	혼합	복식		전자식	4,160
282	신한국주유기㈜	NEWSUNNY-EX-R	저속	단식		전자식	3,120
283	신한국주유기㈜	NEWSUNNY-EX-RH	저속/ 고속			전자식	5,760
284	신한국주유기㈜	NEWSUNNY-EX-RW	저속	복식		전자식	5,280
285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154-1	저속	단식		기계식 (자가주유용)	1,360
286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154-2	고속	단식		기계식 (자가주유용)	1,680
287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164-1	저속	단식		기계식	1,440
288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164-2	고속	단식		기계식	1,760
289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252-1	저속	복식		기계식 (자가주유용)	2,400
290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252-2	고속	복식		기계식 (자가주유용)	3,200
291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252-3	혼합	복식		기계식 (자가주유용)	2,800
292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262-1	저속	복식		기계식	2,560
293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262-2	고속	복식		기계식	3,360
294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262-3	혼합	복식		기계식	2,960
295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BULK4992		단식		모터펌프분리형	5,280
296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BULK6992		복식		모터펌프분리형	9,040
297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BULK6993		복식		모터펌프분리형	7,840
298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BULK6994		복식		모터펌프분리형	8,240
299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Bulk주유기용 (None-space용)	벌크		액중형	Bulk주유기용 (None-space용)	1,600
300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CNT0001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240
301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1220	저속	복식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11,200
302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1243	혼합	복식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11,600
303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2220	저속	복식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8,8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304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2242	고속	복식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10,240
305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2243	혼합	복식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9,520
306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4921	저속	단식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2,960
307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4942	고속	단식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3,360
308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4992		단식		모터펌프분리형	4,480
309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4992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3,360
310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6921	저속	복식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4,960
311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6942	고속	복식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5,920
312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6943	혼합	복식		디스펜서형 (모터펌프분리형)	5,440
313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6992		복식		모터펌프분리형	7,120
314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DC6993		복식		모터펌프분리형	6,960
315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HC4921	저속	단식		천장형 (내장형)	10,000
316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HC4942	고속	단식		천장형 (내장형)	10,800
317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HC6921	저속	복식		천장형 (내장형)	18,800
318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HC6942	고속	복식		천장형 (내장형)	20,400
319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HC6943	고속	복식		천장형 (내장형)	14,240
320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HC6943	혼합	복식		천장형 (내장형)	19,600
321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NS4921	저속	단식	액중형	천장형 (내장형)	10,000
322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NS4942	고속	단식	액중형	천장형 (내장형)	10,800
323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NS6921	저속	복식	액중형	천장형 (내장형)	18,800
324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NS6942	고속	복식	액중형	천장형 (내장형)	20,4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325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NS6943	혼합	복식	액중형	천장형(내장형)	19,600
326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2220-1	저속	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일반형)	5,920
327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2220-2	저속	4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일반형)	6,000
328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2242-1	고속	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일반형)	6,880
329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2242-2	혼합	4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일반형)	6,960
330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3220-1	저속	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일반형)	10,400
331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3220-2	저속	4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일반형)	10,480
332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3243-1	고속	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일반형)	10,960
333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3243-2	혼합	4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일반형)	11,040
334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D2220-1	저속	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액중펌프형)	5,520
335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D2220-2	저속	4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액중펌프형)	5,600
336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D2242-1	고속	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액중펌프형)	6,160
337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D2242-2	혼합	4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액중펌프형)	6,240
338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D3220-1	저속	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액중펌프형)	9,280
339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D3220-2	저속	4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액중펌프형)	9,360
340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D3243-1	고속	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액중펌프형)	10,000
341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SLD3243-2	혼합	4복식		기계실내장형 (Sky-Land액중펌프형)	10,080
342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TC1220	저속	복식		모터펌프내장형	13,200
343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TC1243	혼합	복식		모터펌프내장형	13,600
344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TC1921	저속	단식		모터펌프내장형	3,200
345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TC1942	고속	단식		모터펌프내장형	3,680
346	페트로비즈 [구, ㈜대성주유기]	TC2220	저속	복식		모터펌프내장형	9,92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주)대성주유기						
347	페트로비즈 [구, (주)대성주유기]	TC2242	고속	복식		모터펌프내장형	11,040
348	페트로비즈 [구, (주)대성주유기]	TC2243	혼합	복식		모터펌프내장형	10,480
349	페트로비즈 [구, (주)대성주유기]	TC3921	저속	복식		모터펌프내장형	5,360
350	페트로비즈 [구, (주)대성주유기]	TC3942	고속	복식		모터펌프내장형	6,320
351	페트로비즈 [구, (주)대성주유기]	TC3943	혼합	복식		모터펌프내장형	5,840
352	페트로비즈 [구, (주)대성주유기]	일반Dispenser 용	일반		액중형	일반Dispenser 용	1,440
353	페트로비즈 [구, (주)대성주유기]	초고속주유기용	초고속		액중형	초고속주유기용	1,760
354	페트로비즈 [구, (주)대성주유기]	충전기				PLD-3	14,400
355	페트로비즈 [구, (주)대성주유기]	충전기				WLD-3	9,600
356	한국다쓰노(주)	BK-300S	벌크	복식	액중형	이동차량용	4,720
357	한국다쓰노(주)	BK-300W	벌크	복식	액중형	이동차량용	8,400
358	한국다쓰노(주)	BKS+HS	고속	단식	액중형	이동차량용	11,120
359	한국다쓰노(주)	BM-4W		4복식		전자식	11,920
360	한국다쓰노(주)	BM-6W		6복식		전자식	13,840
361	한국다쓰노(주)	BMD2444				BRIGHT MALT	6,160
362	한국다쓰노(주)	EDFT-1221-J				LPG충전기	12,800
363	한국다쓰노(주)	EDFT-1221-V	벌크	복식			14,400
364	한국다쓰노(주)	FN+HW(NEWSUNNY-EX)	고속	복식		전자식	6,720
365	한국다쓰노(주)	FN-LW(NEWSUNNY-EX)	저속	복식		전자식	5,760
366	한국다쓰노(주)	FV-1001				OVER FLOW STOP VALUE	320
367	한국다쓰노(주)	GAUGESENSOR (1기당)				전자식	720
368	한국다쓰노(주)	GDA2221	저속	복식		NEO SUNNY	3,360
369	한국다쓰노(주)	GDA2222	고속	복식		NEO SUNNY	3,520
370	한국다쓰노(주)	GDA2223	혼합	복식		NEO SUNNY	3,440
371	한국다쓰노(주)	GOM-75(본체)				전자식	4,32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복식)	형식3 (펌프,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372	한국다쓰노㈜	GOM-980C(SENSOR-TANK1기당)				전자식	1,120
373	한국다쓰노㈜	GOM-980C(본체)				전자식	2,800
374	한국다쓰노㈜	GOM-980D(SENSOR-TANK1기당)				전자식	1,360
375	한국다쓰노㈜	GOM-980D(본체)				전자식	3,040
376	한국다쓰노㈜	GSB24421	저속	4복식			15,920
377	한국다쓰노㈜	GSB24423	혼합	4복식			17,440
378	한국다쓰노㈜	HB-HW(HYBRID-MULTI)	고속	복식		전자식	7,280
379	한국다쓰노㈜	HB-LW(HYBRID-MULTI)	저속	복식		전자식	7,040
380	한국다쓰노㈜	JVRS				유증기 회수장치	2,288
381	한국다쓰노㈜	KDB24421	저속	4복식		New Multi-X Self	25,840
382	한국다쓰노㈜	KDB24421-S	저속	4복식		New MULTI-X	28,080
383	한국다쓰노㈜	KDB24421-V	저속	4복식		New MULTI-X	20,880
384	한국다쓰노㈜	KDB24423-S	혼합	4복식		New MULTI-X	26,880
385	한국다쓰노㈜	KDB24423-V	혼합	4복식		New MULTI-X	21,600
386	한국다쓰노㈜	KDB36621	저속	6복식			17,440
387	한국다쓰노㈜	KDB36621-S	저속	6복식		New MULTI-X	30,400
388	한국다쓰노㈜	KDB36621-V	저속	6복식		New MULTI-X	23,520
389	한국다쓰노㈜	KDB36623	혼합	6복식			17,840
390	한국다쓰노㈜	KDB36623-S	혼합	6복식		New MULTI-X	31,920
391	한국다쓰노㈜	KDB36623-V	혼합	6복식		New MULTI-X	24,320
392	한국다쓰노㈜	KH2000				SELF OPT 부착장치	8,000
393	한국다쓰노㈜	KSB24421-S	저속	4복식		New MULTI-X	27,120
394	한국다쓰노㈜	KSB24421-V	저속	4복식		New MULTI-X	19,760
395	한국다쓰노㈜	KSB24423-S	혼합	4복식		New MULTI-X	26,800
396	한국다쓰노㈜	KSB24423-V	혼합	4복식		New MULTI-X	20,480
397	한국다쓰노㈜	KSB36621	저속	6복식			21,280
398	한국다쓰노㈜	KSB36621-S	저속	6복식		New MULTI-X	29,680
399	한국다쓰노㈜	KSB36621-V	저속	4복식		New MULTI-X	22,000
400	한국다쓰노㈜	KSB36623	혼합	6복식			21,68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복식)	형식3 (펌프,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401	한국다쓰노㈜	KSB36623-S	혼합	6복식		New MULTI-X	30,560
402	한국다쓰노㈜	KSB36623-V	혼합	4복식		New MULTI-X	22,800
403	한국다쓰노㈜	NewSUNNYEXLw	저속	2복식			8,000
404	한국다쓰노㈜	OPT2400				SELF OPT 부착장치	7,200
405	한국다쓰노㈜	RDM12222				LPG충전기	14,640
406	한국다쓰노㈜	SN-08SHM-J(천정식)	고속	단식		천장형	14,510
407	한국다쓰노㈜	SN-08SM-J(천정식)	저속	단식		천장형	13,900
408	한국다쓰노㈜	SN-08WHM-J(천정식)	고속	복식		천장형	25,250
409	한국다쓰노㈜	SN-08WIM-J(천정식)	혼합	복식		천장형	24,880
410	한국다쓰노㈜	SN-08MM-J(천정식)	저속	복식		천장형	24,400
411	한국다쓰노㈜	SN-87-WM-J(NON-SPACE)	저속	복식		천장형	16,320
412	한국다쓰노㈜	SN-87SHM-J(NON-SPACE)	고속	단식		천장형	9,040
413	한국다쓰노㈜	SN-87SM-J(NON-SPACE)	저속	단식		천장형	8,320
414	한국다쓰노㈜	SN-87WHM-J(NON-SPACE)	고속	복식		천장형	17,760
415	한국다쓰노㈜	SN-87WIM-J(NON-SPACE)	혼합	복식		천장형	17,040
416	한국다쓰노㈜	SN-97-SM-J(NON-SPACE)	저속	복식		천장형	16,320
417	한국다쓰노㈜	SN-97SHM-J(NON-SPACE)	고속	단식		천장형	9,920
418	한국다쓰노㈜	SN-97SHM-S	고속	단식		천장형	9,600
419	한국다쓰노㈜	SN-97SHM-S	저속	복식			11,760
420	한국다쓰노㈜	SN-97SM-J(NON-SPACE)	저속	단식		천장형	9,120
421	한국다쓰노㈜	SN-97SM-S	저속	단식		천장형	8,800
422	한국다쓰노㈜	SN-97SM-S	혼합	복식			13,680
423	한국다쓰노㈜	SN-97WHM-J(NON-SPACE)	고속	복식		천장형	19,520
424	한국다쓰노㈜	SN-97WHM-S	고속	단식			6,480
425	한국다쓰노㈜	SN-97WHM-S	고속	복식		천장형	18,800
426	한국다쓰노㈜	SN-97WIH-S	혼합	복식		천장형	18,000
427	한국다쓰노㈜	SN-97WIM-J(NON-	혼합	복식		천장형	18,72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SPACE)					
428	한국다쓰노㈜	SN-97WIM-S	고속	복식			12,800
429	한국다쓰노㈜	SN-97WM-J	저속	단식			6,640
430	한국다쓰노㈜	SN-97WM-J	저속/ 고속	복식	펌프형		17,920
431	한국다쓰노㈜	SN-97WM-S	저속	단식			5,920
432	한국다쓰노㈜	SN-97WM-S	저속	복식		천장형	17,200
433	한국다쓰노㈜	WBK-300S	벌크	단식			4,480
434	한국다쓰노㈜	WBK-300W	벌크	복식			8,000
435	한국다쓰노㈜	WBMD24441	저속	4복식			10,920
436	한국다쓰노㈜	WBMD24443	혼합	4복식			11,752
437	한국다쓰노㈜	WBMD36641	저속	6복식			14,248
438	한국다쓰노㈜	WBMD36643	혼합	6복식			14,912
439	한국다쓰노㈜	WBMD48841	저속	8복식			17,840
440	한국다쓰노㈜	WBMS24423	혼합	4복식		BRIGHT MULTI SELF	19,280
441	한국다쓰노㈜	WBMS36623	혼합	6복식		BRIGHT MULTI SELF	22,560
442	한국다쓰노㈜	WBMS2443	혼합	4복식			10,152
443	한국다쓰노㈜	WBMS24441	저속	4복식			10,048
444	한국다쓰노㈜	WBMS24443	저속4	복식			10,048
445	한국다쓰노㈜	WBMS36641	저속	6복식			13,000
446	한국다쓰노㈜	WBMS36643	혼합	6복식			13,208
447	한국다쓰노㈜	WBMS36841	저속	복식			9,840
448	한국다쓰노㈜	WBMS48841	저속	8복식			14,240
449	한국다쓰노㈜	WDA-1P2N1	저속	복식		NEO SUNNY	3,920
450	한국다쓰노㈜	WDA-1P2N2	고속	복식		NEO SUNNY	4,880
451	한국다쓰노㈜	WDA11111	저속	단식		NEO SUNNY	3,808
452	한국다쓰노㈜	WDA11112	고속	단식		NEO SUNNY	3,936
453	한국다쓰노㈜	WDA22221	저속	복식		NEO SUNNY	6,144
454	한국다쓰노㈜	WDA22222	고속	복식		NEO SUNNY	6,408
455	한국다쓰노㈜	WDA22223	혼합	복식		NEO SUNNY	6,28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456	한국다쓰노㈜	WDB24441	저속	4복식			9,152
457	한국다쓰노㈜	WDB24442	고속	4복식			9,424
458	한국다쓰노㈜	WDB24443	혼합	4복식			9,680
459	한국다쓰노㈜	WDB36641	저속	6복식			12,328
460	한국다쓰노㈜	WDB36642	고속	6복식			11,200
461	한국다쓰노㈜	WDB36643	혼합	6복식			12,432
462	한국다쓰노㈜	WDBHB12221	저속	복식			6,488
463	한국다쓰노㈜	WDBHB12222	고속	복식			6,728
464	한국다쓰노㈜	WDC11111	초고속	단식		NEO SUNNY	10,088
465	한국다쓰노㈜	WDC22222	초고속	복식		NEO SUNNY	15,600
466	한국다쓰노㈜	WGDB24421(Neo-MultiSelf)	저속	4복식		Neo-Multi Self	16,952
467	한국다쓰노㈜	WGDB24423	혼합	4복식			17,504
468	한국다쓰노㈜	WGDB36621(Neo-MultiSelf)	저속	6복식		Neo-Multi Self	20,384
469	한국다쓰노㈜	WGSB24421(Neo-MultiSelf)	저속	4복식		Neo-Multi Self	16,224
470	한국다쓰노㈜	WGSB36621(Neo-MultiSelf)	저속	6복식		Neo-Multi Self	19,656
471	한국다쓰노㈜	WMDB24421	저속	4복식		Sunny-X self	19,384
472	한국다쓰노㈜	WMDB24423	혼합	4복식		Sunny-X self	19,624
473	한국다쓰노㈜	WSA11111	저속	단식		NEO SUNNY	3,232
474	한국다쓰노㈜	WSA11112	고속	단식		NEO SUNNY	3,336
475	한국다쓰노㈜	WSA22221	저속	복식		NEO SUNNY	5,224
476	한국다쓰노㈜	WSA22222	고속	복식		NEO SUNNY	5,440
477	한국다쓰노㈜	WSA22223	혼합	복식		NEO SUNNY	5,336
478	한국다쓰노㈜	WSB24441	저속	4복식			8,216
479	한국다쓰노㈜	WSB24442	고속	4복식			8,528
480	한국다쓰노㈜	WSB24443	혼합	4복식			8,320
481	한국다쓰노㈜	WSB36641	저속	6복식			10,920
482	한국다쓰노㈜	WSB36642	고속	6복식			10,480
483	한국다쓰노㈜	WSB36643	혼합	6복식			11,080
484	한국다쓰노㈜	액중PUMP	벌크		액중형	이동차량용	1,840
485	한국다쓰노㈜	VRS				유증기회수장치	2,288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486	한국ENE	BS-1200	초고속	단식		천장형(내장형)	4,160
487	한국ENE	BS-1300	벌크	단식		천장형(내장형)	4,800
488	한국ENE	BS-2000	초고속/ 고속	복식		천장형(내장형)	6,000
489	한국ENE	BS-3000	벌크/ 고속	복식		천장형(내장형)	6,400
490	한국ENE	BS-4000	초고속/ 고속	복식		천장형(내장형)	6,240
491	한국ENE	BS-5000	벌크/ 고속	복식		천장형(내장형)	6,560
492	한국ENE	BS-6000	벌크	복식		천장형(내장형)	6,800
493	한국ENE	DC-1H	고속	단식	펌프형	디지털	3,760
494	한국ENE	DC-1HR	저속	복식	액중형	디지털	3,040
495	한국ENE	DC-1HS	저속	복식	펌프형	디지털	3,280
496	한국ENE	DC-1S	저속	단식	펌프형	디지털	3,360
497	한국ENE	DC-1SR	저속	단식	액중형	디지털	2,640
498	한국ENE	DC-1SS	저속	단식	펌프형	디지털	3,200
499	한국ENE	DC-2H	고속	복식	펌프형		6,560
500	한국ENE	DC-2HR	고속	복식	액중형	디지털	5,600
501	한국ENE	DC-2HS	고속	복식	펌프형	디지털	6,000
502	한국ENE	DC-2S	저속	복식	펌프형		5,680
503	한국ENE	DC-2SR	고속	단식	액중형	디지털	5,040
504	한국ENE	DC-2SS	고속	단식	펌프형	디지털	5,600
505	한국ENE	DC-SH	저속/ 고속	복식	펌프형	디지털	6,000
506	한국ENE	DC-SHR	고속	복식	액중형	디지털	5,200
507	한국ENE	DC-SHS	저속/ 고속	복식	펌프형	디지털	5,840
508	한국ENE	EM-2S2HR		4복식	액중형	유로콤	7,700
509	한국ENE	EM-2S2HS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8,100
510	한국ENE	EM-2S4HR		6복식	액중형	유로콤	8,900
511	한국ENE	EM-2S4HS		6복식	펌프형	유로콤	10,000
512	한국ENE	EM-4S2HR		6복식	액중형	유로콤	10,500
513	한국ENE	EM-4S2HS		6복식	펌프형	유로콤	9,8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514	한국ENE	EM-4S4HR		8복식	액중형	유로콤	12,160
515	한국ENE	EM-4S4HS		8복식	펌프형	유로콤	14,080
516	한국ENE	EM-4SR		4복식	액중형	유로콤	7,700
517	한국ENE	EM-4SS		4복식	펌프형	유로콤	9,000
518	한국ENE	EM-6S2H-S	저속/ 고속	8복식	펌프형		16,640
519	한국ENE	EM-6S2HR		8복식	액중형	유로콤	11,840
520	한국ENE	EM-6SR		6복식	액중형	유로콤	9,700
521	한국ENE	EM-6SS		6복식	펌프형	유로콤	10,900
522	한국ENE	EM-8SR		8복식	액중형	유로콤	12,960
523	한국ENE	EM-8SS		8복식	펌프형	유로콤	15,840
524	한국ENE	EMS2S2HR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3,600
525	한국ENE	EMS2S2HS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4,100
526	한국ENE	EMS4S2HS	저속/ 고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5,900
527	한국ENE	EMS4SS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3,900
528	한국ENE	GE1H	고속	단식	펌프형	마이콤	3,200
529	한국ENE	GE1HF	고속	단식		마이콤	2,400
530	한국ENE	GE1S	저속	단식	펌프형	마이콤	2,800
531	한국ENE	GE1SF	저속	단식		마이콤	2,160
532	한국ENE	GE2H	고속	복식	펌프형	마이콤	5,600
533	한국ENE	GE2HF	고속	복식		마이콤	4,240
534	한국ENE	GE2S	저속	복식	펌프형	마이콤	4,640
535	한국ENE	GE2SF	저속	복식		마이콤	3,520
536	한국ENE	GESH	혼합	복식	펌프형	마이콤	5,120
537	한국ENE	GESHF	저속/ 고속	복식		마이콤	3,920
538	한국ENE	GHLSSD12	12V			홀로리	2,080
539	한국ENE	GHLSSD24	24V			홀로리	2,160
540	한국ENE	GHP5M-HIN	고속	단식		NEW MASTER	2,320
541	한국ENE	GHW5M-HIN	고속	복식		NEW MASTER	4,160
542	한국ENE	GHYM4N-H	고속	4복식		4NOZZLE	7,2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종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543	한국ENE	GHYM4N-S	저속	4복식		4NOZZLE	6,560
544	한국ENE	GHYM4N-SH	저속/ 고속	4복식		4NOZZLE	6,880
545	한국ENE	GLP2D		복식		LPG충전기	14,400
546	한국ENE	G01H	고속	단식		천장형	10,080
547	한국ENE	G01S	저속	단식		천장형	9,360
548	한국ENE	G02H	일반/ 고속	복식		천장형	19,040
549	한국ENE	G02S	저속	복식		천장형	17,600
550	한국ENE	G0S1H-M	고속	단식		천장형	7,760
551	한국ENE	G0S1S-M	저속	단식		천장형	7,200
552	한국ENE	G0S2H-M	고속	복식		천장형	14,640
553	한국ENE	G0S2S-M	저속	복식		천장형	13,600
554	한국ENE	G0SH	저속/ 고속	복식		천장형	18,320
555	한국ENE	G0SSH-M	저속/ 고속	복식		천장형	13,760
556	한국ENE	GS1H	고속	단식	액종형	마이콤	2,800
557	한국ENE	GS1S	저속	단식	액종형	마이콤	2,480
558	한국ENE	GS2H	고속	복식	액종형	마이콤	4,960
559	한국ENE	GS2S	저속	복식	액종형	마이콤	4,160
560	한국ENE	GSHPSM-HN	저속/ 고속	복식		NEW MASTER	3,920
561	한국ENE	GSPSM-HN	저속	단식		NEW MASTER	2,080
562	한국ENE	GSSH	혼합	복식	액종형	마이콤	4,480
563	한국ENE	GWPSM-HN	저속	복식		NEW MASTER	3,520
564	한국ENE	HL-BL12	12V			홀로리	2,240
565	한국ENE	HL-BL24	24V			홀로리	2,480
566	한국ENE	HL-BS24	초고속			홀로리	2,480
567	한국ENE	HLSUPER	초고속			홀로리	2,480
568	한국ENE	HP-2H	고속	복식	펌프형	마이콤	5,200
569	한국ENE	LP-2SR		복식		LPG충전기	7,280
570	한국ENE	MD-1HR	고속	단식	액종형	마이콤	2,000
571	한국ENE	MD-1HS	고속	단식	펌프형	마이콤	2,4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복식)	형식3 (펌프,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572	한국ENE	MD-1SR	저속	단식	액중형	마이콤	1,900
573	한국ENE	MD-1SS	저속	단식	펌프형	마이콤	2,200
574	한국ENE	MD-2HR	고속	복식	액중형	마이콤	3,280
575	한국ENE	MD-2HS	고속	복식	펌프형	마이콤	3,800
576	한국ENE	MD-2SR	저속	복식	액중형	마이콤	3,000
577	한국ENE	MD-2SS	저속	복식	펌프형	마이콤	3,450
578	한국ENE	MD-SHR	혼합	복식	액중형	마이콤	3,200
579	한국ENE	MD-SHS	혼합	복식	펌프형	마이콤	3,700
580	한국ENE	MDS2S2HR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2,200
581	한국ENE	MDS2S2HS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3,000
582	한국ENE	MDS4SS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2,700
583	한국ENE	M02H01H	고속		펌프형	천장형(내장형)	7,200
584	한국ENE	M02S01S	저속		펌프형	천장형(내장형)	6,480
585	한국ENE	M02S01S	저속2/ 고속4				9,440
586	한국ENE	MP-1H	고속	단식	펌프형	마이콤	2,640
587	한국ENE	MP-1HR	고속	단식	액중형	마이콤	2,320
588	한국ENE	MP-1HS	고속	단식	펌프형	마이콤	2,640
589	한국ENE	MP-1S	저속	단식	펌프형	마이콤	2,320
590	한국ENE	MP-1SR	저속	단식	액중형	마이콤	2,080
591	한국ENE	MP-1SS	저속	단식	펌프형	마이콤	2,320
592	한국ENE	MP-2HR	고속	복식	액중형	마이콤	4,080
593	한국ENE	MP-2HS	고속	복식	펌프형	마이콤	4,640
594	한국ENE	MP-2S	저속	복식	펌프형	마이콤	3,840
595	한국ENE	MP-2SR	저속	복식	액중형	마이콤	3,440
596	한국ENE	MP-2SS	저속	복식	펌프형	마이콤	3,840
597	한국ENE	MP-SH	저속/ 고속	복식	펌프형	마이콤	3,760
598	한국ENE	MP-SHR	저속/ 고속	복식	액중형	마이콤	3,760
599	한국ENE	MP-SHS	저속/ 고속	복식	펌프형	마이콤	4,320
600	한국ENE	MS2S4H	저속2/ 고속4	6복식	액중형	멀티콤	10,56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601	한국ENE	MS4D	혼합	4복식	액중형	멀티콤	7,680
602	한국ENE	MS4H	고속	4복식	액중형	멀티콤	7,920
603	한국ENE	MS4S	저속	4복식	액중형	멀티콤	7,200
604	한국ENE	MS4S2H	저속4/ 고속2	6복식	액중형	멀티콤	10,320
605	한국ENE	MS6H	고속	6복식	액중형	멀티콤	10,880
606	한국ENE	MS6S	저속	6복식	액중형	멀티콤	9,840
607	한국ENE	MT-2HR	고속	2복식	액중형	멀티콤	5,440
608	한국ENE	MT-2HS	고속	2복식	펌프형	멀티콤	5,920
609	한국ENE	MT-2S2H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멀티콤	7,280
610	한국ENE	MT-2S2HR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멀티콤	7,000
611	한국ENE	MT-2S2HS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멀티콤	7,800
612	한국ENE	MT-2S4HR	저속2/ 고속4	6복식	액중형	멀티콤	9,200
613	한국ENE	MT-2S4HS	저속2/ 고속4	6복식	펌프형	멀티콤	10,000
614	한국ENE	MT-2SR	저속	2복식	액중형	멀티콤	5,520
615	한국ENE	MT-2SS	저속	2복식	펌프형	멀티콤	6,080
616	한국ENE	MT-4H	고속	4복식	펌프형	멀티콤	9,840
617	한국ENE	MT-4HR	고속	4복식	액중형	멀티콤	8,000
618	한국ENE	MT-4HS	고속	4복식	펌프형	멀티콤	9,840
619	한국ENE	MT-4S	저속	4복식	펌프형	멀티콤	9,040
620	한국ENE	MT-4S2HR	저속4/ 고속2	6복식	액중형	멀티콤	9,600
621	한국ENE	MT-4S2HS	저속4/ 고속2	6복식	펌프형	멀티콤	11,920
622	한국ENE	MT-4SR	저속	4복식	액중형	멀티콤	7,200
623	한국ENE	MT-4SS	저속	4복식	펌프형	멀티콤	7,600
624	한국ENE	MT-6H	고속	6복식	펌프형	멀티콤	12,720
625	한국ENE	MT-6HR	고속	6복식	액중형	멀티콤	11,520
626	한국ENE	MT-6HS	고속	6복식	펌프형	멀티콤	12,72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627	한국ENE	MT-6S	저속	6복식	펌프형	멀티콤	11,440
628	한국ENE	MT-6SR	저속	6복식	액중형	멀티콤	9,600
629	한국ENE	MT-6SS	저속	6복식	펌프형	멀티콤	10,400
630	한국ENE	MT2S4H	저속2/ 고속4	6복식	펌프형	멀티콤	12,320
631	한국ENE	MT4D	혼합	4복식	펌프형	멀티콤	9,520
632	한국ENE	MT4S2H	저속4/ 고속2	6복식	펌프형	멀티콤	11,920
633	한국ENE	MTS2S2HR	저속/ 고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4,000
634	한국ENE	MTS2S2HS	저속/ 고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4,700
635	한국ENE	MTS4SS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4,500
636	한국ENE	OH-1HS	고속	단식		천장형	8,160
637	한국ENE	OH-1SS	저속	단식		천장형	8,160
638	한국ENE	OH-2HS	고속	복식		천장형	15,600
639	한국ENE	OH-2SS	저속	복식		천장형	14,240
640	한국ENE	OH-SHS	저속/ 고속	복식		천장형	14,960
641	한국ENE	PUMP	1.5HP		액중형		1,360
642	한국ENE	PUMP	2HP		액중형		2,000
643	한국ENE	SMT4D	저속/ 고속	4복식		셀프형	14,560
644	한국ENE	SMT4H	고속	4복식		셀프형	13,760
645	한국ENE	SMT4S	저속	4복식		셀프형	12,880
646	한국ENE	SP-1000		단식	펌프형		5,800
647	한국ENE	SP-1B1HR1P		복식	액중형		7,100
648	한국ENE	SP-1B1HR2P		혼합복식	액중형		7,300
649	한국ENE	SP-1B1HR1P	초고속/ 고속	복식			5,000
650	한국ENE	SP-1B1UR2P		복식	액중형		7,700
651	한국ENE	SP-1BR1P		단식	액중형		4,900
652	한국ENE	SP-1BR1P	초고속	단식			3,280
653	한국ENE	SP-1U1HR1P	초고속/ 고속	복식	액중형		6,200
654	한국ENE	SP-1U1HR2P	초고속/ 고속	혼합복식	액중형		6,3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655	한국ENE	SP-1U1HR1P	벌크	단식			4,000
656	한국ENE	SP-1U1HS1P		복식	펌프형		8,000
657	한국ENE	SP-1UR1P	초고속	단식	액중형		4,300
658	한국ENE	SP-1UR1P	초고속	복식			6,640
659	한국ENE	SP-1US1P		단식	펌프형		5,500
660	한국ENE	SP-2000	초고속	복식	펌프형		13,680
661	한국ENE	SP-2000		복식	펌프형		6,000
662	한국ENE	SP-2BR2P		복식	액중형		8,000
663	한국ENE	SP-2UR2P	초고속	복식	액중형		6,500
664	한국ENE	SPX215	1.5HP		액중형		1,600
665	한국ENE	STD-P1500U1	1.5HP		액중형		1,600
666	한국ENE	STD-P150U1	2HP				2,080
667	한국ENE	STD-P200U1	2HP		액중형		2,720
668	한화주유기(주)	262-2-R-TW-P		복식		디스펜서형	3,680
669	한화주유기(주)	262-2-TW-HD-P	고속			일반형	4,960
670	한화주유기(주)	262-2-TW-P		복식		일반형	4,160
671	한화주유기(주)	262-HD-P	고속			일반형	2,880
672	한화주유기(주)	262A-2-TW-S-P	혼합			일반형	4,480
673	한화주유기(주)	262A-P		단식		일반형	2,480
674	한화주유기(주)	262AR-P		단식		디스펜서형	2,240
675	한화주유기(주)	C-40	저속	단식		전자식	2,320
676	한화주유기(주)	C-40H	고속	단식		전자식	2,640
677	한화주유기(주)	CC-40	저속	복식		전자식	3,920
678	한화주유기(주)	CC-40H	고속	복식		전자식	4,640
679	한화주유기(주)	CC-401H	혼합	복식		전자식	4,320
680	한화주유기(주)	H324A-P		4복식		일반형	8,080
681	한화주유기(주)	H324AR-P		4복식		디스펜서형	6,800
682	한화주유기(주)	H426A-P		6복식		일반형	9,680
683	한화주유기(주)	H426AR-P		6복식		디스펜서형	9,680
684	한화주유기(주)	MPH-4A		4복식			8,320
685	한화주유기(주)	MPH-4A1H	저속3/ 고속1	4복식		(1H,3S)	8,56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조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686	한화주유기(주)	MPH-4A2H	저속2/ 고속2	4복식		(2H, 2S)	8,800
687	한화주유기(주)	MPH-6A		6복식			10,160
688	한화주유기(주)	MPH-6A2H	저속4/ 고속2	6복식		(2H, 4S)	10,640
689	LG산전(주)	GDHLD-P				LPG충전기	10,400
690	LG산전(주)	GE1BFS	초고속	단식		고정식	6,640
691	LG산전(주)	GE2BFS	초고속	복식		고정식	12,640
692	LG산전(주)	GSE1P1-B	초고속	단식	액중형		4,320
693	LG산전(주)	GSE1P1-H	고속	단식	액중형		3,120
694	LG산전(주)	GSE1P1-S	저속	단식	액중형		2,640
695	LG산전(주)	GSE2-2-H	고속	복식	액중형		5,440
696	LG산전(주)	GSE2P2-B	초고속	단식	액중형		8,160
697	LG산전(주)	GSE2P2-S	저속	복식	액중형		4,560
698	LG산전(주)	GSE2P2-SH	저속/ 고속	복식	액중형		5,040
699	LG산전(주)	MP2HOP	고속		펌프형	천장형(내장형)	7,440
700	LG산전(주)	MP2SOP	저속		펌프형	천장형(내장형)	6,640
701	LG산전(주)	MS2S4H	저속/ 고속	6복식	액중형	(2S, 4H)	11,920
702	LG산전(주)	MS4D		4복식	액중형		8,880
703	LG산전(주)	MS4H		4복식	액중형		9,680
704	LG산전(주)	MS4S		4복식	액중형		8,160
705	LG산전(주)	MS4S2H	저속/ 고속	6복식	액중형	(2H, 4S)	11,120
706	LG산전(주)	MS6H		6복식	액중형		12,640
707	LG산전(주)	MS6S		6복식	액중형		10,400
708	LG산전(주)	MT2S4H	저속/ 고속	6복식		(2S, 4H)	12,640
709	LG산전(주)	MT4S2H	저속/ 고속	6복식		(2H, 4S)	11,920
710	LG산전(주)	MT6H	고속	6복식		고정식	13,360
711	LG산전(주)	MT6S	저속	6복식		고정식	11,12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712	LG산전(주)	PUMP1.5HP			액중형		1,040
713	LG산전(주)	PUMP2HP			액중형		1,920
714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07S0641	혼합	복식		수동식	3,840
715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B4992	벌크	단식	액중형		3,200
716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B6992	벌크	복식	액중형		5,520
717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B6993	벌크/ 고속		액중형		4,800
718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B6994	벌크/ 초고속	복식	액중형		5,040
719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B6995	벌크	복식	펌프형		4,880
720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2220	저속	4복식	액중형		5,840
721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2242	고속	4복식	액중형		6,560
722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2243	혼합	4복식	액중형		6,240
723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3220	저속	6복식	액중형		7,120
724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3242	고속	6복식	액중형		8,000
725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3243	저속4/ 고속2	6복식	액중형	(2H,4S)	7,520
726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3244	저속2/ 고속4	6복식	액중형	(2S,4H)	7,600
727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4921	저속	단식	액중형		2,480
728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4942	고속	단식	액중형		2,560
729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4992	초고속	단식	액중형		2,64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복식)	형식3 (펌프,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730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6921	저속	복식	액중형		3,840
731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6942	고속	복식	액중형		3,840
732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6943	혼합	복식	액중형		3,760
733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6992	초고속	복식	액중형		4,320
734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6993	초고속		액중형		4,240
735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6994		복식	액중형		4,320
736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6995	초고속	복식	펌프형		5,040
737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G2220	저속	4복식	액중형		5,840
738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G2242	고속	4복식	액중형		6,000
739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G2243	혼합	4복식	액중형		5,920
740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G4921	저속	단식	액중형		2,480
741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G4942	고속	단식	액중형		2,560
742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G6921	저속	복식	액중형		3,680
743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G6942	고속	복식	액중형		3,440
744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G6943	혼합	복식	액중형		3,360
745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GV2220D	저속	4복식	액중형		7,36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복식)	형식3 (펌프,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746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GV2220D2	저속	4복식	액중형		8,960
747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GV2243D	혼합	4복식	액중형		7,440
748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GV4921S	저속	단식	액중형		3,520
749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GV6921D	저속	복식	액중형		5,280
750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GV6921S	저속	복식	액중형		4,720
751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GV6943S	혼합	복식	액중형		4,800
752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NF2220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1,760
753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NF2243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2,240
754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NF3220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3,600
755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NF3243	혼합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4,320
756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NFV2220DK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4,320
757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NFV2243DK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4,800
758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NFV3220DK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6,240
759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NFV3220DK2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7,680
760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NFV3243DK	혼합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7,040
761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DNFV3243DK2	혼합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8,48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762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2220D	저속	4복식	액중형		7,840
763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2220D2	저속	4복식	액중형		9,520
764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2243D	혼합	4복식	액중형		8,240
765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3220D	저속	6복식	액중형		9,120
766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3220D2	저속	6복식	액중형		10,800
767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3243D	저속4/ 고속2	6복식	액중형	(2H,4S)	9,600
768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3243D2	저속4/ 고속2	6복식	액중형	(2H,4S)	11,280
769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3244D	저속2/ 고속4	6복식	액중형	(2S,4H)	9,680
770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4921S	저속	단식	액중형		2,640
771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6921D	저속	복식	액중형		4,160
772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6921S	저속	복식	액중형		3,600
773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DV6943S	혼합	복식	액중형		3,840
774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MTC1942					1,400
775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NON-1010	저속	단식	펌프형	천장형	7,360
776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NON-1012	저속	복식	펌프형	천장형	13,920
777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소모정공]	NON-1015	고속	단식	펌프형	천장형	8,48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복식)	형식3 (펌프,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778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NON-1017	고속	복식	펌프형	천장형	16,080
779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NON-1019	혼합	복식	펌프형	천장형	15,440
780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NON-1110	저속	단식	액중형	천장형	6,960
781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NON-1112	저속	복식	액중형	천장형	13,600
782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NON-1115	고속	단식	액중형	천장형	8,160
783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NON-1117	고속	복식	액중형	천장형	15,520
784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NON-1119	혼합	복식	액중형	천장형	14,960
785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P0003			액중형		1,200
786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1921	저속	단식	펌프형		2,800
787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1942	고속	단식	펌프형		2,720
788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2220	저속	4복식	펌프형		6,690
789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2242	고속	4복식	펌프형		7,500
790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2243	혼합	4복식	펌프형		6,930
791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3220	저속	6복식	펌프형		8,250
792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3242	고속	6복식	펌프형		9,100
793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3243	저속4/ 고속2	6복식	펌프형	(2H,4S)	8,6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794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3244	저속2/ 고속4	6복식	펌프형	(2S, 4H)	8,890
795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3921	저속	복식	펌프형		4,240
796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3942	고속	복식	펌프형		4,400
797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3943	혼합	복식	펌프형		2,880
798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1921	저속	단식	펌프형		2,800
799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1942	고속	단식	펌프형		2,880
800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2220	저속	4복식	펌프형		7,000
801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2242	고속	4복식	펌프형		6,550
802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2243	혼합	4복식	펌프형		6,450
803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3921	저속	복식	펌프형		3,024
804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3942	고속	복식	펌프형		4,160
805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3943	혼합	복식	펌프형		4,624
806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V1921S	저속	단식	펌프형		3,680
807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V2220D	저속	4복식	펌프형		8,480
808	(주)소모홀딩스엔테	SGV2220D2	저속	4복식	펌프형		10,0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종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809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V2243D	혼합	4복식	펌프형		7,840
810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V3921D	저속	복식	펌프형		5,840
811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V3921S	저속	복식	펌프형		5,280
812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GV3943S	혼합	복식	펌프형		5,360
813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2220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4,930
814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2243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5,750
815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3220	저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7,300
816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3243	혼합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7,790
817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V2220	저속	4복식	펌프형		13,050
818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V2220D	저속	4복식			15,400
819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V2243DK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4,850
820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V3220D	저속	4복식			18,060
821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V3220DK2	저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8,680
822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V3243DK	혼합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7,710
823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소모정공]	SNFV3243DK2	혼합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9,100
824	(주)소모홀딩스엔테 크놀러지 [구 (주)	SV1921S	저속	단식	펌프형		2,4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소모정공]						
825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22200	저속	4복식	펌프형		7,760
826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222002	저속	4복식	펌프형		9,200
827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22430	혼합	4복식	펌프형		8,000
828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32200	저속	6복식	펌프형		8,720
829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322002	저속	6복식	펌프형		10,160
830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32430	저속4/ 고속2	6복식	펌프형	(2H,4S)	9,040
831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324302	저속4/ 고속2	6복식	펌프형	(2H,4S)	10,480
832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32440	저속2/ 고속4	6복식	펌프형	(2S,4H)	9,360
833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39210	저속	복식	펌프형		3,920
834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3921S	저속	복식	펌프형		3,440
835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V3943S	혼합	복식	펌프형		3,680
836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F0003				액중펌프	1,056
837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EFV22200K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0,200
838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EFV22430K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1,000
839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VRS				유증기회수장치	1,440
840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구 (주)소모정공]	SDFV2220	저속	4복식			17,54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841	㈜소모홀딩스엔데 크놀러지 [구 ㈜ 소모정공]	SDFV2243	혼합	4복식			18,680
842	㈜소모홀딩스엔데 크놀러지 [구 ㈜ 소모정공]	SDFV3220	저속	6복식			17,300
843	㈜소모홀딩스엔데 크놀러지 [구 ㈜ 소모정공]	SDFV3243	혼합	6복식			19,100
844	㈜소모홀딩스엔데 크놀러지 [구 ㈜ 소모정공]	SDFV3244	혼합	6복식			19,100
845	㈜소모홀딩스엔데 크놀러지 [구 ㈜ 소모정공]	SEFV3921	저속	2복식			13,870
846	㈜소모홀딩스엔데 크놀러지 [구 ㈜ 소모정공]	SEFV3943	혼합	2복식			16,320
847	㈜소모홀딩스엔데 크놀러지 [구 ㈜ 소모정공]	SEFV3244	혼합	6복식			18,300
848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coreSDL-4	저속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2,960
849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coreSPL-4	저속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3,680
850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coreSDL-6	저속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5,120
851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coreSPL-6	저속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5,520
852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coreSDHL-4	혼합	4복식	액중형	셀프형	13,360
853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coreSPHL-4	혼합	4복식	펌프형	셀프형	14,160
854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coreSDHL-6	혼합	6복식	액중형	셀프형	15,520
855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coreSPHL-6	혼합	6복식	펌프형	셀프형	15,840
856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PHS	고속	단식	펌프형	일반형	3,040
857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PLS	저속	단식	펌프형	일반형	2,880
858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PH	고속	2복식	펌프형	일반형	4,160
859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PL	저속	2복식	펌프형	일반형	4,000
860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PHL	혼합	2복식	펌프형	일반형	4,080
861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NewAdvantagePL	저속	4복식	펌프형	일반형	6,8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작사	모델명	형식1 (속도)	형식2 (단, 복식)	형식3 (펌프, 액중형)	형식4 (기타)	기준 가격
862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NewAdvantagePHL	혼합	4복식	펌프형	일반형	6,880
863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DHS	고속	단식	액중형	일반형	2,880
864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DLS	저속	단식	액중형	일반형	2,800
865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DH	고속	2복식	액중형	일반형	3,440
866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DLS	저속	2복식	액중형	일반형	3,280
867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DHL	혼합	2복식	액중형	일반형	3,360
868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NewAdvantageDL	저속	4복식	액중형	일반형	6,160
869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NewAdvantageDHL	혼합	4복식	액중형	일반형	6,240
870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PUHS	초고속	단식	펌프형	셀프형	3,360
871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PUHH	초고속	2복식	펌프형	셀프형	4,560
872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DBS	벌크	단식	액중형	셀프형	4,160
873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DBH	벌크	2복식	액중형	셀프형	5,280
874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SelfPH	고속	단식	펌프형	셀프형	9,760
875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SelfPL	저속	단식	펌프형	셀프형	10,000
876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SelfPHL	혼합	2복식	펌프형	셀프형	10,080
877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SelfDH	고속	단식	액중형	셀프형	9,200
878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SelfDL	저속	단식	액중형	셀프형	9,520
879	길바코비더루트 코리아㈜	EndeavorSelfDHL	혼합	2복식	액중형	셀프형	9,600
880	장위데이터시스 템㈜	J-POS3000P		복식		LPG충전기	12,400

③ L.P.G 저장조

(단위 : 천원)

용 량	내용중량 (부탄기준)	저장소 개소당 설비 기준가격
<u>7,500 ℓ 미만 1,000 ℓ (1m³) 감소시</u>		△760
7,500 ℓ 이하(7.5m³)	3.75톤	31,600
10,000 ℓ 이하 (10m³)	5톤	40,000
15,000 ℓ 이하 (15m³)	7.5톤	57,840
20,000 ℓ 이하 (20m³)	10톤	71,200
40,000 ℓ 이하 (40m³)	20톤	108,160
60,000 ℓ 이하 (60m³)	30톤	138,160
60,000 ℓ 이상 1,000 ℓ (1m³) <u>증가시</u>		1,072

④ CNG 저장조

(단위 : 천원)

용 량	개 당	저장소 개소당 설비 기준가격
<u>585 ℓ 미만, 100 ℓ 감소시</u>		△16
Water Volume 585 ℓ 이하	$(0.585\text{m}^3 \times 250\text{kg}/\text{m}^3 = 146\text{m}^3) / \text{개 당}$	11,840
Water Volume 1,300 ℓ 이하	$(1.3\text{m}^3 \times 250\text{kg}/\text{m}^3 = 325\text{m}^3) / \text{개 당}$	19,880
Water Volume 2,600 ℓ 이하	$(2.6\text{m}^3 \times 250\text{kg}/\text{m}^3 = 650\text{m}^3) / \text{개 당}$	38,840
<u>2,600 ℓ 초과, 100 ℓ 증가시</u>		11

⑤ 가스주입기(LPG)

(단위 : 천원)

종 류 별	주입기대당 기준가격
단 식	4,480
복 식	10,160
복 복 식	18,240

⑥ 가스주입기(CNG)

(단위 : 천원)

종 류 별	주입기대당 기준가격
단식	26,800
복식	45,200

⑦ CNG 압축기

(단위 : 천원)

종 류 별	기준가격
100HP	158,000
250HP	228,400
370HP	276,00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ast \text{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LPG저장조의 시설용량 : 100D/M, 주유기 : 2대(PRIME SELF-8040), LPG저장조의 용량 : 60m³, 가스주입기 : 단식 2대
- 위 시설이 2011년도에 신품으로 설치되었다면 2018년의 시가표준액은?

① 저장시설의 시가표준액계산

- 감가율 : 0.05(저장조)
- 잔가율 : $1 - (0.05 \times 7\text{년}) = 0.65$
- 100D/M기준가격 9,600,000원
- 시가표준액 : $9,600,000\text{원} \times 0.65(\text{잔가율}) = 6,240,000\text{원} \dots\dots\dots A$

② 주유기의 시가표준액계산

- 감가율 : 0.09(주유기)
- 잔가율 : $1 - (0.09 \times 7\text{년}) = 0.37$
- 2대(PRIME SELF-8040)기준가격
- 기준가격 : $15,400,000\text{원} \times 2\text{대} = 30,800,000$
- 시가표준액 : $30,800,000\text{원} \times 0.37(\text{잔가율}) = 11,396,000\text{원} \dots\dots\dots B$

③ L.P.G 저장조의 시가표준액계산

- 감가율 : 0.05(LPG 저장조)
- 잔가율 : $1 - (0.05 \times 7\text{년}) = 0.65$
- 60m³ 기준가격 : 138,160,000원
- 시가표준액 : $138,160,000\text{원} \times 0.65(\text{잔가율}) = 89,804,000\text{원} \dots\dots\dots C$

④ 가스주입기의 시가표준액계산

- 감가율 : 0.09(가스주입기)
- 잔가율 : $1 - (0.09 \times 7\text{년}) = 0.37$
- 단식 2대 기준가격 : $4,480,000\text{원} \times 2\text{대} = 8,96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8,960,000\text{원} \times 0.37(\text{잔가율}) = 3,315,200\text{원} \dots\dots\dots D$

⑤ 시가표준액 합계

: $A(6,240,000) + B(11,396,000) + C(89,804,000) + D(3,315,200) = 110,755,200\text{원}$

바.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1)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의 개수”란 시설물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걸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의 도장,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소모된 기계·밸브의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주유기나 가스주입기의 교체는 신규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저장조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저장조의 개수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저장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걸면적/해당 저장조의 총 걸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저장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text{저장조의 시가표준액} \times (\text{개수된 걸면적} / \text{저장조의 총 걸면적}) = \text{개수 시가표준액}$

저장조의 총 걸면적 계산

- 정육면체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6$
- 직육면체 : $(a\text{면의 가로} \times \text{세로} + b\text{면의 가로} \times \text{세로} + c\text{면의 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2$
- 원통형 : $(\pi r^2 \times 2) + (2\pi r \times \text{높이})$
- 타원형 : $(\pi ab \times 2) + \pi \{5(a+b)/4 - ab/(a+b)\} \times \text{높이}$
-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 ② 그 밖에 저장조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LPG 저장조(용량: 65m³)에서 결면적의 2분의 1을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65m³ 기준가격 합계: 138,160,000원+1,072,000원/m³×5m³=143,520,000원
- 개수비율 : 1/2=0.5
- 개수 시가표준액 : 143,520,000원×1(잔가율)×0.5=71,760,000원

- 3) 개수 해당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1년에 설치한 LPG 저장조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1년 + [0.20 × 경과연수(7년)] = 2012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시설한 LPG저장조 60m³를 2018년에 일부 개수(30m³)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LPG저장조)
- 개수 잔가율 : 1 - (0.05×7년) = 0.6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1년+(7년×0.20)=2012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5×6년) = 0.70
- 60m³ 기준가격 : 138,160,000원
- 시가표준액 : 138,160,000원×0.70(잔가율) = 96,712,000원

2. 송 전 첩 탑

가. 정 의

송전첩탑이란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선을 지탱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첩탑을 말한다(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 첩탑이란 철근, 철골이나 철주를 소재로 세운 탑이나 첩기둥을 말한다.

나. 구 분

- 345천볼트, 765천볼트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345천볼트	30	정액법	10%	0.03	
765천볼트	30	“	10%	0.03	

라. 기준가격표

※ 2013.12.31일 이전 신고분 : ‘① 높이기준’ 적용

2014. 1. 1일 이후 신고분 : ‘② 중량기준’ 적용

① 첩탑높이

(단위 : 천원)

구분	첩탑높이		기준높이	기준가격	1m증감시	비고
	회선수					
345천볼트	2회선		30m	162,600	3,400	
	4회선		30m	349,700	4,860	
765천볼트	1회선		50m	801,100	6,250	
	2회선		50m	1,224,100	8,930	

② 철탑중량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중량	기준가격	1톤증감시
345천볼트	80톤	412,800	5,230
765천볼트	180톤	1,720,300	9,550

마. 적용요령

- 1) 철탑높이는 지상에서 최저암(전력선의 최하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 2) 철탑중량은 기초재와 상부재의 합계로 적용한다.
- 3) 회선수는 3개의 전력선을 1개 회선으로 본다.
- 4) 전력선은 시가표준액에서 제외한다.

바.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 \text{철탑시 기준가격(기준높이)} + 1\text{m 증감시 기준가격} \} \times \text{잔가율}$$

$$\text{시가표준액} = \{ \text{철탑시 기준가격(기준중량)} + 1\text{톤 증감시 기준가격} \}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3)

《 산출예시 》

- 2011년도 설치한 철탑(구분: 345천볼트, 회선수: 2회선, 높이: 35m)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345천볼트)
 - 잔가율 : $1 - (0.03 \times 7\text{년}) = 0.79$
 - 30m기준가격 : 162,600,000원 A
 - 5m 증가시 기준가격 : $3,400,000\text{원} \times 5\text{m} = 17,000,000\text{원} \dots\dots\dots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162,600,000\text{원} + 17,000,000\text{원} = 179,6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79,600,000\text{원} \times 0.79(\text{잔가율}) = 141,884,000\text{원}$

- 2016년도 시설한 345천볼트 82톤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345천볼트)
 - 잔가율 : $1 - (0.03 \times 2\text{년}) = 0.94$
 - 80톤 기준가격 : 412,800,000원 A
 - 1톤 증가시 기준가격 : 5,230,000원 \times 2톤 = 10,46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412,800,000\text{원} + 10,460,000\text{원} = 423,26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423,260,000\text{원} \times 0.94(\text{잔가율}) = 397,864,400\text{원}$

사. 송전철탑 개수 시가표준액

- 1) “송전철탑의 개수”란 송전철탑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송전철탑 전체 높이(2014년 이전) 또는 중량(2014년 이후)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앵글(angle)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송전철탑의 도장이나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송전철탑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먼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송전철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높이(중량)/해당 송전철탑의 총높이(총중량)”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송전철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송전철탑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2015년 이전에 설치한 철탑(구분: 345천볼트, 회선수: 2회선, 높이: 35m)에서 17.5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162,600,000\text{원} + 3,400,000\text{원}/\text{m} \times 5\text{m} = 179,600,000\text{원}$
 - 개수비율 : $17.5\text{m}/35\text{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179,600,000\text{원} \times 1(\text{잔가율}) \times 0.5 = 89,800,000\text{원}$

3) 개수 해당 송전철탑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1년에 설치한 345천볼트 철탑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1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7\text{년})]$ = 2012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설치한 철탑(구분: 345천볼트, 회선수: 2회선, 높이: 35m)를 2018년에 일부 개수(17.5m)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315천볼트)
- 개수 전 잔가율 : $1 - (0.03 \times 7\text{년}) = 0.79$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1년 + $(0.20 \times 7\text{년}) = 2012\text{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3 \times 6\text{년}) = 0.82$
- 30m 기준가격 : 162,600,000원 A
- 5m 증가시 기준가격 : $3,400,000\text{원} \times 5\text{m} = 17,000,000\text{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162,600,000\text{원} + 17,000,000\text{원} = 179,6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79,600,000\text{원} \times 0.82(\text{잔가율}) = 147,272,000\text{원}$

7. 기 타 시 설

1. 잔 교

가. 정 의

잔교(棧橋)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해안선이 접한 육지나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 2)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
- 3) 앞의 1)과 2)의 구조물과 유사한 구조물

나. 종 류

- 1) 일반잔교(승객용, 일반화물용, 기타)
- 2) 특수잔교 : 송유관(가스관), 광물운반, 차량통행 시설물 등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시 설 구 조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 골 콘 크 리 트 조	40년	0.0225	정액법	10%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0.0225	"	10%	
콘 크 리 트 조	30년	0.03	"	10%	
철 및 기 타 금 속 조	40년	0.0225	"	10%	
석 조	40년	0.0225	"	10%	
목 조	15년	0.06	"	10%	
기 타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① 일반잔교

(단위 : 천원)

시 설 구 조	단 위	기준가격
철 골 콘 크 리 트 조	1m ²	710
철 근 콘 크 리 트 조	"	590
콘 크 리 트 조	"	400
철 및 기 타 금 속 조	"	440
석 조	"	400
목 조	"	310
기 타	"	230

② 특수잔교

(단위 : 천원)

시 설 구 조	단 위	기준가격
○ 철근콘크리트조		
• 송유관(가스관) 시설	1m ² 당	890
• 광물 운반시설	"	1,770
• 차량통행시설	"	2,340
○ 철 및 기타금속조		
• 광물 운반시설	"	840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선박의장용 안벽(잔교식)	"	2,50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수면위의 구조물 면적(폭×길이) × 1m²당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에 설치된 일반잔교(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0,000m²)의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 가 율 : 0.0225(철근콘크리트조)
 - 잔 가 율 : 1 - (0.0225×6년) = 0.865
 - 기준가격 : 10,000m²×590,000원 = 5,900,000,000원
 - 시가표준액 : 5,900,000,000원×0.865(잔가율) = 5,103,500,000원

바. 잔교 개수 시가표준액

- 1) “잔교의 개수”란 잔교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잔교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선한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잔교의 도장이나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잔교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잔교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일반잔교(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0,000㎡)에서 5,000㎡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10,000㎡ 기준가격 : 10,000㎡×590,000원 = 5,900,000,000원
 - 개수비율 : 5,000㎡/10,000㎡=0.5
 - 개수 시가표준액 : 5,900,000,000원×1(잔가율)×0.5=2,950,000,000원
- 3) 개수 해당 잔교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잔교를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 경과연수(6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한 일반잔교(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0,000㎡)를 2018년에 일부 개수(5,000㎡)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225(철근콘크리트조)
 - 개수 전 잔가율 : 1 - (0.0225×6년) = 0.865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년 + (0.20×6년) = 2013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225×5년) = 0.8875
 - 기준가격 : 10,000㎡×590,000원 = 5,900,000,000원
 - 시가표준액 : 5,900,000,000원×0.8875(잔가율) = 5,236,250,000원

2.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1] 철골조립식(자주식)주차시설

가. 정 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말한다.

나. 종 류

- 1) 아연도금 철골조(철골에 아연도금한 구조물)
- 2) 페인트 철골조(철골에 페인팅한 구조물)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아연도금철골조	18	정액법	10%	0.05
페인트철골조	15	“	10%	0.06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종 류 별	m ² 당 기준가격
아 연 도 금 철 골 조	194
페 인 트 철 골 조	18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m}^2\text{당 기준가격} \times \text{연면적(m}^2\text{)}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2]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가. 정 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시설

나. 종 류

- 1) 수직전환식주차장치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4) 2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5) 다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로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6) 승강기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9) 특수형식주차장치 :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최종년도 잔가율	감 가 율
15년	정액법	10%	0.06

라. 기준가격표(1대당)

①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기준대수	기준대수까지의 대당 기준가격	기준대수 초과 1대증가시마다 대당 기준가격
소형(16대이하)	10대	5,170	4,310
대형(16대초과)	40대	4,090	3,370

②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2단 이하	3단	4단	5단	6단
기준가격	4,290	3,670	3,380	3,230	3,110

③ 2단식(1단식 포함)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기준가격	2,450	2,800	3,290

④ 다단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3단	4단	5단 이상
기준가격	3,540	3,450	3,440

⑤ 승강기식 및 승강슬라이드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기준가격	4,270	3,660

⑥ 평면왕복식

(단위 : 천원/대)

구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기준가격	4,990	4,480	4,040	3,850	3,750	3,720	3,630	3,58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1대당)} \times \text{대수}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4단 40대의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다층순환식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건물외에 설치하였을 경우 2018년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옥외기계식주차시설)
 - 1대당 기준가격 : 3,380,000원
 - 잔가율 : $1 - (0.06 \times 6\text{년}) = 0.64$
 - 시가표준액 : $3,380,000\text{원} \times 40\text{대} \times 0.64(\text{잔가율}) = 86,528,000\text{원}$

바. 주차장 개수 시가표준액

- 1) “주차시설의 개수”란 주차시설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주차시설 면적의 3분의 1 이상(철골조립식 주차시설) 또는 주차장치 대수의 3분의 1이상(기계식 주차시설)에 해당하는 수선한 경우에 한함)말하며, 주차시설의 도장이나 주차시설을 작동시키는 기계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수된 면적에 대하여 “[1]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3) 기계식 주차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교체된 주차장치의 대수별로 “[2]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4) 그 밖에 주차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기계장비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주차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건물외에 설치한 자동차용 주차시설(구조: 다층순환식 4단, 규모: 45대)에서 20대의 주차장치를 개수한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45대 기준가격 : 3,380,000원/대×45대=152,100,000원
- 개수비율 : 20대/45대=0.4444
- 개수 시가표준액 : 152,100,000원×1(잔가율)×0.4444=67,593,240원

5) 개수 해당 주차시설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다층순환식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 경과연수(6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한 4단 40대의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다층순환식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2018년에 일부 개수(20대)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옥외기계식주차시설)
- 개수 전 잔가율 : $1 - (0.06 \times 6\text{년}) = 0.64$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text{년} + (0.20 \times 6\text{년}) = 2013\text{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6 \times 5\text{년}) = 0.70$
- 1대당 기준가격 3,380,000원
- 시가표준액 : 3,380,000원×40대×0.70(잔가율)=94,640,000원

3. 방 송 중 계 탑

가. 정 의

방송중계탑이란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무선방송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한 철탑을 말한다. 다만, 「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철탑이란 철근, 철골이나 철주를 소재로 세운 탑이나 철키둥을 말한다.

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철탑	30	정액법	10%	0.03	

다.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가격	1m 증감시 기준가격	비 고
10m미만	18,000	△1,720	
10m이상	18,000	1,720	
20m이상	35,200	2,480	
30m이상	60,000	2,960	
40m이상	89,600	2,224	
50m이상	111,840	2,213	
60m이상	133,968	1,928	

라. 적용요령

철탑높이는 철골구조물의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방송중계탑(기준높이)} + 1\text{m 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3)

◀ 산출예시 ▶

- 2012년도 시설한 방송중계철탑(25m)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0.03 \times 6\text{년}) = 0.82$
 - 20m기준가격 : 35,200,000원 A
 - 5m 증가시 기준가격 : 2,480,000원 × 5m = 12,4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35,200,000\text{원} + 12,400,000\text{원} = 47,60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47,600,000\text{원} \times 0.82(\text{잔가율}) = 39,032,000\text{원}$

바. 방송중계탑 개수 시가표준액

- 1) “방송중계탑의 개수”란 방송중계탑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방송중계탑 전체 높이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선하거나 앵글(angle)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방송중계탑의 도장이나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방송중계탑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먼저 “다.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방송중계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높이(길이)/해당 방송중계탑의 총높이(총길이)”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방송중계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방송중계탑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25m 방송중계철탑에서 12.5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35,200,000원+2,480,000원/m × 5m = 47,600,000원
- 개수비율 : 12.5m/25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47,600,000원×1(잔가율)×0.5=23,800,000원

3) 개수 해당 방송중계탑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방송중계철탑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 경과연수(6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한 방송중계탑(25m)을 2018년에 일부 개수(12.5m)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철탑)
- 개수 전 잔가율 : 1 - (0.03×6년) = 0.82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년+(0.20×6년)=2013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3×5년) = 0.85
- 20m기준가격 : 35,200,000원 A
- 5m 증가시 기준가격 : 2,480,000원 × 5m = 12,4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35,200,000원 + 12,400,000원 = 47,600,000원
- 시가표준액 : 47,600,000원×0.85(잔가율) = 40,460,000원

4.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가. 정 의

- 1)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이란 무선이동통신 및 무선평출에 이용되는 전파를 무선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탑을 말한다.
- 2) 철탑이란 철근, 철골이나 철주를 소재로 세운 탑이나 철키둥을 말한다.
- 3) 전주형이란 철근콘크리트를 소재로 만든 시설물(기둥)을 말한다.
- 4) 폴형이란 철탑파이프를 주기둥으로 사용하여 세운 시설물을 말하며, 보통 건물 옥상에 주기둥을 보강하여 보조재로 주기둥인 철탑파이프간을 서로 연결하여 4단까지 삼각, 사각 등의 모양으로 세운 시설물도 이에 해당된다.
- 5) 철주형이란 기초공사 없이 지지선으로 철탑기둥을 지탱하는 철탑을 말한다.

나. 구 분 : 철탑형, 강관주형(전주형, 폴형, 철주형 제외)

다.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무선기지국용철탑	30	정액법	10%	0.03	

라. 기준가격표

① 철탑형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가격	1m 증감시 기준가격	비 고
10m미만	10,960	△688	
10m이상	10,960	688	
15m이상	14,400	1,440	
20m이상	21,600	1,480	
25m이상	29,000	1,352	
30m이상	35,760	1,360	
35m이상	42,560	1,267	
40m이상	48,896	1,597	
45m이상	56,880	1,597	

② 강관주형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가격	1m 증감시 기준가격	비 고
10m미만	12,400	△880	
10m이상	12,400	880	
15m이상	16,800	1,280	
20m이상	23,200	1,960	
25m이상	33,000	1,368	
30m이상	39,840	1,832	
35m이상	49,000	1,080	
40m이상	54,400	1,080	

마. 적용요령

- 1) 철탑높이는 철골구조물의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 2) 강관주형에서 환경친화용 위장철탑은 기준가격의 1.3배로 적용한다.

바. 시가표준액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철탑시 기준가격(기준높이)} + 1\text{m 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3)

《 산출예시 》

- 2012년도 설치한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철탑형 17m)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철탑형)
 - 잔가율 : $1 - (0.03 \times 6\text{년}) = 0.82$
 - 15m이상 기준가격 : 14,400,000원 A
 - 2m 증가시 기준가격 : $1,440,000\text{원} \times 2\text{m} = 2,880,000\text{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14,400,000\text{원} + 2,880,000\text{원} = 17,28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7,280,000\text{원} \times 0.82(\text{잔가율}) = 14,169,600\text{원}$

사.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개수 시가표준액

- 1)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개수”란 철탑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은 전체 높이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선하거나 강관·앵글(angle)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도장이나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 ① 먼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②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높이(길이)/해당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총높이(총길이)”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무선통신기지국용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17m 무선기지국용 철탑(구조: 철탑형)에서 8.5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합계 : 14,400,000원+1,440,000원/m × 2m = 17,280,000원
 - 개수비율 : 8.5m/17m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17,280,000원×1(잔가율)×0.5=8,640,000원
- 3) 개수 해당 무선기지국용 철탑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 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철탑형 무선기지국용 철탑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0.20 × 경과연수(6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한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철탑형 17m)를 2018년에 일부 개수(8.5m)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3(철탑형)
 - 개수 전 잔가율 : $1 - (0.03 \times 6\text{년}) = 0.82$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text{년} + (0.20 \times 6\text{년}) = 2013\text{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3 \times 5\text{년}) = 0.85$
 - 15m 이상 기준가격 : 14,400,000원 A
 - 2m 증가시 기준가격 : $1,440,000\text{원} \times 2 = 2,880,000\text{원} \dots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14,400,000\text{원} + 2,800,000\text{원} = 17,28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7,280,000\text{원} \times 0.85(\text{잔가율}) = 14,688,000\text{원}$

5. 자동세차시설

가. 정 의

자동세차시설이란 자동프로세스에 의하여 고압펌프에 의한 세척액 분무와 브러쉬 또는 천 등의 회전운동으로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혹은 세척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나. 종 류

1) 이송방식에 의한 구분

- ① 문형(roll over type) : 차량은 고정되어 있고 세제혼합액 분무장치, 브러쉬 장치, 물 분사장치, 건조장치 등을 갖춘 세차설비가 이동하면서 세차하는 방식
- ② 터널형(tunnel type) : 세제혼합액 분무장치, 브러쉬 장치, 물 분사장치, 건조장치 등이 갖추어진 터널형태의 자동세차시설 내를 자동차가 컨베이어 이송장치에 의하여 이동하면서 세차하는 방식
- ③ 준터널형 : 문형과 터널형을 혼합한 방식

2) 세척방식에 의한 구분

- ① 브러쉬(움) 방식 : 자동차가 세차장 터널에 들어가면, 자동세차장비가 물을 뿌리면서 브러쉬로 자동차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는 방식을 말함
- ② 고압분사 방식 : 자동차가 세차장 터널에 들어가면, 상하좌우에서 고압의 물줄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 등을 세차하는 방식을 말함

다.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잔존율	감가율
자동세차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품명	제조사명	모델명	형식1	형식2	기준가격
1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A-ONE	문형	브러쉬타입	37,000
2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HI-DZ II (HI-DOZONE2)	문형	브러쉬타입	48,000
3	국산	대형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PREMIER	문형	브러쉬타입	50,000
4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CASPA R	문형	브러쉬타입	54,000
5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DREAM	문형	브러쉬타입	52,000
6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EVERRUN	문형	브러쉬타입	45,000
7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HI DOZONE	문형	브러쉬타입	47,000
8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shine	문형	브러쉬타입	40,000
9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SMART	문형	브러쉬타입	52,000
10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DOU PLUS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62,000
11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CASPA D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70,000
12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DUET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68,000
13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DUO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60,000
14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DOU WIND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58,000
15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Best ONE W207SB	터널형	브러쉬타입	85,000
16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Best ONE W207SD	터널형	브러쉬타입	95,000
17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Best ONE W207DD	터널형	브러쉬타입	105,000
18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Best ONE W207DDF	터널형	브러쉬타입	115,000
19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Best Best(W217)	터널형	브러쉬타입	110,000
20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BEST ONE(W207)	터널형	브러쉬타입	105,000
21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CASPA	터널형	브러쉬타입	105,000
22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MEISTER	터널형	브러쉬타입	110,000
23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MEISTER	문형	브러쉬타입	47,0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품명	제조사명	모델명	형식1	형식2	기준가격
24	국산	자동세차기	동양기전(주)/디와이(주)	WORLDBEST	터널형	브러쉬타입	105,000
25	국산	자동세차기	동화프라임(주)	LASERWASH	문형	고압분사타입	160,000
26	국산	자동세차기	동화프라임(주)	PROTOUCH	문형	브러쉬타입	120,000
27	국산	자동세차기	세홍세차기	Elite(버스,트럭세차기)	문형	브러쉬타입	80,000
28	국산	자동세차기	세홍세차기	SOFTWASH C-9.83m	터널형	브러쉬타입	110,000
29	국산	자동세차기	세홍세차기	SOFTWASH C-14.49m	터널형	브러쉬타입	160,000
30	국산	자동세차기	세홍세차기	SOFTWASH C-20.71m	터널형	브러쉬타입	260,000
31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HOCHDRUCK WASH	문형	고압분사타입	71,000
32	국산	대형세차기	주대양위(주)	DWC2100	문형	브러쉬타입	53,000
33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5100-13m	터널형	브러쉬타입	100,000
34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5130-14m	터널형	브러쉬타입	115,000
35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5200-14m	터널형	브러쉬타입	113,000
36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5230-16m	터널형	브러쉬타입	130,000
37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7130-16m	터널형	브러쉬타입	130,000
38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7230-18m	터널형	브러쉬타입	150,000
39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8230-23m	터널형	브러쉬타입	160,000
40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8230W-25m	터널형	브러쉬타입	165,000
41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5130-16m	터널형	브러쉬타입	118,000
42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5130-18m	터널형	브러쉬타입	120,000
43	국산	자동세차기	주대양위(주)	CDWT-7130	터널형	브러쉬타입	133,000
44	국산	자동세차기	주소모홀딩스 엔테크놀러지	Rainbow-D	문형	브러쉬타입	60,000
45	국산	자동세차기	주소모홀딩스 엔테크놀러지	Rainbow-R	문형	브러쉬타입	40,000
46	국산	자동세차기	주소모홀딩스 엔테크놀러지	Rainbow-T	터널형	브러쉬타입	90,000
47	국산	자동세차기	주우리세차기	SONAGI	문형	브러쉬타입	52,0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품명	제조사명	모델명	형식1	형식2	기준가격
48	국산	자동세차기	쥬우리세차기	SONAGI-II	문형	브러쉬타입	42,000
49	국산	자동세차기	쥬우리세차기	NALGAE	터널식	브러쉬타입	120,000
50	국산	자동세차기	쥬우리세차기	SONAGI-BUS	문형식	브러쉬타입	68,000
51	국산	자동세차기	쥬우리세차기	SONAGO-TRUCK	터널식	고압분사타입	163,000
52	국산	특수세차기	쥬케이씨떠블유아이	Taunami	문형	고압분사타입	165,000
53	국산	특수세차기	쥬케이씨떠블유아이	Taunami-E	문형	고압분사타입	120,000
54	국산	대형세차기	쥬케이씨떠블유아이	Jumbo-350	문형	브러쉬타입	65,000
55	국산	대형세차기	쥬케이씨떠블유아이	Jumbo-390	문형	브러쉬타입	80,000
56	국산	특수세차기	쥬케이씨떠블유아이	경전철용 차체자동 세척기	문형	브러쉬타입	200,000
57	국산	특수세차기	쥬케이씨떠블유아이	Tunnel-4way	준터널형	고압분사타입	115,000
58	국산	세륜시설	쥬케이씨떠블유아이	Tyre Washer	터널형	고압분사타입	190,000
59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CLEO PLUS	문형	브러쉬타입	36,240
60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CLENS PLUS	문형	브러쉬타입	43,520
61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CLENS 500	문형	브러쉬타입	46,790
62	국산	대형세차기	한림기계㈜	POWER ACE	문형	브러쉬타입	52,900
63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START GATE V	문형	브러쉬타입	55,300
64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AQUA MAGIC	문형	브러쉬타입	47,000
65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EXPEED	문형	브러쉬타입	40,000
66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HAWK	문형	브러쉬타입	40,000
67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KLEENPIA	문형	브러쉬타입	40,000
68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PROWASH	문형	브러쉬타입	45,000
69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SPLASH	준터널형	고압분사타입	24,000
70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START GATE TRIPLE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60,000
71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	TRIMAX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62,6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품명	제조사명	모델명	형식1	형식2	기준가격
72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주)	MAGIC KINGDOM NEO 100D	터널형	브러쉬타입	100,000
73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주)	MAGIC KINGDOM NEO 100DF	터널형	브러쉬타입	110,000
74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주)	MAGIC KINGDOM NEO 200D	터널형	브러쉬타입	115,000
75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주)	MAGIC KINGDOM NEO 200DF	터널형	브러쉬타입	120,000
76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주)	MAGA GATE PLUS 1000R	터널형	브러쉬타입	86,500
77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주)	MAGA GATE PLUS 1000DR	터널형	브러쉬타입	97,470
78	국산	자동세차기	한림기계(주)	MAGA GATE PLUS 2000DR	터널형	브러쉬타입	120,980
79	외산	자동세차기	쥘야사이	MIRACON MAXIMA	문형	브러쉬타입	66,000
80	외산	자동세차기	쥘야사이	MIRACON MAXIMA II	문형	브러쉬타입	69,000
81	외산	자동세차기	쥘야사이	MIRACON MAXIMA PLUS	문형	브러쉬타입	69,000
82	외산	자동세차기	쥘야사이	MIRACON LETZT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96,000
83	외산	자동세차기	㈜한국로회/WASHTEC	CK30	문형	브러쉬타입	73,000
84	외산	자동세차기	㈜한국로회/WASHTEC	SC BRAVO	문형	브러쉬타입	83,000
85	외산	자동세차기	㈜한국로회/WASHTEC	SC2 PRO	문형	브러쉬타입	95,100
86	외산	대형세차기	㈜한국로회/WASHTEC	MAXIWASH VARIO	문형	브러쉬타입	99,000
87	외산	자동세차기	㈜한국로회/WASHTEC	JUNO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215,000
88	외산	자동세차기	㈜한국로회/WASHTEC	SL50-15.2m	터널형	브러쉬타입	192,500
89	외산	자동세차기	㈜한국로회/WASHTEC	SL75-20m	터널형	브러쉬타입	259,000
90	외산	자동세차기	㈜한국로회/WASHTEC	SL100-21.6m	터널형	브러쉬타입	278,100
91	외산	자동세차기	㈜한국로회/WASHTEC	SL100-26.4m	터널형	브러쉬타입	303,000
92	외산	자동세차기	㈜한국로회/WASHTEC	SL100-32.8m	터널형	브러쉬타입	382,500
93	외산	자동세차기	DAIFUKU	AR-5000	문형	브러쉬타입	55,000
94	외산	자동세차기	DAIFUKU	AS-5000	문형	브러쉬타입	65,000
95	외산	자동세차기	DAIFUKU	CMEN-4000	문형	브러쉬타입	50,0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품명	제조사명	모델명	형식1	형식2	기준가격
96	외산	자동세차기	DAIFUKU	CMSF-7000	문형	브러쉬타입	60,000
97	외산	자동세차기	DAIFUKU	CMVR-6000	문형	브러쉬타입	80,000
98	외산	자동세차기	DAIFUKU	DRIVE THRU	터널형	브러쉬타입	65,000
99	외산	자동세차기	DAIFUKU	TWIN THRU	터널형	브러쉬타입	75,000
100	외산	자동세차기	DAIFUKU	MAGIC THRU	터널형	브러쉬타입	90,000
101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AQUATUS(C166)	문형	고압분사타입	145,000
102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VARI SU(C163)	문형	브러쉬타입	95,000
103	외산	대형세차기	OTTO CHRIST	MAGNUM	문형	브러쉬타입	90,000
104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CENTUS(C164)	문형	브러쉬타입	80,000
105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GENIUS(C160)	문형	브러쉬타입	95,000
106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LEANUS(C16E)	문형	브러쉬타입	60,000
107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MAGNUM + JETSTREAM	문형	브러쉬타입	180,000
108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MAGNUM 5	문형	브러쉬타입	140,000
109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PRIMUS(C169)	문형	브러쉬타입	145,000
110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QUANTUS(C165)	문형	브러쉬타입	160,000
111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SIRIUS(C16)	문형	브러쉬타입	70,000
112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SOA	문형	브러쉬타입	380,000
113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TAURUS	문형	브러쉬타입	90,000
114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TAURUS + JETSTREAM	문형	브러쉬타입	180,000
115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VARI SU 1+1 (C161)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160,000
116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VARI SU TACT (C161)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160,000
117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EVOLUTION(상급)	터널	브러쉬타입	600,000
118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EVOLUTION(중급)	터널	브러쉬타입	450,000
119	외산	자동세차기	OTTO CHRIST	EVOLUTION(하급)	터널	브러쉬타입	300,00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품명	제조사명	모델명	형식1	형식2	기준가격
120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350SR	문형	브러쉬타입	35,000
121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360SR	문형	브러쉬타입	54,500
122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370SR	문형	브러쉬타입	65,500
123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380SR	문형	브러쉬타입	74,300
124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390SR	문형	브러쉬타입	99,500
125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C1000	터널형	브러쉬타입	89,000
126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C1200	터널형	브러쉬타입	99,500
127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C1500	터널형	브러쉬타입	129,900
128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C1700	터널형	브러쉬타입	149,500
129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C2000	터널형	브러쉬타입	179,500
130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C2200	터널형	브러쉬타입	199,500
131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405320	문형	브러쉬타입	62,500
132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405380	문형	브러쉬타입	65,200
133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505320	문형	브러쉬타입	69,500
134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505390	문형	브러쉬타입	73,900
135	국산	자동세차기	에스제이엠	SJM-505420	문형	브러쉬타입	79,500
136	국산	자동세차기	지에스엠	Challenge GSM2000	터널형	브러쉬타입	85,000
137	국산	자동세차기	지에스엠	Challenge GSM1200	문형	브러쉬타입	35,000
138	국산	자동세차기	지에스엠	Challenge GSM1500	문형	브러쉬타입	45,000
139	국산	자동세차기	지에스엠	Challenge GSMS1500	문형	브러쉬타입	65,000
140	국산	자동세차기	지에스엠	Challenge GSM1000	문형	고압분사타입	35,000
141	국산	자동세차기	지에스엠	Challenge GSMS1000	문형	고압분사타입	50,00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에 설치된 자동세차시설(동양기전(주)제조, CASPA, 터널형, 브러쉬타입)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9(자동세차시설)
 - 잔가율 : $1 - (0.09 \times 6\text{년}) = 0.46$
 - 기준가격 : 105,000,000원
 - 시가표준액 : $105,000,000\text{원} \times 0.46(\text{잔가율}) = 48,300,000\text{원}$

바. 자동세차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 1) “자동세차시설의 개수”란 세차시설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하며, 세차시설의 도장이나 세차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 2) 자동세차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기계장비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text{개수 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1) \times \text{개수비율}$$

《 자동세차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

- 자동세차시설(동양기전(주)제조, CASPA, 터널형, 브러쉬타입)에서 주요 부품의 2분의 1을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
 - 기준가격 : 105,000,000원
 - 개수비율 : $1/2 = 0.5$
 - 개수 시가표준액 : $105,000,000\text{원} \times 1(\text{잔가율}) \times 0.5 = 52,500,000\text{원}$

3) 개수 해당 자동세차시설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2년에 설치한 자동세차시설을 2018년에 개수한 경우 :
2012년 + $[0.20 \times \text{경과연수}(6\text{년})]$ = 2013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설치한 자동세차시설(동양기전(주)제조, CASPA터널형, 브러쉬타입)을 2018년에 일부 개수(주요부품의 2분의 1)한 경우의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9(자동세차시설)
 - 개수 전 잔가율 : $1 - (0.09 \times 6\text{년}) = 0.46$
 -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 : $2012\text{년} + (0.20 \times 6\text{년}) = 2013\text{년}$
 - 개수 후 잔가율 : $1 - (0.09 \times 5\text{년}) = 0.55$
 - 기준가격 : 105,000,000원
 - 시가표준액 : $105,000,000\text{원} \times 0.55(\text{잔가율}) = 57,750,000\text{원}$

VI. 부수시설물

《적용요령》

- 부수시설물 중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제6호 규정에 의한 개수 중 시설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20%를 적용한다.

1. 엘리베이터

1. 정 의

엘리베이터란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동력에 의해 아래위로 운반하도록 되어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종 류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 1) 교류기어드(AC-2) : 60m/분이하 중속으로서 저속브레이크로 제어되는 방식
- 2) 직류기어드(DC-GD) : 75~105m/분의 중속으로서 감속기에 의하여 제어 정지하는 방식
- 3) 직류기어레스(DC-GL) : 120m/분 이상의 고속용으로 고층빌딩의 승용 엘리베이터에 많이 사용되고 완전자동으로 제어되는 방식
- 4) 인버터 :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는 가변 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을 말하며, VVVF제어라고도 한다
 - 기어드(AC-GD) : 승강기의 진동소음이 크고, 대용량 고출력을 내는데 부적합하고 기어로 제어되는 방식
 - 기어레스(AC-GL) : 승강기의 진동소음이 적으며, 대용량 고출력을 내는데 적합하고 주파수로 제어되는 방식
 - MRL(Machine Roomless Elevator) :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교류형(AC)으로서 저속 및 중속 브레이크로 정지되는 제어방식이며 속도에 따라 분당 20m, 30m, 45m, 60m으로 나누어짐

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교류형(AC)으로서 분속 20m~60m가 있음(2000kg은 소·중형차용, 2500kg은 대형차용)

라. 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 300kg 이하인 것으로서,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마. 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승 객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화 물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자 동 차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덤 웨 이 터	18년	정 액 법	10%	0.05	
침 대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준 가격표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단위 : 천원)

형		교류기어드형(AC-2)			직류기어드형(DC-GD)		
		30m/분 6층기준	45m/분 6층기준	60m/분 6층기준	75m/분 6층기준	90m/분 10층기준	105m/분 15층기준
속도 및 층별							
기준 인원		10	10	10	10	10	10
엘리베이터	상	22,080	24,480	27,700	37,900	42,100	65,400
	하	21,480	23,520	25,100	20,900	30,500	37,900
1층 증감시		900	900	1,000	1,100	1,100	1,100
1인 증감시		216	216	279	372	590	590

(단위 : 천원)

형		직류기어레스형(DC-GL)							
		120m/분 15층기준	150m/분 15층기준	150m/분 25층기준	180m/분 25층기준	210m/분 25층기준	240m/분 25층기준	300m/분 26층기준	360m/분 25층기준
속도 및 층별									
기준 인원		15	15	18	18	30	30	30	30
엘리베이터	상	83,700	125,300	128,600	131,500	151,500	175,200	292,500	310,000
	하	67,100	75,400	101,800	103,700	121,100	-	-	-
1층 증감시		1,080	1,200	1,320	1,560	1,800	1,920	2,040	2,160
1인 증감시		725	750	776	803	883	910	936	963

(단위 : 천원)

형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D)				
		60m/분 6층기준	90m/분 6층기준	105m/분 6층기준	120m/분 15층기준	150m/분 25층기준
속도 및 층별						
기준 인원		11	11	11	15	18
엘리베이터		32,400	33,000	38,100	73,300	95,700
1층 증감시		1,310	1,470	1,470	1,840	1,840
1인 증감시		550	550	550	820	820

(단위 : 천원)

형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L)				
	180m/분 30층기준	210m/분 30층기준	240m/분 40층기준	300m/분 40층기준	360m/분 40층기준
기 준 인 원	18	20	20	20	20
엘 리 베 이 터	195,800	213,800	245,400	590,700	655,600
1 층 증 감 시	2,150	2,200	2,200	2,400	2,400
1 인 증 감 시	890	890	890	960	960

(단위 : 천원)

형	Machine Roomless Elevator			
	45m/분 6층기준	60m/분 6층기준	90m/분 6층기준	105m/분 6층기준
기 준 인 원	8	11	11	11
엘 리 베 이 터	31,440	35,000	37,300	46,000
1 층 증 감 시	1,310	1,310	1,470	1,470
1 인 증 감 시	550	550	550	550

※ 상.하의 구분

- 상 : 티센크루프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OTIS(주) 등의 국내 유명 메이커나 외국산 제품
- 하 : 기타 국내 조립품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단위 : 천원)

속 도	형	교 류 형 (AC)			
		20m/분	30m/분	45m/분	60m/분
3,000 kg 5층 기준	상	45,150	46,810	48,070	52,440
	하	37,630	39,010	40,060	43,710
1 층 증 감 시		1,950	1,950	1,950	1,950
500 kg 증 감 시		2,080	2,080	2,080	2,080

※ 상.하 구분

- 상(上) : 외국기술 제휴한 국내제품 및 외국상품
- 하(下) : 기타 제품

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단위 : 천원)

형 별		교 류 형 (AC)							
		2,000kg				2,500kg			
중량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속도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5 층	상	39,976	43,996	45,804	50,823	41,854	46,006	48,005	51,359
	하	33,320	36,663	38,168	42,359	34,875	38,340	40,016	42,804
1 층 증 감 시		1,646	1,646	1,646	1,646	1,778	1,778	1,778	1,778

※ 상·하 구분

- 상(上) : 외국기술 제휴 국내생산품 및 외국상품
- 하(下) : 기타 국내 조립품

라. 덤웨이터

(단위 : 천원)

형 별		교 류 형 (AC)				
		80kg	100kg	150kg	200kg	300kg
중량별		80kg	100kg	150kg	200kg	300kg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20m/분 엘리베이터		13,140	13,490	14,060	14,270	14,930
30m/분 엘리베이터		14,770	15,120	15,750	15,980	16,790
1 층 증 감 시		570	570	570	710	710

마. 침대용 엘리베이터

(단위 : 천원)

형 별		교 류 형 (AC)					
		20인		24인		30인	
기준인원		20인		24인		30인	
속도별		30m/분	60m/분	30m/분	60m/분	30m/분	60m/분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엘리베이터		42,026	48,935	43,662	51,146	46,925	54,883
1 층 증 감 시		1,869	1,869	2,111	2,111	2,404	2,404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text{층별증감가격} + \text{인원증감가격}]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text{층별증감가격} + \text{톤수별증감가격}]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다. 자동차용·침대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text{층별증감가격}]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12층 건물에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2013년도에 설치한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 : Machine Roomless Elevator 90m/분 15인승 상)
 - 적용방법 : (기준과표 + 층별증감액 + 인원증감액) × 잔가율
 - 90m/분 6층 기준가격 : 37,300,000원 A
 - 6층 증가기준가격 : 1,470,000원 × 6층 = 8,820,000원 B
 - 4인 증가기준가격 : 550,000원 × 4인 = 2,200,000원 C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 5년) = 0.75
 - 기준가격 합계 : A + B + C = 37,300,000원 + 8,820,000원 + 2,200,000원 = 48,320,000원
 - 시가표준액 : 48,320,000원 × 0.75(잔가율) = 36,240,000원

- 2014년도에 7층 건물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 : 3,000kg 45m/분 상)
 - 3,000kg 45m/분 5층 기준가격 : 48,070,000원
 - 2층 증가가격 : 1,950,000원×2층=3,900,000원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times 4\text{년}) = 0.80$
 - 기준가격 = 48,070,000원 + 3,900,000원 = 51,970,000원
 - 시가표준액 = 51,970,000원×0.80(잔가율) = 41,576,000원

- 2012년도에 5층 건물에 덤웨이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 : 100kg 20m/분)
 - 100kg, 20m/분 4층 기준가격 = 13,490,000원
 - 1층 증가기준가격 : 570,000원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times 6) = 0.7$
 - 기준가격 : 13,490,000원 + 570,000원 = 14,060,000원
 - 시가표준액 : 14,060,000원×0.7(잔가율) = 9,842,000원

- 2011년도에 8층 병원에 20인승 속도 30m/분의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20인승 30m/분 4층 기준가격 : 42,026,000원
 - 4층 증가기준가격 : 1,869,000원×4층=7,476,000원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times 7) = 0.65$
 - 기준가격 : 42,026,000원 + 7,476,000원 = 49,502,000원
 - 시가표준액 : 49,502,000원×0.65(잔가율) = 32,176,300원

2. 에스컬레이터

1. 정 의

에스컬레이터란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움직이도록 설치한 자동운반 시설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2. 종 류

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유효폭에 따라 1,200mm(1,200형)과 1,000mm(1,000형), 800mm(800형)의 3가지로 분류한다.

나. 수평보행기(AUTO WALKER 또는 MOVING WALKER)

수평보행기는 유효폭에 따라 1,200mm(1,200형)과 1,000mm(1,000형) 및 800mm(800형)의 3가지로 분류한다.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18년	정액법	10%	0.05	

4. 기준 가격 표

가. 에스컬레이터

(단위 : 천원)

폭 \ 층 고		3m 이하	4m 이하	5m 이하	7m 이하
		800mm 이하	상	53,600	58,400
	하	39,200	44,800	52,000	65,600
0.1m 당 증 감 시		328	360	464	680
1,000mm 이하	상	<u>55,600</u>	<u>60,400</u>	<u>66,400</u>	<u>83,200</u>
	하	<u>40,400</u>	<u>46,400</u>	<u>54,200</u>	<u>68,400</u>
0.1m 당 증 감 시		<u>340</u>	<u>364</u>	<u>484</u>	<u>720</u>
1,200mm 이하	상	57,600	62,400	68,800	86,400
	하	41,600	48,000	56,400	71,200
0.1m 당 증 감 시		352	368	504	760

※ 상.하의 구분

- 상 : 외국기술제휴 국내생산품 및 외국산제품
- 하 : 기타제품

나. 수평보행기(AUTO WALKER 또는 MOVING WALKER)

(단위 : 천원)

폭 \ 층 고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mm 이하	기준가격	70,600	73,400
0.1m당 증감시	344		480	720	1,520
1,000mm 이하	기준가격	72,000	75,000	86,000	118,500
	0.1m당 증감시	360	520	840	1,640
1,200mm 이하	기준가격	73,000	77,000	89,000	123,400
	0.1m당 증감시	368	590	896	1,680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고 1m 증감 시 기준가격 × 길이)]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3년도에 폭 1,200mm 에스컬레이터 층고 7m를 구입 설치하였을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 : 1,200mm, 상)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times 5\text{년}) = 0.75$
 - 기준가격 : 86,400,000원
 - 시가표준액 : $86,400,000\text{원} \times 0.75(\text{잔가율}) = 64,800,000\text{원}$

- 2014년도에 폭 1,000mm, 층고 7m의 수평보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times 4\text{년}) = 0.80$
 - 기준가격 : 118,500,000원
 - 시가표준액 : $118,500,000\text{원} \times 0.80(\text{잔가율}) = 94,800,000\text{원}$

3. 기 타 승 강 시 설

1. 정 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옥내에 설치한 시설

2. 종 류

가.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나. 수평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다.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라. 2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마. 다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바. 승강기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사.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아. 평면왕복식주차장치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자. 특수형식주차장치

제가호 내지 제아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18년	정액법	10%	0.05

4. 기준가격표(1대당 기준가격)

가.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분	기준대수	기준대수까지의 대당 기준가격	기준대수 초과 1대증가시마다 대당 기준가격
소형(16대이하)	10대	4,900	4,080
대형(16대초과)	40대	3,880	3,160

나.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2단 이하	3단	4단	5단	6단
기준가격	4,140	3,520	3,210	3,040	2,950

다. 2단식(1단식포함)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기준가격	2,290	2,620	3,100

라. 다단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3단	4단	5단 이상
기준가격	3,260	3,200	3,170

마. 승강기식 및 승강기슬라이드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기준가격	3,810	3,260

바. 평면왕복식

(단위 : 천원/대)

구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기준가격	4,810	4,250	3,860	3,690	3,600	3,550	3,530	3,510

사. 기타 주차장치(특수형식 주차장치포함)

위 종류 이외의 주차시설은 과세권자가 수시 조사 결정한 가격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1대당)} \times \text{대수}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도에 10대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직순환식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times 6\text{년}) = 0.70$
 - 기준가격(1대당) : 4,900,000원
 - 시가표준액 : $4,900,000\text{원} \times 10\text{대} \times 0.70(\text{잔가율}) = 34,300,000\text{원}$

- 2013년도에 평면왕복식의 8단 300대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times 5\text{년}) = 0.75$
 - 기준가격(1대당) : 3,530,000원
 - 시가표준액 : $3,530,000\text{원} \times 300\text{대} \times 0.75(\text{잔가율}) = 794,250,000\text{원}$

4. 휠 체 어 리 프 트

1. 정 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 또는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시설물로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2. 종 류

가.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으로 중량에 따라 225kg와 300kg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년 수	감 가 방 법	최종연도 잔가율	감 가 율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준가격표

가.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단위 : 천원/대)

구 분	5m 기준가격	5m 초과 1m증가시마다 기준가격
225kg, 9m/분	18,500	720
300kg, 9m/분	28,000	950

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단위 : 천원/대)

구 분	1m 기준가격	1m 초과 1m증가시마다 기준가격
340kg, 7m/분	19,500	1,960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1\text{m 증가 시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3년도에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225kg, 9m/분) 5m를 구입 설치한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times 5\text{년}) = 0.75$
 - 기준가격 : 18,500,000원
 - 시가표준액 : $18,500,000\text{원} \times 0.75(\text{잔가율}) = 13,875,000\text{원}$

- 2012년도에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340kg, 7m/분) 3m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times 6\text{년}) = 0.70$
 - 기준가격 : 19,500,000원
 - 1m 증가시 기준가격 : $1,960,000\text{원} \times 2\text{m} = 3,92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9,500,000\text{원} + 3,920,000\text{원}) \times 0.70(\text{잔가율}) = 16,394,000\text{원}$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1. 정 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급·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20kw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된다.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15년	정액법	10%	0.06	

3.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품명	규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동식	수동식	자동식	수동식
발전기	20kw	11,678	9,680	98	99
	50kw	14,743	12,640	116	80
	60kw	15,902	13,440	56	54
	85kw	17,310	14,800	75	53
	115kw	19,000	16,400	84	78
	200kw	27,000	23,040	120	123
	260kw	34,620	30,400	93	92
	300kw	38,347	34,080	120	107
	360kw	44,891	40,480	133	138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400kw	50,191	46,000	160	102
	450kw	56,155	51,120	130	123
	500kw	62,697	57,280	106	104
	600kw	73,464	67,680	197	193
	750kw	102,949	96,640	240	236
	1,000kw	175,000	155,520	230	199
	1,250kw	220,891	205,200	176	173
	1,500kw	264,869	248,400	299	285
	2,000kw	410,000	391,040	290	290

4.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1\text{kw당 증가시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자동식발전기(300kw)를 2015년도에 설치한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 - (0.06 \times 3) = 0.82$
 - 기준가격 : 38,347,000원
 - 시가표준액 : $38,347,000\text{원} \times 0.82(\text{잔가율}) = 31,444,540\text{원}$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 정 의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이란 난방용이나 욕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시설물로 보지 아니한다.

2. 종 류

가.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냉·난방 방식별로 직접증기, 직접온수, 온풍(온풍로식, 코일식), 냉·난방(중앙다트식, 유니트식), 전기온돌, 전기히트펌프, 가스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로 구분한다.

나.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공동탕(대중탕), 가족탕(독탕), 한증막, 증기탕, 사우나탕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4. 기준 가격 표

가.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단위 : 원)

냉 · 난 방 방 식 별	㎡ 당 기준가격
직 접 증 기 난 방 설 비	41,000
직 접 온 수 난 방 설 비	39,150
온 풍 난 방 설 비 (온 풍 로 식)	30,309
온 풍 난 방 설 비 (코 일 식)	28,501
냉 · 난 방 (중 앙 닥 트 식)	60,171
냉 · 난 방 (유 니 트 식)	58,000
전 기 온 들 난 방 설 비	37,900
전 기 히 트 펌 프	41,150
가 스 히 트 펌 프	66,950
지 열 히 트 펌 프	79,000
공 기 열 히 트 펌 프	43,050

○ 건물의 용도별 · 면적별 부과지수표

구분 용도별	건 물 의 시 설 연 면 적 (㎡)									
	330 이하	660 이하	990 이하	1,650 이하	2,640 이하	3,300 이하	6,600 이하	9,900 이하	16,500 이하	16,500 초과
사 무 실	1.30	1.20	1.10	1.10	0.97	0.95	0.95	0.95	0.90	0.85
은 행	1.35	1.30	1.30	1.10	1.00	1.00	0.97	0.97	0.95	0.90
병 원(종합)	1.40	1.37	1.37	1.30	1.25	1.25	1.20	1.20	1.00	0.95
병 원(단과)	1.30	1.27	1.25	1.20	1.10	1.10	1.00	1.00	0.97	0.95
백화점,점포	1.25	1.20	1.10	1.10	1.00	1.00	1.00	0.97	0.95	0.80
호 텔	1.40	1.37	1.30	1.30	1.25	1.20	1.20	1.10	1.00	0.95
여 관	1.30	1.25	1.20	1.10	1.05	1.00	1.00	1.00	1.00	1.00
다 방, 식 당	1.40	1.35	1.30	1.25	1.00	1.00	1.00	1.00	1.00	1.00
공 장 평 균	1.30	1.20	1.00	1.00	0.95	0.90	0.80	0.80	0.75	0.75
제 과 점	1.40	1.35	1.30	1.25	1.00	1.00	1.00	1.00	1.00	1.00
방 송 국	2.00	1.80	1.70	1.60	1.60	1.60	1.50	1.50	1.40	1.20
극 장	1.40	1.35	1.30	1.25	1.20	1.10	1.00	1.00	0.90	0.90
학 교	1.30	1.20	1.05	1.00	1.00	0.95	0.95	0.85	0.80	0.80
연 구 소	1.30	1.25	1.20	1.15	1.10	1.00	1.00	0.95	0.90	0.90
예 식 장	1.30	1.20	1.10	1.00	0.97	0.95	0.95	0.95	0.95	0.95
별 장	1.30	1.25	1.2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체 육 관	1.40	1.35	1.30	1.25	1.20	1.00	1.00	1.00	0.90	0.90
동(식)물온실	1.40	1.35	1.30	1.25	1.20	1.10	1.00	1.00	0.90	0.90

나. 옥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단위 : 천원)

방 식 별	m ² 당 기준가격	방 식 별	m ² 당 기준가격
공 동 탕	59	증 기 탕	67
한 증 막	58	사 우 나 탕	84
가 족 탕	74		

○ 면적별 부과지수표

연 면 적	165m ² 이하	330m ² 이하	660m ² 이하	990m ² 이하	990m ² 초과
지 수	1.20	1.00	0.95	0.90	0.80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times \text{부과지수}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3년도에 연면적 1,650m²의 사무실을 신축하였다. 당 사무실의 냉·난방은 중앙덕트식 냉·난방시설이다. 2018년도 냉·난방시설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 + (0.06 \times 5\text{년}) = 0.70$
 - 1,650m² 기준가격 : $60,171\text{원} \times 1,650\text{m}^2 = 99,282,150\text{원}$
 - 부과지수 적용 : $99,282,150\text{원} \times 1.10(\text{부과지수}) = 109,210,365\text{원}$
 - 시가표준액 : $109,210,365\text{원} \times 0.70(\text{잔가율}) = 76,447,255\text{원}$
- 연면적 660m²의 대중목욕탕이 2014년도에 신축되었고 660m² 중 330m²은 잡화상점으로 임대되고 실제 대중목욕탕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330m²이다. 2018년도 옥탕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 : 공동탕)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 - (0.06 \times 4\text{년}) = 0.76$
 - 대중탕 기준가격(m²당 59,000원) : $59,000\text{원} \times 330\text{m}^2 = 19,470,000\text{원}$
 - 부과지수 적용 : $19,470,000\text{원} \times 1.00(\text{부과지수}) = 19,470,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9,470,000\text{원} \times 0.76(\text{잔가율}) = 14,797,200\text{원}$

7. 7,560/kcal 급 이상의 에어컨

1. 정 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습도 등을 조절하는 7,560kcal (2.5R/T) 이상의 에어컨으로서 중앙조절식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한다.

2. 종 류

- 1) 중앙집중식 에어컨에 한하며 1실단위의 에어컨은 제외한다.
- 2) 제품의 구분 : 공냉식, 수냉식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15년	정액법	10%	0.06	

4.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비고
	공 냉 식	수 냉 식	
3R/T 9,072kcal (1R/T 증가시)	2,900(530)	3,035(670)	
5R/T 15,120kcal (1R/T 증가시)	3,960(416)	4,380(342)	
10R/T 30,240kcal (1R/T 증가시)	6,050(416)	6,100(322)	

(단위 : 천원)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비 고
	공 냉 식	수 냉 식	
15R/T 45,360kcal (1R/T 증가시)	8,130(250)	7,710(598)	
20R/T 60,480kcal (1R/T 증가시)	9,390(835)	10,720(548)	
40R/T 120,960kcal (1R/T 증가시)	26,120(242)	21,730(191)	
50R/T 151,200kcal (1R/T 증가시)	28,550(148)	23,650(230)	
60R/T 181,440kcal (1R/T 증가시)	30,050(612)	25,960(360)	
100R/T 302,400kcal (1R/T 증가시)	54,600(258)	40,400(309)	
120R/T 362,880kcal (1R/T 증가시)	59,750(718)	46,600(203)	
150R/T 453,600kcal (1R/T 증가시)	81,350(538)	52,720(178)	
200R/T 604,800kcal (1R/T 증가시)	108,300(554)	61,670(629)	
270R/T 816,480kcal (1R/T 증가시)	-	105,900(234)	
320R/T 967,680kcal (1R/T 증가시)	-	117,670(280)	
360R/T 1,088,640kcal (1R/T 증가시)	-	128,920(275)	
400R/T 1,209,600kcal (1R/T 증가시)	-	140,000(277)	
450R/T 1,360,800kcal (1R/T 증가시)	-	153,900(210)	
500R/T 1,512,000kcal (1R/T 증가시)	-	164,420(261)	
700R/T 2,116,800kcal (1R/T 증가시)	-	216,810(266)	
800R/T 2,419,200kcal (1R/T 증가시)	-	243,520(233)	
900R/T 2,721,600kcal (1R/T 증가시)	-	266,900(218)	
1,000R/T 3,024,000kcal (1R/T 증가시)	-	288,770(272)	
1,250R/T 3,780,000kcal (1R/T 증가시)	-	357,070(224)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1\text{R/T 증가시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text{※ 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5년에 160R/T 483,840kcal의 공냉식 에어컨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8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 - (0.06 \times 3\text{년}) = 0.82$
 - 150R/T 453,600kcal 기준가격 : 81,350,000원
 - 10R/T 30,240kcal 증가시 기준가격 : 5,380,000원
 - 기준가격 합계 : 81,350,000원 + 5,380,000원 = 86,730,000원
 - 시가표준액 : 86,730,000원 \times 0.82(잔가율) = 71,118,600원

8. 부 착 된 금 고

1. 정 의

부착된 금고란 건물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으로서, 주로 건물 내부에 설치하며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종 류

- 1) 편개형 : 금고문이 1짝인 경우
- 2) 양개형 : 금고문이 2짝인 경우
- 3) 크랭크형 : 금고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음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연 수	감 가 방 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단위 : 천원)

규 격		편개형 후면 철판부	편개형 후면 유리부	양개형 후면 철판부	양개형 후면 유리부	크랭크형 후면 철판부	크랭크형 후면 유리부	크랭크형 스테인 레스	스텐 전동식 슬라이딩	스텐 편개형
750 千cm ²	기준과표	3,448	3,848	3,034	3,434	3,689	4,089	5,794	5,900	5,200
	10千cm ² 증감과표	4.6	4.6	4.1	4.1	4.9	4.9	7.0		
875 千cm ² 이상	기준과표	4,022	4,422	3,539	3,939	4,303	4,703	6,640	6,875	5,994
	10千cm ² 증가과표	4.6	4.6	3.6	3.6	4.9	4.9	7.0		
1,000 千cm ² 이상	기준과표	4,597	4,997	4,045	4,445	4,918	5,318	7,486	7,870	6,766
	10千cm ² 증가과표	4.6	4.6	4.0	4.7	5.0	5.0	7.0		
1,085 千cm ² 이상	기준과표	4,987	5,387	4,388	4,788	5,336	5,736	8,062	8,540	7,250
	10千cm ² 증가과표	4.6	4.6	4.7	4.0	4.9	4.9	7.0		
1,170 千cm ² 이상	기준과표	5,378	5,778	4,732	5,132	5,754	6,154	8,637	9,200	7,720
	10千cm ² 증가과표	4.6	4.6	4.1	4.1	4.9	4.9	7.0		

5. 조사 방법

- 가. 금고문의 폭, 넓이, 두께를 조사하여 규격을 결정하고 문이 1짝일 경우 편개형, 2짝일 경우 양개형으로 구분
- 나. 문이 열렸을 때 문뒷면이 유리가 부착되어 있으면 유리부, 철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철판부
- 다. 크랭크형은 전부 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고 크랭크형 스테인레스는 금고 전체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임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기준가격} + \text{증감시 기준가격}] \times \text{잔가율}$$

$$\ast \text{잔가율} = 1 - (\text{감가율} \times \text{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3년도에 설치된 금고문의 폭 1,800mm, 높이 2,100mm, 두께 300mm의 스텐전동식슬라이딩 금고의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잔가율 : $1 - (0.05 \times 5) = 0.75$
 - 규 격 : $1,800 \times 2,100 \times 300 = 1,134 \text{천 cm}^3$
 - 1,085천 cm^3 기준가격 = 8,540,000원
 - 시가표준액 : $8,540,000 \text{원} \times 0.75 (\text{잔가율}) = 6,405,000 \text{원}$

9. 교 환 시 설

1. 정 의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로서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

2. 종 류

자동식 교환기, 간이교환설비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분 종류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자 동 식 교 환 기	10년	정 액 법	10%	0.09	
간 이 교 환 설 비	10년	"	10%	0.09	

4. 기 준 가 격 표

가. 자동식 교환기

(단위 : 천원)

규격별	기준가격	사선1회선 증감시 기준가격		비 고
		1회선감소시	1회선증가시	
50회선	7,672	153	143	

나. 간이교환설비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 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교환설비(키폰, 비즈니스폰, 버튼 전화기)를 말한다.

(단위 : 천원)

형태별	구분 품명	규격(용량)		기준가격	
		국 선	사 선	주 장 치	사선1회선당 (사용량)
신 형	DCS-828	0	8	432	-
	IPLDK-50	4	12	635	-
	IPLDK-100	0	0	1,012	-
	IPLDK-300	0	0	1,452	-
	IPLDK-600	0	0	2,792	-
	LDK-50	4	12	520	-
	LDK-50	8	12	520	-
	LDK-100	0	0	616	-
	LDK-300	0	0	860	-
	LDK-828	4	8	552	-
	SKP 308	3	8	360	-
	SKP 616	6	16	448	-
	SKP 816	8	16	424	-
	SKP 828	4	12	544	-
	SKP 1640	16	40	2,160	-
	SKP 48H-M	4	10	592	-
	SKP 60H-M	4	13	616	-
	SKP 820VMA	2(ISDN)	20	1,040	-
	SKP - 180	0	0	1,200	-
	SKP - 408	4	8	400	-
	HKP 206	2	6	129	15.0
	OfficeServ 7400	0	0	3,136	37.0
	OfficeServ 7200	0	0	1,120	36.0
OfficeServ 7070	4	12	840	22.0	
OfficeServ 7030	0	2	392	20.0	

(단위 : 천원)

형태별	구 분 품명	규격(용량)		기준가격	
		국 선	사 선	주 장 치	사선1회선당 (사용량)
신 형	IDCS 500P	0	0	1,080	45.0
	DCS-816i	4	4	588	26.0
	DCS-828	0	12	701	36.0
	IPLDK-828E	4	12	665	-
	IPLDK-60	3	8	600	-
	HTKP-616	4	8	584	17.0
	HTKP-820V	4	10	356	35.0
	HTKP-824	4	12	492	29.0
	HTKP-48HD	4	16	780	32.4
	HTKP-66D	6	18	920	36.0
	HTA-500	-	-	1,040	18.0
	IPECS-100	-	-	1,292	-
	IPECS-300	-	-	3,540	-
	IPECS-600	-	-	4,740	-
	IPECS-MG10	-	-	1,180	-
	IPECS-MG30	-	-	2,960	-

※ 주장치(Control Box)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경우에 한함.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자동차 교환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50회선) + (1회선증감시 기준가격 × 회선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나. 간이교환설비

시가표준액 = {주장치 기준가격 + (사선1회선당(사용량)기준가격 × 회선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16년도 설치한 HKP 206형 교환설비의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단, 규격은 국선 2, 사선 8임)

- 감가율 : 0.09(간이교환설비)
- 잔가율 : $1 - (0.09 \times 2\text{년}) = 0.82$
- 주장치 기준가격 : 129,000원 A
- 사선증가시 기준가격 : $15,000\text{원} \times 2\text{회선} = 30,000\text{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129,000 + 30,000 = 159,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59,000\text{원} \times 0.82(\text{잔가율}) = 130,380\text{원}$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1. 정 의

구내 변전·배전시설이란 건물구내(울타리 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기를 받는 지점(수전지점)으로부터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종 류

가. 구내 수전시설

한국전력공사나 구내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받은 후에 전압을 변경하여 구내로 배전하는 시설로서 구내에 설치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6호의 수전시설을 말한다. 다만, 수전용량(계약용량) 100kva 이상 수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변압기

구내의 수전시설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한다. 다만, 변압기만을 교체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배전시설 일체를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가. 구내 수전시설”을 적용한다.

3. 조 사 방 법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요금 납입영수증에 기재된 계약용량을 조사 확인한다.

4.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고
구 내 수 전 시 설	15년	정액법	10%	0.06	
변 압 기	15년	”	10%	0.06	

5. 기준 가격 표

가. 구내 수전시설

(단위 : 천원)

품 목 별	시 설 별	기준가격	비고
구내수전시설 공통적용	500kw이하 (100kva 기준) 1 kva 증가시 마다	20,867 28	
	500kw초과 (500kva 기준) 1 kva 초과마다	37,989 18	

※ W=전압(V)×전류(A)

나. 변압기

(단위 : 천원)

품 목	규 격 별	기준가격		1kva증가시 기준가격		비고
		단 상	삼 상	단 상	삼 상	
변 압 기	50 kva	3,364	6,121	26	46	
	100 kva	4,622	8,401	12	12	
	150 kva	5,204	8,984	7	18	
	200 kva	5,573	9,895	4	24	
	250 kva	5,787	11,055	11	14	
	300 kva	6,309	11,776	7	27	
	350 kva	6,685	13,132	7	4	
	400 kva	7,062	13,359	17	18	
	500 kva	8,757	15,181	19	24	
	600 kva	10,669	17,517	12	13	
	750 kva	12,395	19,454	14	16	
	1,000 kva	15,799	23,555	7	15	
	1,500 kva	19,622	31,105	10	15	
	2,000 kva	24,329	38,695	9	15	
	2,500 kva	28,451	45,992	9	17	
	3,000 kva	32,558	54,470	10	19	
4,000 kva	42,540	73,842	7	11		
5,000 kva	49,884	84,720	9	36		
6,000 kva	58,439	120,844	11	19		
7,500 kva	-	150,301	-	19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구내 수전시설

시가표준액 = {시설별 기준가격 + (1kva 증가시 기준가격 × 증가수량)}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나. 변압기

시가표준액 = {규격별 기준가격 + (1kva 증가시 기준가격 × 증가수량)} × 잔가율

« 산출예시 »

- 2012년도 시설한 변압기의 경우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단, 규격은 230kva, 삼상임)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 - (0.06 \times 6\text{년}) = 0.64$
 - 200 kva(삼상)기준가격 = 9,895,000원 A
 - 1 kva당 증가시 기준가격 24,000원 × 30kva = 72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 + B = 9,895,000\text{원} + 720,000\text{원} = 10,615,000\text{원}$
 - 시가표준액 : $10,615,000\text{원} \times 0.64(\text{잔가율}) = 6,793,600\text{원}$

Ⅶ. 입 목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수량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1. 정 의

- 1) 임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을 말한다.
- 2) 지상의 과수란 지상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과수목을 말한다.
- 3) 임목이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 4) 죽목이란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죽목을 말한다.

2. 용 어 해 설

가. 재 적(材 積) : 수목의 부피

나. 흉고(胸高)직경 : 임목 상태에서 120cm(사람가슴까지의 높이)높이 부분의 나무직경

다. 수 고(樹 高) : 나무의 지원부(地元部)에서 초두부(初頭部)까지 전체높이

라. 지원부(地元部) : 나무밑둥과 토지가 서로 맞닿는 부분

마. 초두부(梢頭部) : 나무위의 끝부분

바. 재 장(材 長) : 원목의 길이를 말하며, 원목이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일정한 크기(길이)로 절단해놓은 상태에 있는 나무를 말함

사. 간재적(幹材積) : 나무 한본(1本)의 전체부피를 말함.

아.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山林經營技術者] 수행하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자. 산림경영계획서 : 모든 산림사업(조림, 육림, 벌채 등)에 대한 계획을 [營林計劃書] 연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계획서

차. 임지경계(林地境界) : 산(山)의 매필지마다의 경계를 말함

카. 시설차도(既設車道) :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로서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함

타. 조수입(粗收入) : 주산물 평가액(생산량×농가평균 수취가격)과 주산물 생산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의 평가액을 합계한 총액

파. 경영비(經營費) : 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투자한 일체의 비용

하. 경영비율(經營費率) : $1 - (\text{소득} / \text{조수입} \times 100)$

3. 종 류

가.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나. 유실수(총16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유자, 참다래, 자두, 매실, 호두,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밤

4. 시가 조사방법

- 1) 과수, 임목, 죽목을 수종, 수령, 지역별로 세분하고 구분하여 조사한다.
- 2) 산림목은 m³당 가격을 시장가역산법에 의한다.
- 3) 유실수는 10a당 과수별 작목에 따른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한다.
- 4) 유실수의 수종별 총경영비, 표준재식주수를 조사한다.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산림목

가. 재적(m³)이 나타난 경우

$$\text{시가표준액} = \text{재적} \times \text{m}^3 \text{당 단가}$$

- 1) 재적 : 산림경영기술자가 직접조사, 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
- 2) m³당 단가 : 시장가역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 취득물건 : 수종명(소나무), 재적(125.2m³), 소나무 m³당 단가(59,520원)
- 취득일시 : 2018.05.06
- 시가표준액 : 125.2m³ × 59,520원 = 7,451,904원

나. 재적(m³)을 직접 조사할 경우

$$\text{시가표준액} = \text{간재적} \times \text{분수} \times \text{m}^3 \text{당 단가}$$

- 1) 총재적 : 간재적 × 분수
- 2) 간재적 : 흉고직경, 수고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림청 발행 재적표에서 찾음

〈산출예시〉

- 취득물건 : 수종명(소나무), 간재적(0.1242), 소나무 m³당 단가(59,520원), 분수(20분)
- 취득일시 : 2018.05.06
- 시가표준액 : 0.1242 × 20분 × 59,520원 = 147,847원

■ 유실수

$$\text{시가표준액} = \text{본당 기준가격} \times \text{분수}$$

〈산출예시〉

- 취득물건 : 수종명(사과나무 15년생), 사과나무 본당 기준가격(83,080원), 분수(10분)
- 취득일시 : 2018.05.06
- 시가표준액 : 83,080원 × 10분 = 830,800원

6.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가. 산림목

《재적(m³)이 나타나는 경우》

- 1)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산정하여 제출한 자료를 과표에 적용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가 제출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으로 한다.
- 2) 그러나, 산림경영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재적을 직접조사 하는 경우》

- 1)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하여 산림청 발행 입목간재적표에서 입목재적을 구한다.
 - 흉고직경은 지상 120cm부위에서 2cm단위로 측정하고 수고는 m단위로 조사하며 m이하는 절사한다.
 - 재적 조건표에서 수종별, 지역별 구분에 의하여 간재적을 구한다.
 - 재적 조건표에 수종별, 지역별, 구분이 명시되지 않은 입목은 유사수종 또는 유사지역을 적용한다.
- 2) m³당 단가는 종류에 따라 조사 결정한 m³당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산림목 m³당 단가표

(단위 : 원)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적용가격	59,520	28,560	30,400	12,160	7,760

나. 유실수

1) 유형수

투하비용의 원리금의 합계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가격 결정

2)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평가

3) 위 기준에 따라 수령별 가격을 산출한 후 현실화율(72%)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 유실수 중 일부 수종은 소득자료 통계 확인 등이 어려워 전년대비 2017.6월 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유실수 본당 단가표

(단위 : 원)

수령별 수종별	5년생 까 지	10년생 까 지	15년생 까 지	20년생 까 지	30년생 까 지	30년생 이 상
사과	21,330	58,530	83,080	83,730	64,580	30,600
배	27,210	55,080	89,130	84,600	63,210	35,490
복숭아	37,530	73,440	63,430	20,660	7,700	-
포도	23,470	36,640	18,570	5,960	-	-
감귤	5,760	9,930	14,320	18,070	14,250	6,330
단감	9,070	26,710	43,480	46,800	30,960	8,060
유자	5,110	38,730	46,650	31,100	13,240	-
참다래	24,620	58,030	75,670	73,080	57,670	17,200
자두	17,920	40,090	52,050	45,360	18,790	6,550
매실	12,810	31,240	37,150	30,160	10,440	4,320
호두	6,400	9,360	12,240	22,820	27,790	27,720
앵두	5,320	9,360	12,960	22,450	36,640	22,460
대추	4,240	5,540	9,280	12,880	9,860	7,700
살구	2,590	5,040	7,560	9,280	11,440	8,420
모과	930	2,080	3,600	6,480	6,550	5,610
밤	2,590	4,320	7,200	9,860	9,570	7,700

* 복숭아는 25년생까지

《첨부자료》

■ 산림목

《시장가역산법》

1. 시장가역산법 산정공식

시장가역산법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목가격에서 목재생산비용, 정상적인 기업이윤을 차감하여 산원에서의 입목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여,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x = f \times \left(\frac{a}{(1 + mp + r)} - b \right)$$

x : 단위재적당 입목가격(원/m³)

f : 조재율(소수)

a :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원/m³)

m : 자본회수기간(개월수)

p : 월이율(소수)

r : 기업이윤

b : 단위재적당 생산비 [벌출비, 운반비, 기타비용(원/m³)]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결정

(1) 조재율(f)

조재율(이용률)이란 입목을 벌채, 반출, 가공하여 생산되는 목재재적의 입목 간 재적에 대한 비율임.

[표1] 수종별 조재율

(단위 : %)

수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조재율	85	79	88	83	75

* 국유림관리소의 평균자료, 산림청 예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2015)

(2)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a)

한국임업진흥원 통계조사,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가격유통정보 등을 참작하여 2등급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단위:원/m³)

수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가격	195,200	141,000	142,700	121,000	114,700

(3) 자본회수기간(m)

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은 산물수량 작업방법 및 반출량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3월을 적용함.

매각산물의 수량	자본회수기간	
	용재기준	신탄재기준
300m ³ 미만	0.5월	1월
300m ³ ~ 500m ³	1월	2월
500m ³ ~ 1,000m ³	2월	3월
1,000m ³ ~ 2,000m ³	3월	4월
2,000m ³ ~ 3,000m ³	4월	5월
3,000m ³ ~ 5,000m ³	5월	6월
5,000m ³ 이상	5월	6월

(4) 월 이율(p)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를 기준하여 연3.40% 적용함.

이율	월	적용
3.40%	12	0.00283

(5) 기업이윤(r)

순이익, 결손률, 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15% 적용함.

(6) 단위재적당 생산비(b)

가. 별목조제비

(가) 인건비

공사부분 시중노임단가 중 별목부임(별목조제작업) 및 보통인부임(가지치기)을 적용하였음.

별목부임	보통인부임	합계
144,976/일	102,628/일	247,604/일

*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한국물가협회)

(나) 기계톱경비

기계경비(감가상각비+유지비+이자)는 기계톱가격에 보정률(0.0084)을 적용하여 산정함.

기계톱가격	보정률	적용가격
840,000	0.0084	7,056/일

* 산림청 예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2015), 물가정보(2017)

(다) 유류대

유류대는 휘발유와 오일의 ℓ 당 가격에 각각의 하루 사용량인 5.6ℓ와 2.3ℓ를 곱하여 산정함.

휘발유		오일		합계
용량(ℓ)/일	원/ℓ	용량(ℓ)/일	원/ℓ	
5.6	1,447	2.3	3,800	16,843/일

* [물가정보\(2017\)](#)

(라) 별목조재비용 산정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인건비	247,604	247,604	247,604	247,604	247,604
기계 톱경비	7,056	7,056	7,056	7,056	7,056
유류대	16,843	16,843	16,843	16,843	16,843
합계	271,503	271,503	271,503	271,503	271,503
작업물량 (m³/일)	13.57	15.45	13.13	10.33	12.58
별목조재비 (원/m³)	20,008	17,573	20,678	26,283	21,582

나. 산지집재

산지집재비는 인건비(보통인부임)에서 수종별 산지집재작업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함.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보통인부임 (원/인·일)	102,628	102,628	102,628	102,628	102,628
산지집재 작업물량 (m³/인·일)	4.3	4.6	4.6	4.6	4.3
산지집재비 (원/m³)	23,867	22,310	22,310	22,310	23,867

다. 운반비

- 운반비는 크게 중토장에서 제재소 및 펄프공장까지의 대운반비와 토장에서 중토장까지의 운반비인 소운반비로 구분하여 산정함.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사 발표한 2017년 원목 시장가격동향 여름호를 기준하여 적용함.
- 상차비는 운반거리에 관계없이 대운반비는 5,000원/m³, 소운반비는 4,500원/m³으로 나타남.
- 침엽수와 활엽수는 함수율 등의 차이로 적재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하여 운반비를 산정함.

침엽수 1m³ = 0.8톤, 활엽수 1m³ = 1톤

(가) 소운반비

침엽수

(단위 : 원/㎥)

운반거리	상차비(원)	운반비	계
500m 이내	4,500	9,000	13,500
500 ~ 1000m		13,000	17,500
1000 ~ 2000m		17,000	21,500

활엽수

(단위 : 원/㎥)

운반거리	상차비(원)	운반비	계
500m 이내	4,500	11,300	15,800
500 ~ 1000m		15,500	20,000
1000 ~ 2000m		20,500	25,000

(나) 대운반비

침엽수

(단위 : 원/㎥)

구 분		5 톤			25 톤		
운반거리	상차비	적재량	물류비		적재량	물류비	
			운반비	계		운반비	계
50km이내	5,000	5톤	10,500	15,500	25톤	10,200	15,200
50~100km			11,500	16,500		11,200	16,200
100~150km			12,000	17,000		11,700	16,700
150~200km			13,500	18,500		13,300	18,300
200~250km			14,000	19,000		13,700	18,700
250~300km			15,500	20,500		15,200	20,200
300km 이상			16,000	21,000		15,700	20,700

□ 활엽수

(단위 : 원/m³)

구 분		5 톤			25 톤		
운반거리	상차비	적재량	물류비		적재량	물류비	
			운반비	계		운반비	계
50km이내	5,000	5톤	13,000	18,000	25톤	12,000	17,000
50~100km			14,500	19,500		13,500	18,500
100~150km			15,500	20,500		14,700	19,700
150~200km			17,000	22,000		16,500	21,500
200~250km			18,500	23,500		17,700	22,700
250~300km			21,000	26,000		20,200	25,200
300km 이상			22,000	27,000		21,700	26,700

라.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벌목조재비, 산지집재비, 운반비 합계의 10%를 적용함.

마. 단위제적당 생산비

(단위 : 원/m³)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벌 출 비	벌목조재비	20,008	17,573	20,678	26,283	21,582
	산지집재비	23,867	22,310	22,310	22,310	23,867
	소계	43,875	39,883	42,988	48,593	45,449
운 반 비	소운반비	13,500	13,500	13,500	13,500	15,800
	대운반비	16,200	16,200	16,200	16,200	17,000
	소계	29,700	29,700	29,700	29,700	32,800
소 계		73,575	69,583	72,688	78,293	78,249
기타비용(10%)		7,357	6,958	7,268	7,829	7,824
합 계		80,932	76,541	79,956	86,122	86,073

(7) 시가표준액

위의 각 항목별 수치를 입목가격 산정공식에 대입하여 수종별 시가표준액을 계산함

■ 유실수

1. 산정방식

가. 유행수

투하비용의 원리금의 합계를 기초로,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고, 성과기의 현금흐름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 결정

나.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산정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산정

가. 수확량 및 판매량

2007년 [농협 재해보험팀 용역보고서](#),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 (2015) 등을 기준하여 수령별 수확량을 추정하고 10a당 수확량에 상품화율을 적용하여 판매량 결정.

(kg/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1,126	1,529	1,100	1,100	475	436
10년생	2,888	2,786	1,964	1,325	2,225	1,582
15년생	3,743	3,672	1,914	1,100	3,050	2,202
20년생	4,027	3,790	1,436	950	3,563	2,398
30년생	3,626	3,438	1,188	-	3,400	2,062
40년생	2,833	2,685	-	-	2,675	1,641

나. 조수입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기준으로 연생별 조수입을 산정함.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1,474,993	2,035,168	1,872,688	4,558,409	381,293	530,719
10년생	3,783,107	3,708,291	4,286,666	5,490,811	1,786,059	1,925,681
15년생	4,903,106	4,887,597	4,177,535	4,558,409	2,448,305	2,680,373
20년생	5,275,129	5,044,660	3,134,243	3,936,808	2,860,102	2,918,953
30년생	4,749,843	4,576,133	2,592,953	-	2,729,258	2,509,959
40년생	3,711,061	3,573,856	-	-	2,147,284	1,997,499

다. 생산비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상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에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자가임차료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1,708,587	2,503,913	1,968,950	3,381,149	1,021,686	1,180,690
10년생	3,059,382	3,449,068	3,541,098	4,471,160	1,628,886	2,012,021
15년생	3,598,220	4,107,290	3,617,424	4,132,250	2,200,067	2,432,680
20년생	3,893,142	4,338,987	2,769,095	3,340,871	2,407,507	2,635,294
30년생	3,756,566	4,163,296	2,599,841	-	2,363,360	2,493,024
40년생	3,067,057	3,175,635	-	-	1,826,066	2,060,399

라. 순수익

조수입에서 총경영비를 차감한 장래 기대 순수익을 산정함.(하기 각 연생별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이를 적산하고 다시 재식 주수로 나누어 특정 연생별 주당가격을 산정)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233,594	-468,746	-96,262	1,177,261	-640,393	-649,971
10년생	723,725	259,223	745,569	1,019,651	157,172	-86,339
15년생	1,304,886	780,307	560,111	426,159	248,239	247,693
20년생	1,381,987	705,674	365,148	399,099	452,595	283,659
30년생	993,277	412,837	-	-	365,898	16,935
40년생	644,004	398,221	-	-	321,218	-62,900

마. 가격결정

유통수는 상기의 투하비용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성과기 이후는 상기 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산정된 10a당 수익가격을 재식주수로 나누어 주당 가격을 산정함(아래 표 참조). 최종 가격은 여기서 다시 5년 단위로 평균하여 단일 단가를 산정하고 단수정리하여 기재하게 됨.

(원/주)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51,239	52,427	76,987	51,843	11,037	20,000
10년생	100,955	102,878	108,708	41,515	15,590	45,843
15년생	120,116	127,537	72,138	15,862	23,094	63,407
20년생	111,363	110,591	20,002	3,991	24,903	65,000
30년생	68,903	70,384	-	-	12,875	43,000
40년생	9,908	12,067	-	-	2,894	11,200

VIII. 어업권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8. 어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1.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어업권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을 말한다.

2. 종 류

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 1)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 등)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2) 해조류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3) 패류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4) 어류 등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5) 복합 양식어업 : 2)~4) 및 6)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6) 마을 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 7) 협동 양식어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2)~5)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 8) 외해 양식어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 1) 양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2)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 3) 공동 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적용요령

1)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본 기준가격 등은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다.

〈 산출예시 〉

- 취득물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어업의 종류 : 패류 수하식
 - 양식방법 : 연승식
 - 면적 : 10ha
 - 면허취득일 : 2016. 3. 1.
- 취득일시 : 2018. 5. 1.
- 취득(신고)가격 : 300,000,000원
- 기준가격 : 35,000,000원/ha
- 당해 어장의 시가표준액 산정 : 35,000,000원 × 10ha = 350,000,000원(10ha 기준)

2)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본 기준가격이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 어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begin{aligned} \text{조사가격} &= \text{인근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text{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text{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 \text{결정가격} &= \text{조사가격} \times 0.7 \end{aligned}$$

○ 인근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시장·군수가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어장의 지역별·종별·양식방법별 형성가격을 조사한 가격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거 시·군·구에서 조사한 동종어장의 1ha당 어구값의 시장(市場)가격
- ha당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시장조사 어구값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동종어장의 시장조사 시설별 어구값의 합계액	×	$\frac{(\text{면허기간} + \text{연장기간}) - \text{경과연수}}{\text{면허기간} + \text{연장기간}}$
-------------	---	-------------------------	---	---

- 어구시설이 없는 어장의 경우는 어구설치비 제외

○ 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한 동종어장의 1ha당 표준종패 및 치어대의 시장조사가격
- 1ha당 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양식물 종패 및 치어대
- 양식물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음

어업권면허 유효기간

구 분	어업의 종류	유효기간	비 고
수산 어업	정 치 망 어 업	10년	
	양 식 어 업	"	
	마 을 어 업	"	
내수면 어업	양 식 어 업	10년	
	정 치 망 어 업	5년	
	공 동 어 업	"	

〈 산출예시 〉

- 취득물건
 - 어장명 : 해조류양식(미역) ·면적 : 10ha ·면허취득일 : 2006. 5. 1.
 - 취득일시 : 2018. 5. 25. ·취득(신고)가격 : 180,000,000원
-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조사 결정액 : 300,000,000원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당해어장의 시설어구비 시장조사액 : 30,000,000원(10ha)
 - 어구설치비 : 30,000,000원 × $\frac{(10년 + 10년) - 12년}{10년 + 10년} = 12,000,000원$
- 당해어장의 종패대 시장조사액 : 8,000,000원(10ha)
- 조사가격
 - (매매실례가격) (어구설치비) (종패 및 치어대)
 - 300,000,000원 - 12,000,000원 - 8,000,000원 = 280,000,000원(10ha 기준)
- 당해 어장의 결정가격
 - 280,000,000원/10ha(조사가격) × 0.7 = 196,000,000원/10ha
 - ※ 결정과표 산출액의 1,000원미만 버림

4.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시군구명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참고) 양식물의 예	단위	기준가격
	종별	유형별				
여수시	복합	수하식	연승식	(전복, 다시마 등)	1ha	7,700
	복합	수하식	연승식	(미역, 다시마 등)	1ha	7,700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42,000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 등)	1ha	2,730
	정치망	대형	-	-	1ha	9,100
	정치망	소형	-	-	1ha	9,100
	정치망	중형	-	-	1ha	9,100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 등)	1ha	9,8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등)	1ha	5,950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 등)	1ha	4,2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등)	1ha	3,150
	패류	바닥식	투석식 등	(전복 등)	1ha	7,700
	패류	수하식	간이식	(홍합 등)	1ha	11,900
	패류	수하식	간이식	(굴 등)	1ha	9,100
	패류	수하식	연승식	(가리비 등)	1ha	1,82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 등)	1ha	4,20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다시마 등)	1ha	3,640
	순천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 등)	1ha
패류		바닥식	살포식	(고막 등)	1ha	5,600
고흥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전복, 미역 등)	1ha	9,800
	복합	수하식	연승식	(전복, 다시마 등)	1ha	9,800
	복합	수하식	연승식	(미역, 다시마 등)	1ha	7,700
	복합	혼합	가두리식과 연승식	(전복, 미역, 다시마 등)	1ha	9,800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42,000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 등)	1ha	9,8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 등)	1ha	4,9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등)	1ha	4,9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고막 등)	1ha	4,900
	패류	바닥식	투석식 등	(굴 등)	1ha	2,730
	패류	수하식	-	(굴 등)	1ha	4,550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	1ha	9,100

(단위 : 천원)

시군구명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참고) 양식물의 예	단위	기준가격
	종별	유형별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 등)	1ha	5,46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뿔 등)	1ha	7,00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다시마 등)	1ha	2,730
보성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 등)	1ha	4,9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등)	1ha	4,9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고막 등)	1ha	4,9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등)	1ha	3,150
장흥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고막 등)	1ha	3,850
	패류	바닥식	살포식	(굴 등)	1ha	3,850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등)	1ha	3,150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 등)	1ha	3,850
	패류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등)	1ha	4,2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키조개 등)	1ha	4,200
강진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 등)	1ha	4,200
해남군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 등)	1ha	9,80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다시마 등)	1ha	2,730
무안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35,000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어류 등)	1ha	14,000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갑각류 등)	1ha	9,100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 등)	1ha	9,1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등)	1ha	2,730
	패류	바닥식	투석식 등	(굴 등)	1ha	2,730
	패류	수하식	간이식	(굴 등)	1ha	5,460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김 등)	1ha	5,46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다시마 등)	1ha	3,640
완도군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 등)	1ha	18,200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35,000
진도군	복합	수하식	건홍식과 연승식	(김, 가리비 등)	1ha	5,250
	복합	수하식	연승식	(전복, 다시마 등)	1ha	9,800
	복합	수하식	연승식	(미역, 다시마 등)	1ha	7,700
	복합	수하식	연승식	(뿔, 전복 등)	1ha	9,800
	복합	수하식	연승식	(뿔, 다시마 등)	1ha	9,100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 등)	1ha	9,800

(단위 : 천원)

시군구명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참고) 양식물의 예	단위	기준가격
	종별	유형별				
	패류	바닥식	살포식	(고막 등)	1ha	3,850
	패류	바닥식	투석식 등	(전복 등)	1ha	7,700
	패류	수하식	연승식	(굴 등)	1ha	4,550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	1ha	4,90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참모자반 등)	1ha	10,50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툇 등)	1ha	8,40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다시마 등)	1ha	3,50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 등)	1ha	8,40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청각 등)	1ha	8,400
신안군	복합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49,000
	복합	수하식	연승식	(미역, 다시마 등)	1ha	7,700
	복합	수하식	연승식	(전복, 다시마 등)	1ha	9,100
	복합	수하식	연승식	(툇, 다시마 등)	1ha	9,100
	복합	혼합	가두리식과 연승식	(전복, 미역, 다시마 등)	1ha	9,100
	복합	혼합	건홍식과 살포식	-	1ha	4,550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49,000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	1ha	13,300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 등)	1ha	9,800
	패류	바닥식	살포식	-	1ha	3,150
	패류	바닥식	투석식 등	-	1ha	3,150
	패류	수하식	-	-	1ha	4,550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	1ha	5,25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 등)	1ha	7,35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모자반 등)	1ha	7,35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툇 등)	1ha	7,35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다시마 등)	1ha	3,640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목차

일련 번호	양식 품종	양식 방법	시설기준 면적	비고
1	굴	수 하 식	1ha	
2	굴	투 석 식	10ha	
3	담 치	수 하 식	1ha	
4	피 조 개	살 포 식	1ha	
5	새 꼬 막	살 포 식	1ha	
6	꼬 막	살 포 식	1ha	
7	바 지 락	살 포 식	1ha	
8	동 축	살 포 식	1ha	
9	가 무 락 조 개	살 포 식	1ha	
10	백 합	살 포 식	1ha	
11	진 주 조 개	수 하 식	1ha	
12	큰 가 리 비	수 하 식	4ha	
13	전 복	투 석 식	1ha	
14	소 라	투 석 식	1ha	
15	김	지 주 식	1ha	
16	김	부 류 식	1ha	
17	미 역	수 하 식	1ha	
18	툇	수 하 식	1ha	
19	파 래	부 류 식	1ha	
20	대 하	축 제 식	3.3ha	
21	꽃 게	축 제 식	1ha	
22	송 어	축 제 식	1ha	
23	조 피 볼 락	해 상 가 두 리 식	1ha	
24	넙 치	해 상 가 두 리 식	1ha	
25	농 어 · 돔	해 상 가 두 리 식	1ha	
26	우 령 쉼 이	수 하 식	1ha	
27	갯 지 령 이	기 타	1ha	

※ 시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을 참조하여 시·군·구별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함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

1. 연승수하식(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굴, 시설기준-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목		연	7,000연 이하			(남해군을 제외한 경남은 5,000연 이하)
< 시 설 >						
간 승	18mm	m	2,000			
종 승	16mm	m	300			
돛 줄	20mm	m	2,080			
부 자 묶 음 줄	8mm	m	2,000			
수 하 연 (코팅사)	3.8mm	연	2,840			
부 자	60ℓ	개	1,016			
	200ℓ	개	4			
돛	ø15cm×4m	개	50			
인 부						
어 장 시 설	남자	명	40			
일 반 인 부	여자	명	30			
(채 묘 연 조 립)	남자	명	4			
(채 묘 연 수 하)	여자	명	16			
계						

2. 투석식(간석지)(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굴, 시설기준-10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산 석	20kg	개	100,000			10ha 기준
운 반 비	3톤 (선박)	척	80			
운 반 비	4톤 (차량)	대	300			
시 설 인 부	남 자	명	400			
계						

3. 연승수하식(지중해담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지중해담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자 재						
- 부 자	65ℓ	개	1,006			부자 간격 2m 기준
- 표시부자	200ℓ	개	4			
- 부자묶음줄	PP 5mm	m	2,200~3,500			
- 친 승	PP 16mm	m	2,000			
- 종 승	PP 16mm	m	200			
- 말 목	ø15cm×5m	본	52			친승, 종승 각 4개씩, 사귀 각 3개씩
- 수 하 연	PE rope (120합사)	m	15,000~20,000			
- 페타이어 (부착기)	15~20cm	kg	9,375			
* 종 요						
- 채묘기수 (콜렉타)		개	68,640~80,080			
인 부						
어 장 시 설	남	명	21			
말 목 부 설	남	명	10			
부 자 결 속	남	명	13			
수하연 조립	남	명	14			
수 하 시 설	여	명	90			
계						

4. 살포식(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2cm 내외	마리	50만~70만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8			
닷	60kg	개	8			
닷 줄	ø18mm	m	480			
사 계 줄	ø18mm	m	400			
작 업 대	12×6m	대	1			수심 20m 기준
선 박 (종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4			수심 20m 기준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8 20			
계						

5. 살포식(새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새꼬막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5~2cm	톤	1~1.5			수심 10m 기준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8			
닷	60kg	개	8			
닷 줄	ø18mm	m	240			
사 계 줄	ø18mm	m	400			
선 박 (종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3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12			
계						

6. 살포식(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꼬막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1.5cm	톤	3.5~7			
로 프	ø5mm	m	400			
항 목 (대)	10cm×10cm×6m	개	4			
항 목 (소)	5cm×5cm×2m	개	36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6			
종패운반 차량	2.5톤 트럭	대	2			
종패살포 선박	2톤	척	4			
계						

7. 살포식(바지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바지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2.0cm	톤	3.5~7			각장 1cm는 20kg포장 각장 2cm는 30kg포장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cm, 길이 1.5m	본	4			
마 대	30kg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살 포 선 박	2톤	척	3~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20			
계						

8. 살포식(간석지)(동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동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 패	각장 1.0~2.0cm	톤	3.5~7			각장 1cm는 20kg포장 각장 2cm는 30kg포장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cm, 길이 1.5m	본	4			
마 대	30kg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운 반 용 선	2톤 선박	척	3~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20			
계						

9. 살포식(간석지)(가무락조개)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가무락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 패	각장 2.0~3.0cm	톤	3.5~7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cm, 길이 1.5m	본	4			
마 대	30kg들이	장	150~2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살 포 선 박	2톤	척	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10			
계						

10. 살포식(간석지)(백합)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백합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 패	각장 1.0~3.0cm	톤	1~3			각장 1cm는 20kg포장 각장 2cm는 30kg포장
항 목 (철 근)	ø3cm, 길이 1.5m	본	80			
럿 셀 망 지	12합 12절	필	2			
상 단 버 팀 줄	ø5mm	m	400			
하 단 버 팀 줄	ø3mm	m	400			
결 속 로 프	ø5mm	m	1,400			
마 대	30kg들이	장	34~1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2톤 트럭	대	3			
종 패 운 반 (용 선)	2톤 선박	척	2			
어 장 시 설 인 부 (조위망제작인부 포함)	남, 여	명	20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10			
계						

11. 연승수하식(진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진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자 재						
- 간 승	PP ø5~18mm	m	2,000			
- 닳 줄	PP ø16mm	m	900			
- 부 자(대)	스티로폴 200ℓ	개	8			
- 부 자(소)	스티로폴 70ℓ	개	402			
- 닳	철재 (20kg)	개	28			
- 부자묶음줄	PP ø9mm	m	250			
- 포켓네트	70×45cm	개	2,000			
- 중간채롱	34×34cm	개	3,960			
- 모패채롱	40×70cm	개	3,960			
- 알빼기 채롱	30×40cm	개	3,960			
- 요 양 기	프라스틱제	개	1,000			
- 채롱 수하연	PP ø6mm 코팅사	환	20			
- 치 패	각장 5cm 이하	마리	23,760			
- 중 간 패	각장 5~8cm	마리	11,880			
- 모 패	각장 8cm 이상	마리	4,851			
- 핵	ø7~8mm	관	20			
* 인 부						
- 어장시설	선박 (1척×5일)	척	5			
- 인 부	남자 (10명×5일)	명	50			
- 시설인부	남자 (2명×6개월) 여자 (10명×6개월)	명 명	12 30			
계						

12. 연승채롱수하식(큰가리비)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큰가리비
 시설기준 : 4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 층 부 자	PVC ø370mm	개	227			10m간격 1개 시설
사 귀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4			사귀 각 1개 시설
중 층 부 자	PVC ø300mm	개	737			3m간격 1개 시설
사 각 승	PP로프 ø34mm	m	800			200m × 4연
명 줄	PP로프 ø36mm	m	2,550			75m × 34연
간 승	PP로프 ø32mm	m	1,800			200m × 9연
표 층 부 자 줄	브레이드로프 ø12mm	m	1,386			6m (수하길이 5m + 묶음줄 1m) × 231개
중 층 부 자 줄	PP로프 ø9mm	m	1,106			1.5m (수하길이 1m+ 묶음줄 0.5m) × 737개
지 승	PP로프 ø9mm	m	17,600			1m간격시설(200×11×8)
육성기(채롱)	코팅철사 12단	개	2,200			1m간격 시설 (200×11)
명	콘크리트 4각 12톤	개	34			간승 11연×2 + 중승4연×2 + 사귀
종 요 (본양성시)	각장 7cm 내외	개체	343,200			채롱당 156마리 수용
계						

13. 천해투석식(전복)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지주 (콘크리트)	1×1m	개	20			
부 자	100ℓ	개	20			
부 자 연 결 줄	PE ø15mm	m	600			
자 재 운 반 차 량	4톤 트럭	대	1			
종 패	각장 3cm 이상	마리	20,000			
투 석 용 석 재	300kg	개	3,330			
관 리 선	2~5톤	척	1			
시 설 인 부	남	명	4			
용 선	5~10톤	척	1			
살 포 인 부	남	명	2			
계						

14. 천해투석식(소라)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소라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어장표지 시설						* 투석후 해조류 증식에 의한 소라 등 패류자원 번식 조장 (따로 종패 살포를 안함)
부 자	스치로폴 ø30cm	개	8			
표 지 주	ø1cm×1m	개	8			
부 자 연 결 줄	PE 로프 ø15mm	m	200			
달	300kg 석재	개	8			
투 석						
석 재	300kg	개	3,330			
선 박	100톤	척	10			
석 재 운 반 차 량	10톤	대	100			
인 부	일반인부 스쿠바다이버	명 명	10 10			
종 묘	각고 1cm	마리	20,000			
계						

15. 건홍식(지주식 망홍)(김)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김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패 각	50개/상자	상자	40			1ha당 20책 기준
망	1.8×40m	책	20			
부 족	30본/속	개	8			
항 목	25척	본	420			
매 심 이 줄	PP 160 합사	환	4			
관 리 선	1톤급	척	1			
계						

16. 건홍식(부류식 망홍)(김)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김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패 각	50개/상자	상자	50			1ha당 25책 기준
망	1.8×40m	책	25			
부 족	1.8m	개	275			
결 착 사	PP 160합사	환	3			
어 미 밧 줄	PP 12mm	m	1,000			
부 자	스치로폴 360mm	개	550			
닻	소나무 1m, ø15cm	본	26			
관 리 선	1톤급	척	1			
계						

17. 연승수하식(미역)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미역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요	PP ø12mm	m	3,000			친승의 1.5배
친 승	PP ø12mm	m	2,000			
닻 줄	PP 150합사	m	2,000			
부 자 줄	크레모나 18합사	m	500~1,000			
종요강는줄 (씨 줄)		m	3,000			
부 자	PVC ø18cm	개	450			
닻	ø15cm×1m소나무	본	50			
관 리 선	1.5G/T	척	1			
계						

18. 연승수하식(돛)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돛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요	5~10cm	kg	300~400			
친 승	PP ø12mm	m	2,000			
닻 줄	PP ø12mm	m	800			
부자줄 및 침 자 묶음 줄	PE ø3mm	m	400			
종 요 줄	PP 스트링 ø5mm	m	2,000			
종요 줄 친승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결 착						
부 자	ø18mm	개	260			
닻	소나무 1m ø15cm	개	40			
관 리 선	1.5G/T	척	1			
계						

19. 건흥식(부류식)(파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파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망	1.8×40m	책	25			
로 프	∅15mm	m	400			
로 프	∅12mm	m	200			
돛	8관	계	42			수심 7m 기준
돛 줄	∅18mm	m	900			
항 목		본	100			
부 족 (大)	1.8m	개	275			25책×11개/책
부 족 (小)		개	300			
부 자	스치로플(大)	개	44			
P P 사	30합사	관	10			
채 취 선	0.8톤	척	1			
계						

20. 축제식(대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대하
 시설기준 : 3.3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토목공사>						
1. 방조제						
성 토		m ²	41,800			
돌 불 임		m ²	3,110			
사 석		m ²	4,400			
줄 띠		m ²	1,584			
콘크리트		m ²	625			
거푸집		m ²	308			
철 근		톤	1.32			
2. 내 방 제						
성 토		m ²	53,922			
콘크리트		m ²	1,544			
거 푸 집		m ²	245			
3. 구조물공사						
취배수문	3×3m	개소	2			
<건축공사>						
1. 사료처리장	블럭조	평	50			
2. 사 무 실	블럭조	평	30			
3. 관 리 사	벽돌양옥	평	36			
<양성관>						
1. 치 하	체장 2cm 내외	미	600,000			ha당 200,000미
2. 사 료	배합사료	kg	150,000			
계						

21. 축제식(꽃게)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꽃게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330g/미	kg	4,000			
사 료	어 분	kg	4,000			
PP 그물망	35×35mm	필	2			
백관(pipe)	ø50mm, 길이 2m	개	200			
철 선	# 8	m	416			
지 지 항	ø12cm, 길이1.8m	개	28			
시 멘 트	40kg	포	15			
선 박	2톤	척	1			
계						

22. 축제식양식(송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송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방 조 제 성 토		m ²	100,000		
방 조 제 돌붙임		m ²	4,000		
방 조 제 사 석		m ²	5,000		
주 , 배 수 문	ø1000mm×15	개소	2		
관 리 사	콘크리트블럭 건물	평	100		
사 료	배합사료	kg	20,000		
약 품	포르마린 등	ℓ	200		
관 리 선	소형 전마선	대	1		
관 리 인	남	명	3		
기 술 자	양식기사	명	1		
계					

23. 해상가두리(조피볼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조피볼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부 자	스티로폴 (400ℓ)	개	240			수심 10m 기준
목 재	각목 (10cm×12cm×6m)	개	160			
그 물	나이론 38합사 8절	필	6			
그 물	나이론 15합사 12절	필	6			
그 물	나이론 9합사 20절	필	6			
부 자 결 착 줄	PP사ø8mm	m	1,000			
돛	철재 75kg	개	34			
돛 줄	PPø22mm	m	1,020			
힘 줄 로 프	PE사 ø8mm	m	800			
볼 트 , 너 트	22cm×4부	개	640			
관 리 사 및 작 업 대	5×5m	조	12			
관 리 선	선외기 (0.5톤)	척	1			
시 설 제 작 인 부	특수인부	명	180			
계						

24. 해상가두리식(넙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넙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목 재	아비동					
부 자	(12cm×15cm×10m)	개	240			
닷	대형 (400ℓ)	개	420			
닷 줄	철제 75kg	개	26			
사 육 망	PP로프 ø40mm	m	1,170			수심 15m 기준
(방오처리망)	모지망 105경	조	5			5×5×3m
	무결절 30합 8절	조	40			"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10×10×3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
부자결착출	PE로프 ø10mm	m	2,400			
볼트, 너트	33cm×6부	개	1,440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mm	개	40			5×5m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mm	개	10			10×10m
2. 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사료저장고	3평	동	1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 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 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25. 해상가두리식(농어/돔)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농어/돔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목 재	12cm×15cm×10m	개	240			
부 자	대형 (400ℓ)	개	420			
낫	철제 75kg	개	26			
낫 줄	PP로프 ø40mm	m	1,170			수심 15m 기준
사 육 망	모지망 105경	조	5			5×5×5m
(방오처리망)	무결철 30합 8절	조	40			5×5×3m
	무결철 15합 12절	조	40			5×5×5m
	무결철 12합 18절	조	10			10×10×7m
	무결철 9합 20절	조	10			10×10×7m
부자걸착줄	PE로프 ø10mm	m	2,400			10×10×7m
볼트, 너트	33cm×6부	개	1,440			
2. 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10×10×7m
사료저장고	3평	동	1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 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 제작)
어망걸착	남	명	20			
계						

26. 연승수하식(우렁챙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우렁챙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 부 자						
- 소 형	개량부자 65ℓ	개	660			
- 중 형	스치로폴 200ℓ	개	4			어장표시용
* 로 프						
- 사 각 줄	∅18mm	m	400			돛 100개×45m
- 돛 줄	∅18mm	m	4,500			18줄×100m
- 연 승 줄	∅18mm	m	1,800			
- 허 리 줄	∅18mm	m	100			
- 부자줄 및 부자유음줄	∅9mm	m	4,000			
- 수하연 묶음줄	∅9mm	m	3,000			
- 천 로 프	∅30mm	m	5,000			
- 종 요	m당 100미	m	71,000			
- 말치는 장비 (항타기)	-					
- 말 목(돛)	소나무 ∅15cm×5m	대	1			
2. 인 부		개	100			
* 어장시설 (말목박기)						
* 연승나르기 및 사각묶기	남자(고용) (자가)	명	3, 1			8명×10일
* 종요감기 및 본양성	남자(고용) (자가)	명	2, 1			2명×3일
* 수하연 육상제작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80, 10			2일×1척
* 종요운반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6, 3			1명×2일
* 종요운반작업대	동력선(자가) 2.5톤	척	2			1명×2일
* 종요운반 인부	5×8m	대	1			
3. 부대시설	남자(고용),남자(자가)	명	2, 2			
* 관 리 선		척	1			
* 작 업 대	동력선(자가) 5×8m(자가)	대	1			
계						

27. 기타 [갯지렁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갯지렁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 지 철 주	ø22mm×2m	본	4			
철 주	ø16mm×1.5m	본	140			
세 망	방충망 폭 70cm	m	4,200			
목 부 자	ø50mm	개	13,800			
갯 지 령 이	모 충	kg	400			
버 리 줄	PE rope ø6mm	m	14,800			
트 와 잉 사	PE rope ø5mm	m	1,400			
대 부 자	스치로플 ø30×50cm	개	70			
소 부 자	스치로플 ø30cm	개	60			
부 자 연 결 줄	PE rope ø5mm	m	700			
그 물 작 업 인 부	남 자	명	80			
자 재 운 반	4.5톤 트럭	대	1			
시 설 인 부	남 자	명	200			
계						

IX. 광업권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 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1. 정 의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광업권의 대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 중 인류에게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정하여 놓은 광물이 광업권의 설정대상임

3. 용 어 해 설

- 1) 광업(鑛業) : 지하에 매몰되었거나 표토층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을 찾아내고 이를 채굴하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選鑛), 제련(製鍊) 기타의 사업을 말함
- 2) 광산(鑛山) : 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 3) 광상(鑛床) : 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 것
- 4) 탐광(探鑛) : 광산·탄전 등의 개발을 위하여 광상을 발견하고, 그 성질, 상태, 규모 등을 알아내는 작업
- 5) 채광(採鑛) : 목적 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 6) 선광(選鑛) : 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 7) 제련(製鍊) : 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4. 적용요령

- 광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사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외의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한다.

가.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과 조업중인 광산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가채광량포함)

$$\text{조사가격} = [\text{①(톤당순수입가격} \times \text{매장량) 또는 ②인근광구의 비준가격} \\ - (\text{③기계 및 시설비} + \text{④기계설비이전비})] \times 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있을 때 : $[\text{①} - (\text{③} + \text{④})] \times 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없을 때 : $[\text{②} - (\text{③} + \text{④})] \times 0.7$

《적용요령》

- 1) 톤당 순수입가격=톤당판매가격-생산단가(인건비,채광비,선광비,제련비등)
- 2)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 : 감가액 감산 적용
- 3) 시설비 : 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산하고 구축물은 전액적용
- 4) 인근 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 제외
- 5) 기계시설이전비 : 기계시설 설치비의 10%계상
- 6)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산하여 0.7을 승함

나. 탐광단계에 있으나 광물의 생산량이 없는 광산과 채광 미착수 광산인 경우

$$\text{조사가격} = [\text{①(광업권 설정비} + \text{시설비})} + \text{③(매장량} \times \text{톤당순수입가격)} \\ - (\text{④기계 및 시설비} + \text{⑤기계설비이전비})] \times 0.7$$

《적용요령》

- 1) 광업권설정비 : 등록시 소요경비
- 2) 시설비 : 시추작업비
- 3) 인근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를 제외함
- 4) 톤당 순수입가격=톤당판매가격-생산단가(인건비,채광비,선광비,제련비등)
- 5)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 : 감가액 감안적용
- 6) 시설비 : 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안, 구축물은 전액적용
- 7) 기계시설이전비 : 기계 및 시설 설치비의 10%계상
- 8)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안하여 0.7을 승함

X. 회원권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회원권을 말한다.

2. 종 류

가.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라. 승마회원권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5호)

마. 요트회원권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3. 시가표준액

① 골프회원권

(단위 : 천원)

시군	소재지	시설명	운영형태	시가표준액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승주	VIP(5차)	165,000
			VIP(5차)	243,000
			VIP(5차)	324,000
			VIP(5차)	486,000
			일반	60,000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레이크힐스 순천	개인주중	14,000
			가족주중	18,900
			개인(창립)	54,000
			법인(창립)	90,900
			개인비즈니스	107,000
			개인(1차)	87,800
			법인(1차)	108,000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골드레이크	개인주중(3차)	24,700
			법인주중(3차)	41,200
			VIP(1차)	390,000
			VIP(2차)	381,000
			VIP(3차)	439,000
			VIP(4차)	482,000
			VIP(5차)	448,000
			주중(1차)	26,600
			주중(2차)	28,900
			일반(1차)	124,000
			일반(2차)	127,000
			일반(3차)	136,000
			일반(4차)	161,000

시군	소재지	시설명	운영형태	시가표준액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해피니스	개인주중(1차)	27,000
			개인주중(2차)	31,000
			개인주중(3차)	27,000
			법인주중(1차)	45,000
			법인주중(2차)	45,000
			VIP(1차)	270,000
			VIP(2차)	297,000
			하트(1차)	180,000
			해피(1차)	90,000
			해피(2차)	99,000
			휴먼(2차)	135,000
곡성군	옥과면 함강리	광주	VIP	47,000
			우대	47,000
			주중	10,100
			일반	29,800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화순	VIP	240,000
			주중(지정회원0)	16,000
			주중(지정회원1)	32,000
			일반	40,000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	엘리체	주중	11,000
			일반	25,000

② 콘도미니엄 회원권

(단위 : 천원)

시군명	소재지	콘도명	운영형태 1	운영형태 2	시가표준액
여수시	경호동	경도 여수	83.39㎡(실버)(기명) M/S	1/15구좌	21,100
			83.39㎡(실버)(무기명) M/S	1/15구좌	25,300
			116.46㎡(루비)(기명) M/S	1/15구좌	29,600
			116.46㎡(루비)(무기명) M/S	1/15구좌	35,500
			116.46㎡(루비)(기명) M/S	1/5구좌	88,900
			116.46㎡(루비)(무기명) M/S	1/5구좌	106,000
			119㎡(골드)(기명) M/S	1/15구좌	30,200
			119㎡(골드)(무기명) M/S	1/15구좌	36,200
			119㎡(골드)(기명) M/S	1/5구좌	90,700
			119㎡(골드)(무기명) M/S	1/5구좌	108,000
			151.3㎡(다이아몬드)(기명) M/S	1/15구좌	38,500
			151.3㎡(다이아몬드)(무기명) M/S	1/15구좌	46,200
			151.3㎡(다이아몬드)(기명) M/S	1/5구좌	115,000
			151.3㎡(다이아몬드)(무기명) M/S	1/5구좌	138,000
			무기명(1/12구좌)-루비(116.46㎡)	12구좌	26,730
여수시	수정동	대명 엠블호텔 여수	(기명)골드		135,000
			(기명)로얄		155,000
			(기명)실버		104,000
			(기명)스위트		27,000
			(기명)패밀리		18,000
			(무기명)골드		164,000
			(무기명)로얄		183,000
			(무기명)실버		130,000
			(무기명)스위트		34,600
			(무기명)패밀리		24,300

시군명	소재지	콘도명	운영형태 1	운영형태 2	시가표준액
여수시	소호동	디오션 (TheOcean)	40평형 개인(그린)		44,500
			40평형 개인(그린)		35,600
			40평형 개인(그린)		29,700
			42평형 개인(브라운)		46,700
			36평형 개인(블루)		40,000
			26평형 개인(오렌지)		25,900
			60평형 개인(퍼플)		66,800
			40평형 법인(그린)		47,800
			40평형 법인(그린)		38,200
			40평형 법인(그린)		30,100
			42평형 법인(브라운)		50,200
			36평형 법인(블루)		43,000
			26평형 법인(오렌지)		28,100
60평형 법인(퍼플)		71,700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파인힐스 관광호텔	A타입		27,000
			B타입(B-1,2,5)		108,000
			B타입(B-3,4)		135,000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중흥 골드 마스터스	63㎡(19평형)(1차)		34,800
			63㎡(19평형)(2차)		37,200
			94㎡(28평형)(1차)		40,400
			94㎡(28평형)(2차)		43,100
			126㎡(38평형)(1차)		45,500
			126㎡(38평형)(2차)		45,500
			191㎡(57평형)(1차)		87,300
			191㎡(57평형)(2차)		87,300

시군명	소재지	콘도명	운영형태 1	운영형태 2	시가표준액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중흥 골드레이크 빌리지	169㎡(51평형)		57,900
			202㎡(61평형)		74,600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63㎡(19평형)(1차)		14,000	
		63㎡(19평형)(2차)		14,000	
		94㎡(28평형)(1차)		21,500	
		94㎡(28평형)(2차)		21,500	
		126㎡(38평형)(1차)		28,900	
		126㎡(38평형)(2차)		28,900	
		191㎡(57평형)		87,300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한화 지리산	76㎡	10구좌	3,600
			152㎡	10구좌	10,600
보성군	회천면 동올리	다비치 보성	56㎡	20구좌	5,840
			56㎡	10구좌	11,300
			73㎡	20구좌	7,420
			73㎡	10구좌	14,500
			109㎡	20구좌	11,100
			109㎡	10구좌	21,900
			136㎡	20구좌	13,500
			136㎡	10구좌	26,700
			248㎡	10구좌	49,500
화순군	북면 옥리	금호 화순	58.79㎡(프리미엄Ⅳ)		17,300
			58.79㎡	30박	4,360
			76.73㎡	30박	4,320
			91.85㎡	30박	6,550
			117.58㎡	30박	12,100
			160.21㎡	30박	21,800
			236.6㎡	30박	34,900

4. 적용요령

- 가.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적용한다.
-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로 하되, 분양가 또는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금액의 95%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따른 기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준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XI. 지 하 자 원

1. 정 의

지하자원이란 채광된 광물을 말한다.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3호)

2. 지하자원(광물)의 종류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磷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넘,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광재: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광업법 제3조 제1호)

3. 관련 용어해설

- 광산(鑛山) : 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 광상(鑛床) : 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 것
- 채광(採鑛) : 목적 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 선광(選鑛) : 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 제련(製鍊) : 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 품위(品位) : 광석(鑛石)에 유용한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의 비율로서, 품위는 주로 퍼센트(%)로 표시하며 광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냐를 비교하는데 사용

4. 적용요령

-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은 거래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는 입증된 장부상 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상가액이 없을 경우 본 표의 결정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5. 기준 가격 표

(단위 : 원/톤)

시도명	광물	품위	기준가격
전라남도	고령토	0.95	38,000
전라남도	고령토	0.95	38,000
전라남도	고령토	Al ₂ O ₃	25,500
전라남도	고령토	Al ₂ O ₃ 17%	23,000
전라남도	고령토	SK 18	13,000
전라남도	고령토	SK 19	11,000
전라남도	고령토	SK 27(도석)	200,000
전라남도	고령토(납석)	SK 33-35	45,000
전라남도	고령토(도석)	전품위	33,000
전라남도	고령토(도석)	Al ₂ O ₃ 10-13%	100,000
전라남도	고령토(도석)	Al ₂ O ₃ 15%	57,000
전라남도	고령토(도석)	Al ₂ O ₃ 17%	58,000
전라남도	고령토(도석)	SK 23	50,000
전라남도	고령토(도석)	SK 25	30,000
전라남도	고령토(도석)	SK 26	10,000
전라남도	고령토(도석)	SK 29	33,000
전라남도	고령토(도석)	WD	5,000
전라남도	규사	SiO ₂ 90.4%	11,200
전라남도	규사	SiO ₂ 90.67%	15,000
전라남도	규사	SiO ₂ 92%	11,800
전라남도	규사	SiO ₂ 92.1%	25,000
전라남도	규석	SiO ₂ 92%	3,500
전라남도	규석	SiO ₂ 94%	23,000
전라남도	규석	SiO ₂ 95%	43,000

(단위 : 원/톤)

시도명	광물	품위	기준가격
전라남도	규석	SiO ₂ 95.1%	3,500
전라남도	규석	SiO ₂ 96%	44,000
전라남도	규석	SiO ₂ 97%	5,000
전라남도	규석	SiO ₂ 97%	25,000
전라남도	규석	SiO ₂ 97%	33,000
전라남도	금(g)	Au 99.9	12,800
전라남도	납석	Al ₂ O ₃ 12-13%	30,000
전라남도	납석	Al ₂ O ₃ 15%	15,000
전라남도	납석	Al ₂ O ₃ 15-18%	25,000
전라남도	납석	Al ₂ O ₃ 20-25%	46,000
전라남도	납석	SK 20	14,500
전라남도	납석	SK 25	30,000
전라남도	납석	SK 28	20,000
전라남도	납석	SK 28-35	53,000
전라남도	납석	SK 29	60,000
전라남도	납석	SK 29	20,000
전라남도	명반석	K ₂ O 3.0%	100,000
전라남도	석탄	6급	135,000
전라남도	석회석	CaCO ₃ 78.55%	7,200
전라남도	석회석	CaO 44.3	5,600
전라남도	은(g)	Ag 99.9	550
전라남도	장석	K ₂ O 13.4% (1급장석)	17,000
전라남도	장석	K ₂ O 3.69%, Na ₂ O 3.87%	13,000
전라남도	장석	K ₂ O 37.87% (B)	10,000
전라남도	장석	K ₂ O 4.8%, Na ₂ O 3.9%	14,500

2018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문의처

총 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과표담당	02-2100-3613
한국지방세연구원	박 상 수	02-2071-2754
한국감정원	김 세 형	053-663-8200
한국지방세연구원		
*건축물 및 기타물건 잔가율·적용요령 등 문의		
건축물	박 상 수	02-2071-2754
	정 승 영	02-2071-2715
선박	최 원 구	02-2071-2743
차량, 기계장비	김 필 현	02-2071-2751
항공기, 입목, 회원권, 어업권, 지하자원, 부수시설물	허 원 제	02-2071-2707
시설물	허 등 용	02-2071-2745
한국감정원		
*기타물건 가격조사방법 및 기준가격 문의		
차량	임 용 철	02-735-7141
기계장비	한 경 수	062-953-1300
항공기	김 형 규	02-2634-9231
선박	김 봉 섭	051-462-0401
레저시설(옥외오락시설)	장 길 선	02-735-7141
레저시설(옥외오락시설 외)	김 동 호	063-251-2201
시설물	이 정 섭	031-876-5501
부수시설물	서 종 원	053-754-7642
입목	윤 종 훈	053-663-8361
어업권	남 윤 석	053-663-8665
회원권	권 용 희	02-735-7141
지하자원	이 재 문	054-274-3112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 10계명

실천해야 할 일(5가지)

1. 깨끗한 도정실현을 위해 나부터 청렴실천하기
2. 예산을 내돈처럼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3. 모든 민원은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기
4. 불가피하게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게된 경우 자진 신고하기
5. 공무원 부패행위 발견 시 부조리 신고방에 신고하기

하지 말아야 할 일(5가지)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하지 않기
2. 금품·향응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지 않기
4.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기
5.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지 않기



깨끗하고 공정한 일처리로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을 실천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패제로, 청렴전남**을 함께 실현합시다.

부패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8**